발간등록번호
74-6440000-000085-01

ChungNam
Heart of Korea

2006년도

정보공개업무 길잡이



충청남도
www.chungnam.net

충남도청행정자료실
AM017350

359.1175



발간등록번호
74-6440000-000085-01

2006년도

정보공개업무 길잡이



충청남도
www.chungnam.net

목 차

Ⅰ. 정보공개제도의 의의 ····· 1

· 개념 / 필요성 / 연혁

Ⅱ. 정보공개제도의 운영 개요 ····· 5

· 정보유형 / 청구대상 / 비공개 대상 / 사전공표제

· 청구서 처리요령 / 불복구제 절차

Ⅲ. 통합정보공개시스템 운영 ····· 27

1. 통합정보공개시스템 개요
2. 통합정보공개시스템 운영방법

Ⅳ. 행정소송 사례 ····· 43

1. 대법원판례
2. 고법 · 행정법원

Ⅴ. 정보공개 관련 질의·응답 모음 ····· 93

Ⅵ. 정보공개제도 운영지침 ····· 139

Ⅶ. 정보공개 관련 법령 ····· 173

1.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2.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
3.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규칙
4. 충청남도「열린도정」을 위한정보공개시행규정
5. 충청남도제증명등징수조례

Ⅰ. 정보공개제도 의의

1. 개 념

정보공개제도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그 밖의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국민의 청구에 의해 열람, 사본, 복제물의 형태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개하거나, 공공기관이 적극적으로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 충족 및 국정참여를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2. 정보공개제도의 필요성

◇ '국민주권주의'의 실질적 보장
주권자인 국민의 올바른 정치적 의사형성과 여론형성을 위해서는 국정에 관한 광범위하면서도 정확한 정보에 대한 접근의 보장 필요

◇ 국민의 알권리 보장
개인의 권리 및 자기실현을 위한 헌법상의 제 기본권의 실질적인 보장을 위해서는 국민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공공기관의 정보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의 확보가 중요

◇ 정책결정의 정당성 확보와 책임행정의 구현
행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 욕구 충족 및 이해관계 조정의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정책 추진과정에 투명한 공개를 통한 국민의 신뢰 및 적극적인 협조 획득은 정책성공의 필수 고려사항

◇ 국가정보의 균등배분 필요성 증대
지식정보화사회의 진전에 따라 재산권으로서의 가치가 큰 정보, 특히 공공기관의 업무수행 과정에서 생산했거나 취득한 다양한 정보들을 국민들에게 균등하게 제공하는 것은 현대국가의 당연한 의무

◇ 공직의 부정부패 및 비리방지 효과
업무수행 과정과 결과에 대한 국민들의 감시와 비판을 제도화함으로써 범죄로부터 공직을 보호하고 국민의 불신을 사전에 차단 가능

3. 정보공개제도의 연혁

- 청주시의 행정정보공개조례 제정(1992. 1.)
- 국무총리훈령인 「행정정보공개운영지침」 시행(1994. 7. 1.)
-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정(1996. 12. 31 공포, 1998. 1. 1. 시행)
  -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시행(1998. 1. 1.)
- 법률개정에 시일이 소요됨을 감안하여, 우선 정보공개제도의 조기정착을 위해 국무총리훈령 제정
  - 행정정보공개의확대를위한지침(2003. 6. 24. 시행)
- 정보공개법의 개정(2004. 1. 29. 공포, 7. 30. 시행)
- 정보공개법시행령·시행규칙 개정(2004. 7. 29. 공포, 7. 30. 시행)
- 통합정보공개시스템 『열린정부』 도입(2006. 4. 27.)

Ⅱ. 정보공개제도 운영 개요

1. 정보의 유형

가. 매체에 의한 정보유형

- 문서·팔플렛·간행물·보고서·통계 등 종이를 매체로 한 정보
- 도화, 지도, 도면
- 사진, 영화필름, 마이크로필름, 슬라이드
- 컴퓨터처리 정보 등

나. 성질에 의한 정보유형

- 공문서 : 법규문서, 지시문서, 공고문서, 비치문서, 민원문서, 일반문서
- 행정간행물 : 조사보고서, 연구보고서, 통계서, 백서, 홍보물 등

※ 일반 기안문서의 경우 결재절차 등 사안별 결정 절차가 완료된 사항을 공개 대상으로 함.

※ 각종 전문서적, 교양서적 등 일반자료는 포함되지 않음.

2. 공개청구 대상 정보

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기록물

나. 공문서, 행정자료 등 모든 기록물

- 종이문서, 도면, 사진, 필름, 테이프, 슬라이드, 컴퓨터처리 정보 등 모든 매체수단 포함.

▶ 「정보공개 청구 대상」이 아닌 사례

- 업무의 참고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비공식적으로 수집한 통계자료 등
- 결재 또는 공람절차 완료 등 공식적인 형식요건을 갖추지 못한 정보
- 관보·신문·잡지 등 불특정 다수인에게 판매 및 홍보를 목적으로 발간된 자료 등

나. 비공개 대상 정보의 세부기준

법 제9조제1항 제1호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1. 공직자윤리법 제14조 및 제14조의3의 규정에 의한 재산등록사항 및 금융거래자료.
   - 다만, 법률에 의하여 공개하도록 규정한 사항은 제외한다.

2.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13조에 의하여 민원사무 처리와 관련된 정보에 대하여 민원인의 이익을 침해하는 정보

3. 행정감사규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에 종사한 공무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감사로 인하여 알게 된 행정상의 기밀 또는 타인의 비밀 누설 금지

4. 지방세법 제69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자가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나 지방세법의 부과 또는 징수를 목적으로 직무상 취득한 자료.
   다만, 당해 법률에 의하여 공개하도록 규정된 사항은 제외한다.

5. 제안규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 제안의 내용

6. 지방공무원평정규칙 제11조9조의 규정에 의한 근무성적 평정결과

7. 그 밖에 법률 또는 법률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개별적·구체적으로 비밀 또는 비공개하도록 규정된 정보 ("법률에 의한 명령"은 내부지침·예규·훈령·지시 등 "비법규 사항"을 제외함)

법 제9조제1항 제2호	국가안전보장 · 국방 · 통일 · 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 되는 정보

1. 대통령 · 국무총리 등 국무위원 또는 도지사가 참석하는 주요행사 계획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대통령 등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행사목적을 부당하게 침해할 수 있는 정보

2. 을지 연습, 직장예비군 · 민방위대 편성표, 비밀취급 인가자 명단, 대테러대비 전략, 충무계획, 국가기반체계보호 단계별 대응매뉴얼, 가상시나리오에 의한 모의훈련 등 국가안보와 관련되는 정보

3. 정보통신망 구성도, 정보보호시스템 현황, 정보보호를 위한 내부대책과 전략 등 공개될 경우 해킹 · 사이버 테러 등 국가행정정보의 보호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4. 국가안보 · 국방 · 통일 · 외교관계에 관한 사항으로서 국가정보원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비공개 요청을 받은 정보

법 제9조제1항 제3호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 · 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1. 방화 · 실화 등 우범자 단속계획 등 국민에게 불안감을 줄 수 있는 정보

2. 인감업무 · 주민등록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위 · 변조, 범죄목적 사용 등으로 인하여 공공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법 제9조제1항 제4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1. 행정소송·헌법소원 등 재판과 관련된 소장, 답변서, 소송 진행상황 등에 관한 정보

2. 진행 중인 재판과 직접·구체적으로 관련되는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재판의 심리 또는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칠 구체적인 위험성이 있는 정보

법 제9조제1항 제5호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1. 불시 감사·조사·단속·직무감찰 계획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증거인멸 등 감사 등의 목적이 실현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정보

2. 문답서·확인서 등 조사활동 중 생산된 문서, 개인 비위자료 등 조사결과 처분지시서, 공무원전용비리신고방 신고 및 처리서류 등 공개될 경우 공정한 업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3. 공무원의 임용시험에 관한 사항으로서 시험문제 은행관리, 시험출제 관리, 시험위원 위촉, 시험관리관 선정, 시험시행에 관한 내부계획, 채점 및 합격자 결정과정 등 당해 시험의 공정한 관리를 저해할 수 있는 정보

4. 입찰예정가격을 예측할 수 있는 단가, 계약완료 전에 입찰자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 등 공정한 계약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5. 공무원 인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무원의 임용, 인사교류, 교육훈련, 연금 등의 내부 검토·협의·결정 등 공개될 경우 내부 인사기밀이 노출되거나 외부의 부당한 개입으로 인한 인사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6. 정부조직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정부조직 개편, 직제관리 등 내부 검토·협의·결정 등 공개될 경우 외부의 부당한 개입으로 인한 정부조직관리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7.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정책·제도·사업 등의 수행을 위하여 추진되는 각종 평가·진단·승인·심사·선정, 정책결정에 관한 사항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

   가. 당해 평가 등의 수행자·지표·방법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특성상 미리 공개될 경우 평가 등의 목적이 실현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계획에 관한 정보
   나. 당해 평가 등이 진행 중이거나 검토과정에 관한 정보
   다. 진행이 종료된 정보라 하더라도 그 공개로 인하여 향후 당해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명백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 정보공개운영실태 평가 관련 평가위원별 평정점수 등 기관별 세부평가 집계내역

8. 공직자윤리위원회·공무원연금급여재심위원회·공무원징계위원회·공익사업선정위원회·지적위원회 등의 회의에 관한 사항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

가. 회의의 내용이 대부분 개인의 신상·재산 등 사생활의 비밀과 관련되어 있는 정보
나. 회의의 내용이 공개로 인하여 외부의 부당한 압력 등 업무의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다. 참석자의 심리적 부담으로 인하여 솔직하고 자유로운 의사교환이 이루어 질 수 없다고 인정되는 정보
라. 심사 중에 있는 사건의 의결에 참여할 위원의 명단

9. 공무원 노조관련 업무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행정자치부의 협상력 저하 또는 노무관리 등의 전략이 노출될 우려가 있는 정보

10. 각종 제도개선 추진과 관련하여 부처, 기관,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협의사항, 자체 검토사항 등 공개될 경우 국민들에게 혼선을 야기하거나 업무수행에 명백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11. 공무원이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연구·검토한 사항으로서 기관의 공식적인 의사로 볼 수 없는 정보

법 제9조제1항 제6호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하여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

1. 진정·탄원·질의 등 각종 민원을 제기한 개인 등의 인적사항. 이 경우 민원내용 또는 처리결과의 공개만으로도 당해 민원인의 식별이 가능한 경우 그 민원내용 등을 포함한다. 다만, 당해 민원인이 본인의 인적사항이나 민원내용 등의 공개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2. 특정 공무원의 집 주소·집 전화번호·학력·주민등록번호·사회경력 등 공적 업무 수행과 관련이 없는 정보. 다만, 특정 공무원을 식별할 수 없도록 통계목적 등으로 활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인사교류신청, 채용후보자 명부, 교육훈련 관리, 징계심의·의결·결정 통지, 신원조사, 퇴직사실 확인 등 인사관리과정에서 생산·취득한 공무원의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공무원의 명예·신용·경제적 이익 등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 정보. 다만, 특정 공무원을 식별할 수 없도록 통계목적 등으로 활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재산등록의무자의 재산신고, 위원회 운영, 유공자 포상, 지방세 심사제도 운영, 지적정보센터 운영, 지적측량적부심사 등 각종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의 인적사항 또는 재산상황 등의 정보

5. 시험원서·답안지 등에 포함되어 있는 수험생의 성적·학력·주소 등 개인정보

6. 그 밖에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령 등 다른 법령에 개인정보의 공개여부에 대해 규정된 경우 그 법령에 따른다.

※ 개인이 권리구제 또는 권리행사를 위한 입증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본인의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할 수 있음

법 제9조제1항 제7호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1. 국가보조금 지원을 받는 민간단체 또는 정부가 허가한 비영리 사단법인 관련사항 중 그 단체의 자금·인사 등 내부관리에 관한 정보

2. 각종 용역수행 민간업체가 제출한 사항으로서 당해 업체의 기존기술·신공법·시공실적·내부관리 등에 관한 정보

3. 각종 용역수행과 관련한 제안업체(개인·법인·단체 등)에 대한 기술평가 결과 등 특정업체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법 제9조제1항 제8호	공개될 경우 부동산투기·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1. 온천원 보호지구 또는 온천공 보호구역의 지정고시 전의 관련정보

4. 행정정보의 사전 공표제도

가. 개 념

○ 국민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 예산 집행내용과 사업평가 결과 등에 관한 정보는 미리 공개범위·주기·시기 및 방법 등을 정하여 공표하고 이를 정기적으로 공개하는 것

○ 국민의 청구에 의한 사후적 공개외에 행정정보의 공표제도를 통하여 사전적 정보공개를 강화함으로써 정보공개제도를 보완하고자 하는 것

나. 공표방법

○ 충청남도 홈페이지 및 각종 간행물의 발간 등 다양한 방법으로 공표

다. 공표기준 (충청남도 「열린도정」을 위한 정보공개 시행규정 제6·7조)

○ 정기공표
- 당해연도 업무계획과 예산·결산 및 운용계획
- 도지사 및 행정·정무부지사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
- 부문별 주요 통계조사 결과
-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정하는 행정정보 사항 등

○ 수시공표
- 중장기 종합계획 및 부문별 종합계획
- 사용료·수수료 및 각종 공공요금의 조정계획
- 교량·터널 등에 대한 안전점검 및 진단결과
- 도에서 시행하는 공사 중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에 관한 정보
- 행정심판 재결 결과, 도가 개최한 공청회 결과
- 기타 공익을 위하여 공개함이 타당한 정보 등

○ 공표목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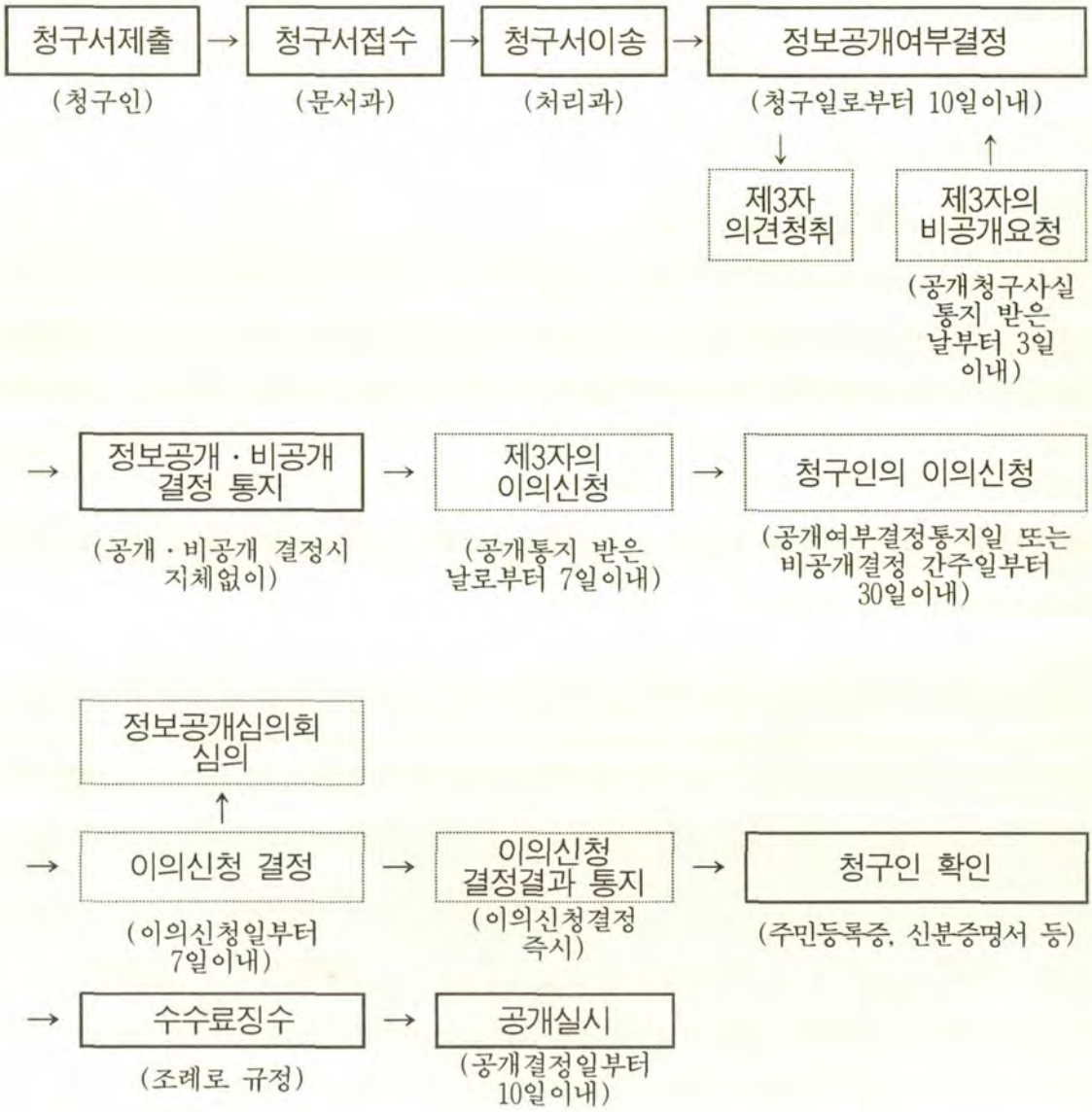
실·과	주 요 업 무 명	공개 주기	공개 시기	공개 방법
감 사 관 실	시·군 감사결과	수시	감사 종료후 1월 이내	충남넷
정책기획관실	주간업무 계획	매주	매주토요일	〃
	월중 도정 주요 통계	매월	매월 말	〃
	도정백서	매년	발간일로 부터 1월이내	〃
	주요업무 계획	매년	계획수립일로 부터 1월 이내	〃
	주요업무 자체평가 결과	매년	평가완료일로 부터 1월이내	〃
	통계연보	매년	1월	〃
예산담당관실	본예산 편성 내역	매년	의회 의결일로 부터 1월 이내	〃
	추경예산 편성 내역	수시	의회 의결일로 부터 1월 이내	〃
	부채 현황	수시	결산 종료일로 부터 1월 이내	〃
	상환계획	수시	결산 종료일로 부터 1월 이내	〃
	기금 운용 및 결산	수시	의회 의결일로 부터 1월 이내	〃
법무담당관실	행정심판 재결 결과	수시	재결일로부터 20일 이내	〃
총 무 과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정보	수시	공고일	〃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 - 도지사 및 부지사	연2회	1월, 7월	〃
	10억이상 공사 입찰정보	수시	계약완료일로 부터 10일 이내	〃

실·과	주 요 업 무 명	공개 주기	공개 시기	공개 방법
총 무 과	3억이상 용역 입찰 정보	수시	계약완료일로 부터 10일 이내	충남넷
	주간행사 계획	매주	매주 금요일	〃
	예산결산 내역	매년	의회 의결일로 부터 1월 이내	〃
	정보공개 목록	매년	7월	〃
도의새마을과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사업 선정결과	매년	선정일로부터 10일 이내	〃
세 정 과	지방세 징수 현황	매년	3월중	〃
문화예술과	지정 문화재 현황	수시	변동일로부터 10일 이내	〃
경제정책과	물가동향	월3회	파악일로부터 3일 이내	〃
국제통상과	수출입 동향	매분기	매분기25일	〃
복지정책과	장애인 등록 현황	매분기	매분기 초	〃
환경관리과	소음공해 측정 결과	수시	검사완료일로 부터 10일 이내	〃
수질관리과	수질검사 결과	수시	검사완료일로 부터 10일 이내	〃
주택도시과	미분양 주택 현황	매월	매월 초	〃
도로교통과	건설기계 등록 현황	매월	매월 초	〃
	자동차 등록 현황	매월	매월 초	〃
	교량 안전진단 점검결과	수시	점검종료일로 부터 1월이내	〃
	터널 안전진단 점검결과	수시	점검종료일로 부터 1월이내	〃

실·과	주 요 업 무 명	공개 주기	공개 시기	공개 방법
지 적 과	개별공시지가	연2회	6월, 11월	충남넷
각 실 · 과	중·장기 종합 계획	수시	계획확정일로 부터 1월이내	〃
	부문별 중기 계획	수시	계획확정일로 부터 1월이내	〃
	각종 공청회 결과	수시	공청회개최일로 부터 1월 이내	〃
	각종 수수료 조정 계획	수시	계획확정일로 부터 1월이내	〃
	각종 사용료 조정 계획	수시	계획확정일로 부터 1월이내	〃
	공공요금 조정 계획	수시	계획확정일로 부터 1월이내	〃
	기타 공익을 위하여 공개 함이 타당한 정보	수시	수 시	〃

5. 정보공개 청구서 처리요령

가. 업무처리 흐름도



나. 청구 및 접수

○ 청구인은 청구하고자 하는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정보공개청구서를 제출

〈청구방법〉

- 인터넷(충남넷:열린도정-정보공개방 www.open.go.kr) 및 우편, 직접방문, FAX

〈청구서 기재사항〉

- 청구인의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 주소(법인인 경우 당해 법인명 및 대표자의 이름, 외국인의 경우 여권·외국인의 등록번호)
-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 공개형태 및 수령방법

○ 인터넷(www.open.go.kr) 이외의 우편 또는 직접방문 등에 의해 정보공개청구서가 도착된 때에는 통합정보공개시스템 관리자(총무과 문서담당)에게 즉시 청구서를 송부하여 청구당일 신청내용을 시스템에 입력될 수 있도록 조치

○ 접수된 정보공개청구서는 통합정보공개시스템 관리자(총무과 문서담당)가 소관부서(처리과)로 이송

다. 공개여부 결정

○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공개여부를 결정한 때에는 청구인에게 지체없이 통지
- 통지서식 : 정보(공개, 부분공개, 비공개)결정통지서
  ※ 필요시 e-NALA(정보마당-업무서식)의 서식 통보
- 통지방법 : 결정통지서와 함께 통합정보시스템망을 통한 SMS, 전자우편 등 통보

○ 공공기관(소관부서 : 처리과)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함 - 부득이한 경우 10일 연장가능(§법제11조제2항)

○ 다른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청구 받은 경우

청구받은 정보가 다른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경우는 청구서를 지체없이 당해 기관으로 이송하고, 청구인에게 이를 문서로 통지

○ 제3자의 의견청취

공개대상정보가 제3자와 관련이 있는 경우 공개청구된 청구사실을 제3자에게 「지체없이」 통지하고, 필요시 제3자의 의견을 청취

○ 제3자의 비공개 요청

공개청구된 사실을 통지 받은 제3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당해 공공기관에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요청 할 수 있음.

○ 정보생산기관의 의견 청취

공개청구된 정보가 다른 공공기관이 생산한 정보일 때에는 당해 정보를 생산한 공공기관의 의견을 들어 공개여부를 결정함.

○ 정보공개심의회의 심의

- 공공기관은 정보공개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정보공개심의회를 설치·운영함.
- 정보공개심의회의 심의사항
  - 공개청구된 정보의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
  - 이의신청사항
  - 기타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 제3자의 비공개 요청에도 불구하고 공개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개결정 이유와, 공개실시일을 지체없이 문서로 제3자에게 통지하여야 함.

○ 비공개 결정시 통지방법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 결정을 하였을 경우에는 비공개(부분공개) 사유란에 반드시 비공개(부분공개)사유와 그 근거조항을 명시하여 결정통지서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함.

6. 불복 구제절차

가. 이의 신청

○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 공공기관으로부터 정보공개 여부의 결정 통지를 받은 날 또는 정보공개를 청구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공공기관이 공개여부를 결정하지 아니하여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부터 30일이내에 당해 공공기관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제3자의 이의신청
제3자의 비공개 요청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이 공개결정을 한 경우는 이의신청 하거나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 이의신청 방법
신청인의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 주소(법인·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사무소 또는 그 사업소의 소재지와 대표자의 이름), 이의 신청의 대상이 되는 정보의 공개여부에 대한 결정통지의 내용, 이의신청의 취지 및 이유, 정보공개 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

○ 결과통지
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이내에 수용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통지

○ 행정심판 안내
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각하 또는 기각하는 결정을 한때에는 청구인에게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함께 통지하여야 함.

나. 행정심판

○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때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 청구인은 이의신청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도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음.

다. 행정 소송

○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불복이 있을 때에는 행정소송법이 정하는바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Ⅲ. 통합정보공개시스템 운영

1. 통합정보공개시스템 개요

1. 통합정보공개시스템 개요

개요	최근 국민의 권리의식에 따라 국민의 정보공개 요구 및 국정참여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정보공개법 개정에 따른 전자적 정보공개의 법적 토대가 마련되었다. 또한, 정책적으로 정보공개 활성화를 통한 참여정부 기반 마련을 위해 전자정부 온라인 국민참여 확대 세부 과제 및 행정개혁 핵심 추진 과제로 선정되었다.

■ 사업의 배경

혁신적 온라인 정보공개 서비스 기반 구축 필요

행정환경의 변화 국민의 정보공개 요구 증가와 정보공개법 개정

- 국민 권리의식 향상으로 정보공개법 도입('98) 이후 정보공개 청구건수 급격한 증가
- 최근 정보공개법 개정을 통해 전자적 형태 정보공개 근거를 마련하고 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한 목록공개 의무화 (전자적 목록공개 '05.7.30 시행)
- 증가하는 새로운 행정수요 및 정보 서비스 요구사항 대처를 위해 정보기술을 활용한 온라인 공개기반 구축 필요

내부적 필요성 정보공개 수요증가에 따른 업무처리 행정효율성 제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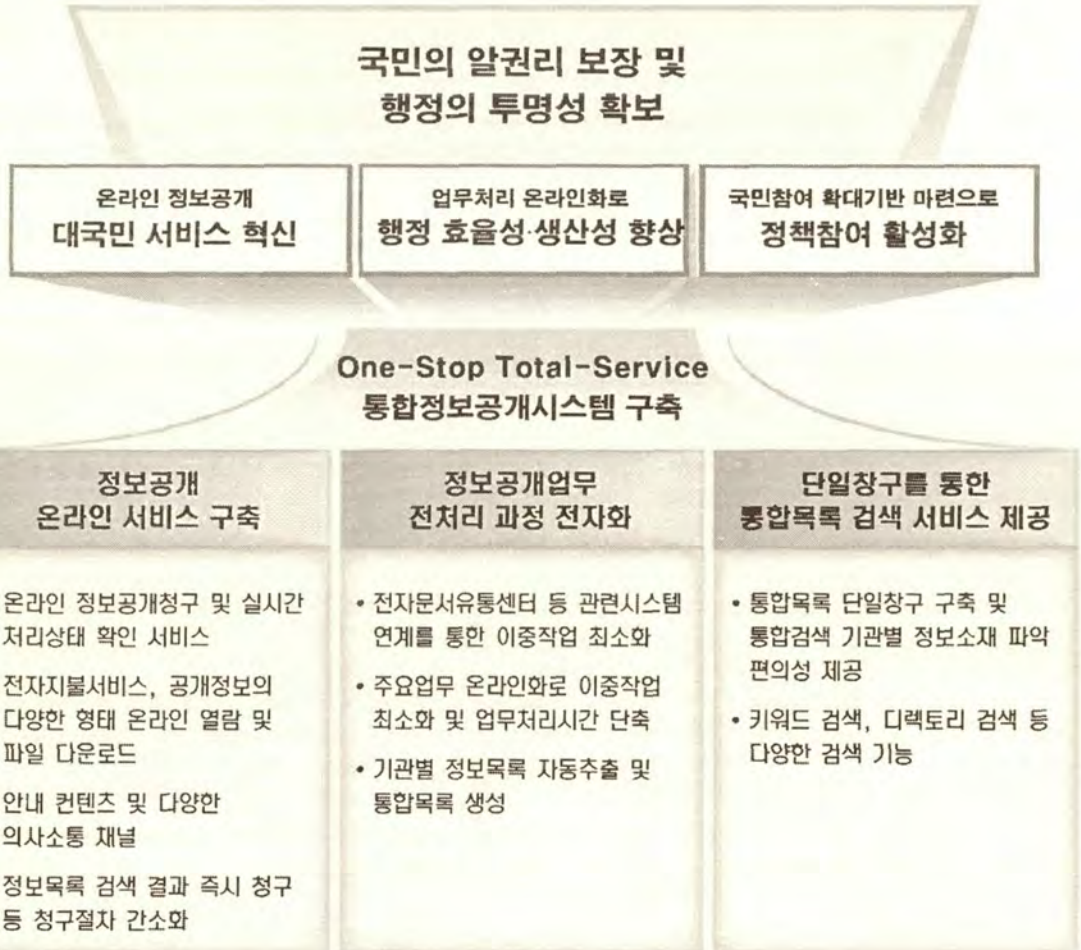
- 정보공개서비스가 현재 부분적·단편적 온라인화되어 있고 대부분 처리가 수작업 및 시스템 간 이중작업 처리
- 증가하는 정보공개 수요에 대해 온라인 상 업무처리 편의 기능이 필요하며 행정시스템 고도화를 통한 행정효율성 제고

정책적 중점과제 정보공개 활성화로 참여정부 기반 마련

- 행정개혁 비전인 '참여하는 정부'를 위한 주요 추진과제로 행정의 개방성 강화, 행정정보 공개확대 및 접근성 제고 선정
- '정보공개제도 활성화'가 행정자치부 2005년도 주요 추진정책 과제
- 통합정보공개시스템 구축은 참여정부 전자정부 로드맵 25대 과제 '온라인 국민참여'의 세부과제로서 2005년 시스템 구축을 통한 온라인 정보공개 확대기반 마련 단계에 있음

■ 사업의 목적

본 사업은 온라인 정보공개 대국민 서비스 혁신, 업무처리 전과정 온라인화로 행정효율성 향상, 국민참여 확대기반 마련을 통한 정책참여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며,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행정의 투명성 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정보공개 One-Stop Total-Service 통합정보공개시스템 구축을 추진한다.



■ 사업의 범위

본 사업은 정보공개청구·관리시스템과 통합목록검색·관리시스템 구축 및 관련시스템 연계, 목록연계를 위한 전자문서시스템 기능변경 지원 등을 포함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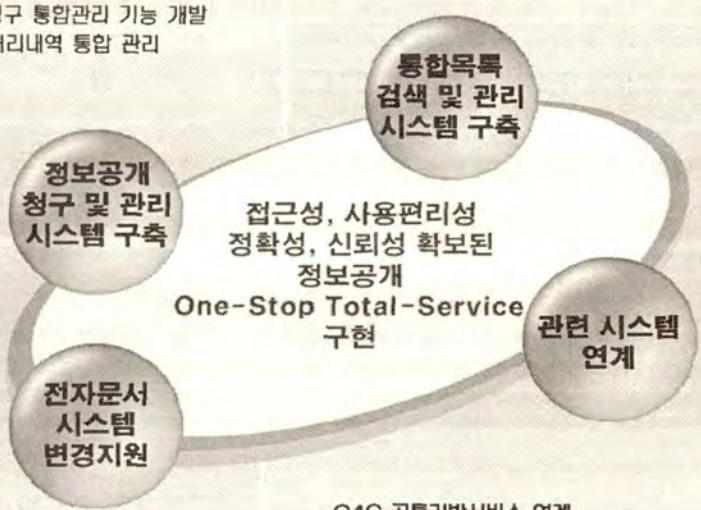
· 온라인 정보공개 서비스 제공 정부 단일창구 구축
- 정보목록 검색 등 정보공개 토털 서비스 제공
- 서비스 접근 편의성 고려한 화면 UI 설계

· 정보공개청구 및 공개정보 열람 등 정보공개청구시스템 구축
- 정보공개청구, 처리상태 확인, 수수료 납부 기능 개발
- 개인별 맞춤 서비스 개발, 사용자 만족도 조사 및 커뮤니케이션 채널 제공

· 정보공개 업무처리 정보공개관리시스템 구축
- 온라인·오프라인 정보공개청구 통합관리 기능 개발
- 개별기관 정보공개시스템 처리내역 통합 관리

· 통합목록검색시스템 구축
- 키워드 검색, 디렉토리 검색 등 통합목록 검색 시스템 구축
- 통합목록 검색 결과 즉시 청구 및 사전공개 자료 열람 기능 제공

· 통합목록관리시스템 구축
- 기관별 정보목록 수집을 위한 연계 및 기능 개발
- 정보목록 검증 기능 개발



· 전자문서시스템 정보공개 관련 기능 개발 지원
- 목록비공개, 사전공개 등 공개여부 관련 세부 지정 기능
- 기록물등록대장 등 정보목록 자동 생성 기능

· 시범서비스 대상 기관 정보공개관련 전자문서시스템 기능 개발 및 설치 지원

· G4C 공통기반서비스 연계
- 전자지불시스템, 회원 통합인증 기능 연계

· 기타 업무처리 관련 시스템 연계
- 전자문서유통센터, 행정표준코드관리시스템 연계
- M-GOV시스템, 주민번호진위확인시스템 연계

서비스 이용 대상기관	정보공개 대상기관 전체		
	중앙행정기관 및 1차 소속기관	시도, 시군구 지방자치단체	시도 교육청

■ 기대효과

통합정보공개시스템이 구축을 통해 예상되는 기대효과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및 국정참여 확대 기반 마련, 업무의 전자화 확대를 통한 행정의 효율성 및 생산성 향상 등의 정성적 효과와 고객의 시간 및 비용절감을 통한 대국민 만족도 제고 및 업무처리 비용 절감을 통한 정부효율성 향상의 정량적 효과로 구분할 수 있다.

국정참여 확대 기반 마련 및 행정 효율성 향상 — 정성적 효과



- 국민의 알권리 보장 및 국정참여 확대 기반 마련
  - -능동적, 적극적 정보공개 서비스를 통한 국민의 알권리 충족 및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한 활발한 국정참여 기회 제공
  - -투명한 행정의 구현을 통해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성 향상
- 다양한 온라인 서비스 제공을 통한 대국민 서비스 개선
  - -통합목록의 검색을 통한 원하는 정보의 소재 및 존재여부 파악 용이
  - -정보의 공개 청구부터 정보의 획득까지 온라인을 통한 일괄처리 구현으로 신속하고 편리한 서비스 제공
- 업무의 전자화 확대를 통한 행정의 효율성 및 생산성 향상
  - -관련시스템 연계를 통한 이중작업 최소화 및 다양한 시스템 지원 기능 제공을 통한 업무처리시간 단축

고객의 시간·비용 절감 및 업무처리 비용 절감 — 정량적 효과



- 고객의 시간 및 비용 절감을 통한 대국민 만족도 제고
  - -통합목록 검색을 통한 청구대상 정보 검색 비용 절감: 연간 약 7억 7천만원
  - -온라인 정보공개를 통한 기관 직접방문 비용 절감: 연간 약 34억원
- 업무처리 비용 절감을 통한 정부효율성 향상
  - -정보공개업무 전 과정 전자화를 통한 청구처리 시간비용 절감: 연간 약 148억원
  - -통합서비스 제공을 통한 기관별 정보공개시스템 구축비용 절감: 약 482억원

2. 통합정보공개시스템 운영방법

가. 신청인의 정보공개 청구

○ 정보공개청구 흐름도

청 구 ⇒ 처리상태 확인 ⇒ 수수료 납부 ⇒ 결과확인

○ 정보공개청구 방법

통합정보공개시스템 열린정부(open.go.kr) ⇒ 정보공개청구 ⇒ 청구신청 ⇒ 신청자 정보입력(회원: I·D및 비밀번호, 비회원 : 주민등록번호·성명) ⇒ 비회원인 경우 입력사항(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 주소) ⇒ 청구기관 선택 ⇒ 청구할 정보내용 입력 ⇒ 비밀번호 입력 ⇒ 청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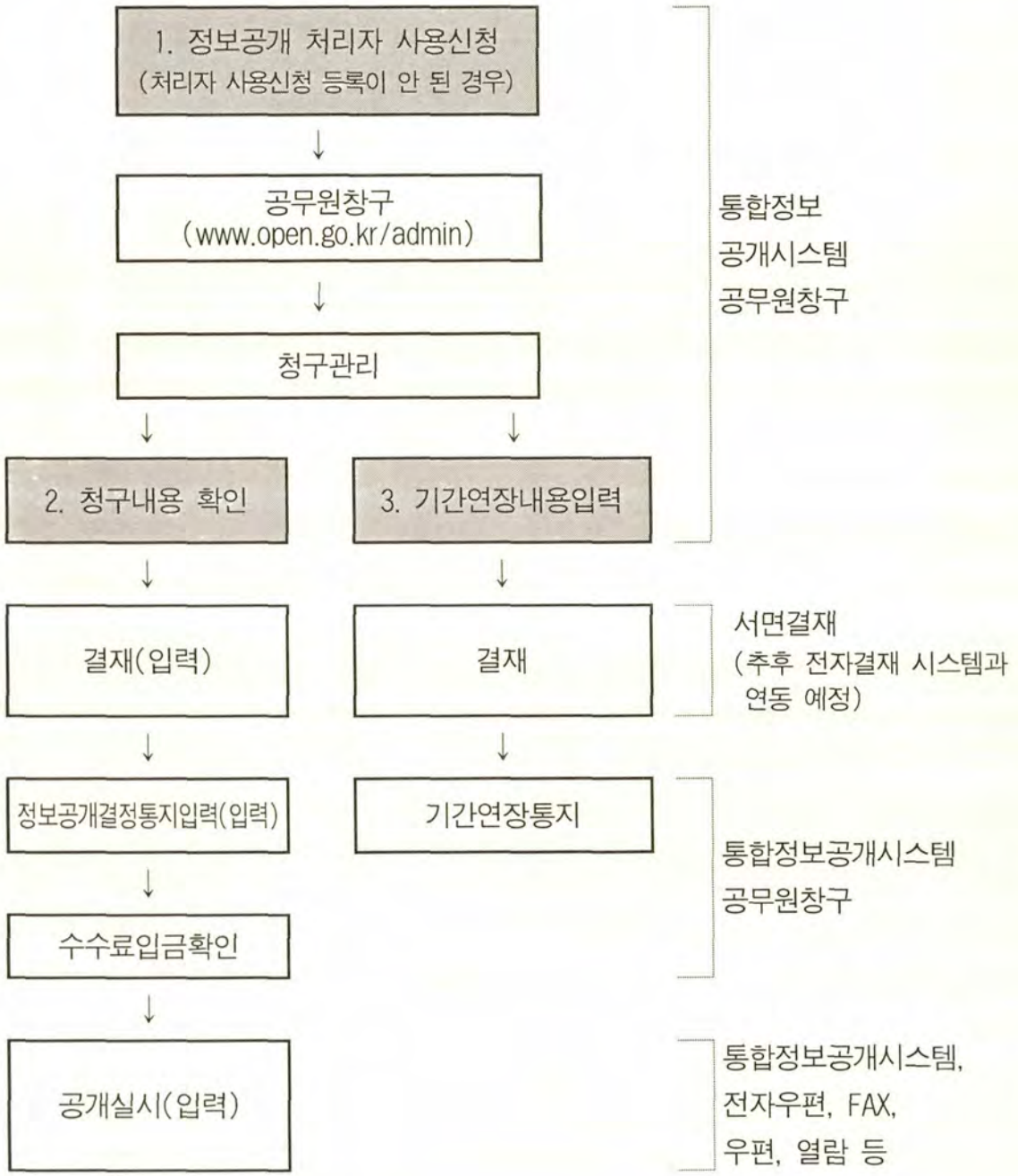



주소(D) http://www.open.go.kr/pa/index.jsp
열
정보공개안내
정보찾기
정보공개청구
열린마당
정보공개도우미
로그인
회원가입
English
QUICK MENU
로그인
검색
처음으로>로그인
MEMBERSHIP
회/원/가/입
회원가입
로그인
대한민국 전자정부 웹사이트 회원
로그인
비밀번호
로그인
회원가입
좀 더 빠르고 편리한 서비스를 원하신다면 회원가입을 해주세요.
아이디찾기
비밀번호찾기
대한민국 전자정부 웹사이트 비회원


주소(D) http://www.open.go.kr/pa/index.jsp
로그인
로그인
비밀번호
로그인
회원가입
QUICK MENU
좀 더 빠르고 편리한 서비스를 원하신다면 회원가입을 해주세요.
아이디찾기
비밀번호찾기
대한민국 전자정부 웹사이트 비회원
회원가입을 하지 않은 비회원일 경우에도 정보공개청구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정보공개청구 서비스를 이용하실 경우
필요한 개인정보를 매번 다시 입력하셔야 합니다.
• 구분
개인(내국인)
• 성명
• 주민등록번호
확인
취소
열린정부

나. 정보공개청구 처리

< 업무 처리도 >



< 시스템 사용방법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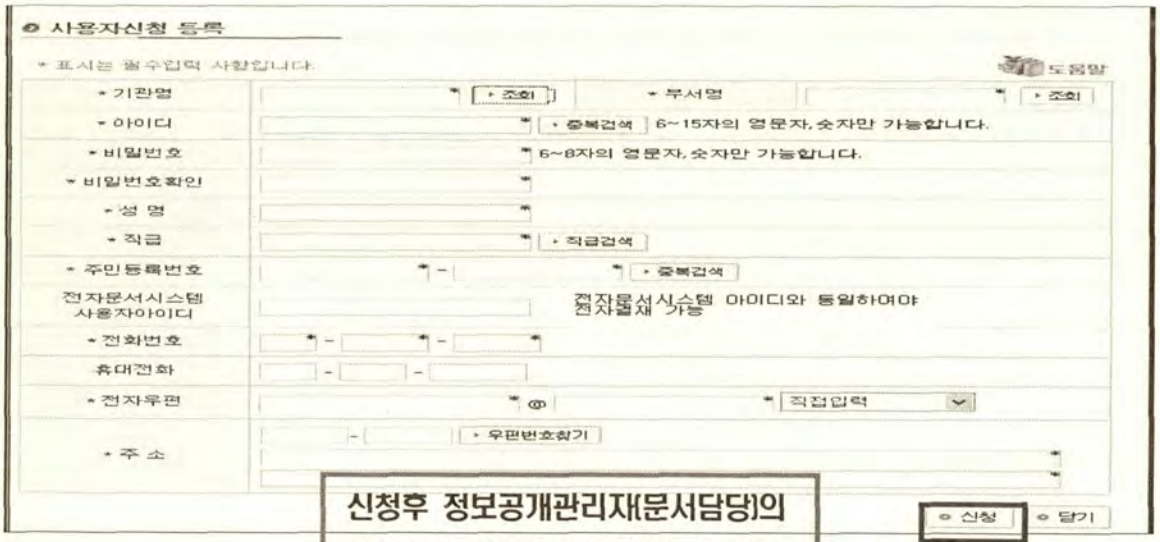
1) 정보공개처리자 사용신청(www.open.go.kr/admin)

- 대상자
  - 정보공개청구건에 대한 해당 실무처리 담당자(필수)
  - 부서정보공개 총괄 담당자(필수)
  - 정보공개청구요청이 있었던 업무처리 담당자
  - 정보공개청구가 예상되는 업무처리 담당자
- 신청방법
  - 공무원창구 초기화면(open.go.kr/admin) ⇒ 사용자신청클릭 ⇒ 부서명, I·D, Password 등 해당내용입력(직급란은 주사, 서기 등을 입력 후 검색을 누르고 사용자 해당 직급을 선택하여 클릭) ⇒ 신청클릭(☜정보공개관리자가 권한부여 후 사용가능)

☞ **부서이동시 수정사항(개인이 직접 수정)**

로그인 ⇒ 회원정보관리 ⇒ "수정" 클릭 ⇒ 변경된 부서명 선택 ⇒ 저장





신청후 정보공개관리자(문서담당)의 사용승인 있어야 업무처리 가능함.

2) 청구서에 대한 결정처리 절차

① 결정내용 입력 : 로그인 ⇒ 청구관리 ⇒ 부서청구서현황 ⇒ 해당 제목 클릭 ⇒ 상세화면 "결정" 클릭 ⇒ 결정통지서 내용 입력(입금계좌: 농협 474-01-003023 충남도청) ⇒ 저장

※ 수수료 :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규칙(별표)참조





⇓

결정통지서 중 별표(*)항목은 필히 입력되어야 함

② 수동결재 : 해당 제목클릭 ⇒ 상세화면 "수동결재" 클릭 ⇒ 결재내용 입력(서면으로 결재한 내용입력) ⇒ 등록

③ 통　　지 : 해당 제목클릭 ⇒ 상세화면 "통지" 클릭 ⇒ "전자우편" 또는 "SMS(휴대폰문자메시지)" 클릭

④ 공개실시 : 해당 제목클릭 ⇒ 상세화면 "공개실시" 클릭

3) 정보공개결정기간 연장 등록

로그인 ⇒ 청구관리 ⇒ 부서청구서현황 ⇒ 해당제목 클릭 ⇒ 상세화면 ⇒ "기간연장" 클릭⇒ 연장통지서 내용입력 ⇒ 저장 ⇒ 기간연장현황 해당제목클릭 ⇒ 상세화면 "결재" 클릭 ⇒ 확인

4) 내용입력시 "문서등록"란 중 첨부파일 입력방법

- 공개정보가 전자파일인 경우 : 첨부파일을 더블 클릭하여 해당파일 선택
- 공개정보가 전자파일이 아닌 경우 : 전자파일형식(제목. 확장자)으로 수동입력
- 첨부파일은 1개만 입력가능

☜ 파일이 여러개일 경우 하나의 파일로 만들어서 첨부하여야 함

5) 정보공개결정기간 연장 등록

로그인 ⇒ 청구관리 ⇒ 부서청구서현황 ⇒ 해당제목 클릭 ⇒ 상세화면 ⇒ "기간연장" 클릭 ⇒ 연장통지서 내용입력 ⇒ 저장 ⇒ 기간연장현황 해당제목클릭 ⇒ 상세화면 "결재" 클릭 ⇒ 확인

6) 시스템 사용에 관한 문의

○ 구축 주관기관 : 행정자치부 공개행정팀 (☎ 2100-3476)

○ 道 소관부서 : 총무과(문서담당) (☎ 행정 2563)

7) 기타사항 처리 및 상세설명

○ 통합정보공개시스템 공무원창구(open.go.kr/admin) "동영상교육자료" 및 "사용자메뉴얼(68~127쪽)" 참고

♣ 열린정부란?

○ 도입배경

인터넷 정보공개청구는 2000년 8월부터 행정자치부 주관으로 추진되어 왔으며 대한민국전자정부 사이트에서 운영해 오다 2006년 4월27일 부터 통합정보공개시스템을 구축하여 열린정부 대국민창구를 운영중에 있다. 정보공개청구와 관련한 모든 처리과정은 이 시스템에서 이루어 진다.

○ 시스템 개요

열린정부 대국민창구 www.open.go.kr 는 행정기관의 정보공개를 활성화하기 위해 온라인 정보공개 서비스제공을 위한 정부 단일창구로서 정보공개청구부터 원하는 정보의 획득까지 정보공개 전 과정을 온라인으로 서비스하고 기관의 정보목록을 수집하여 원하는 정보의 소재 파악을 위해 통합목록을 검색할 수 있도록 구축되었다.

■ 이용절차



Ⅳ. 행정소송 사례

1 대법원 판례

가. 간담회연찬회 등 각종 행사관련 지출증빙서류청구

나. 사면실시 건의서 및 사면심의에 관한 국무회의 안건자료 공개청구

다.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회의록 공개청구

라. 사법시험의 답안지 열람청구

마. 정보공개소송관련 당사자변경 사건

바. 업무추진비 세부항목별집행내역 및 그 증빙서류

사. 정보공개심의회구성관련 조례안 의결 무효확인

아. 보안관찰 관련 통계자료 공개청구

2 고법·행정법원 판결

가. 국가안전기획부의 자료청구

나. 세무조사 결과 자료청구

다.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자료청구 등

라. 업무추진비 공개청구

※ 본 판례내용 중 법규조항은 개정된 법률이 시행되기 전에 적용된 구법 규정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대법원 판례

가. 간담회 연찬회 등 각종행사관련 지출증빙서류 청구

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3두8050 판결 【사본공개거부 처분취소】

원 고 : 충주환경운동연합(피상고인)

피 고 : 충주시장(상고인)

【판시사항】

[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소정의 국민의 범위 및 정보공개거부처분을 받은 청구인이 그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적극)

[2]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자가 공공기관에 대해 정보의 사본 또는 출력물의 교부의 방법으로 공개방법을 선택하여 정보공개청구를 한 경우, 공개청구를 받은 공공기관이 그 공개방법을 선택할 재량권이 있는지 여부(소극)

[3]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6호 단서 (다)목 소정의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기준

[4]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 없이 개인적인 자격으로 간담회·연찬회 등 행사에 참석하고 금품을 수령한 정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6호 단서 (다)목 소정의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국민에는 자연인은 물론 법인, 권리능력 없는 사단·재단도 포함되고, 법인, 권리능력 없는 사단·재단 등의 경우에는 설립목적을 불문하며, 한편 정보공개청구권은 법률상 보호되는 구체적인 권리이므로 청구인이 공공기관에 대하여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가 거부처분을 받은 것 자체가 법률상 이익의 침해에 해당한다.

[2]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조, 제5조, 제8조 제1항, 같은법 시행령 제14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2조 [별지 제1호 서식] 등의 각 규정을 종합하면,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자가 공공기관에 대해 정보의 사본 또는 출력물의 교부의 방법으로 공개방법을 선택하여 정보공개청구를 한 경우에 공개청구를 받은 공공기관으로서는 같은 법 제8조 제2항에서 규정한 정보의 사본 또는 복제물의 교부를 제한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정보공개청구자가 선택한 공개방법에 따라 정보를 공개하여야 하므로 그 공개방법을 선택할 재량권이 없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3]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6호 단서 (다)목 소정의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비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인의 사생활 보호 등의 이익과 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국민의 알권리의 보장과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 및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 등의 공익을 비교·교량하여 구체적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4]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 없이 개인적인 자격으로 간담회·연찬회 등 행사에 참석하고 금품을 수령한 정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6호 단서 (다)목 소정의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주 문】

원심판결 중 공무원에 관한 정보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기각 부분의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당사자능력 및 당사자적격 등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국민에는 자연인은 물론 법인, 권리능력 없는 사단·재단도 포함되고, 법인, 권리능력 없는 사단 · 재단 등의 경우에는 설립목적을 불문하며, 한편 정보공개청구권은 법률상 보호되는 구체적인 권리이므로 청구인이 공공기관에 대하여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가 거부처분을 받은 것 자체가 법률상 이익의 침해에 해당한다(대법원 2003. 3. 11. 선고 2001두6425 판결 참조).

원심은 이유는 다르지만 권리능력 없는 사단인 원고에게 이 사건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는 당사자능력과 이 사건 정보공개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판단한 결론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정보공개청구에 있어서의 당사자능력이나 당사자적격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2. 정보공개방법의 선택에 관한 재량권에 대하여

법 제2조 제2항, 제3조, 제5조, 제8조 제1항, 법시행령 제14조, 법시행규칙 제2조 [별지 제1호 서식] 등의 각 규정을 종합하면,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자가 공공기관에 대해 정보의 사본 또는 출력물의 교부의 방법으로 공개방법을 선택하여 정보공개청구를 한 경우에 공개청구를 받은 공공기관으로서는 법 제8조 제2항에서 규정한 정보의 사본 또는 복제물의 교부를 제한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정보공개청구자가 선택한 공개방

법에 따라 정보를 공개하여야 하므로 그 공개방법을 선택할 재량권이 없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대법원 2003. 3. 11. 선고 2002두2918 판결 참조).
원심은 원고가 피고에게 그 판시의 정보(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를 사본 또는 출력물의 교부의 방법에 의하여 공개하여 줄 것을 청구한 이상, 피고로서는 법 제8조 제2항에 규정된 사유가 있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원고가 선택한 공개방법에 따라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고 한 다음, 이 사건 정보가 '이미 널리 알려진 사항'이 아님은 명백하고, 나아가 '청구량이 과다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자료도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정보의 사본 또는 출력물의 교부의 방법에 의한 공개청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에게 열람의 방법에 의한 공개를 선택할 재량권이 있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위에서 본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정보공개 방법의 선택에 대한 재량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3. 공무원에 관한 정보에 대하여

가. 법 제7조 제1항 제6호는 비공개대상정보의 하나로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하여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이하 '개인식별정보'라 한다)를 규정하면서, 같은 호 단서 (다)목으로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제외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비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인의 사생활 보호 등의 이익과 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국민의 알권리의 보장과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 및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 등의 공익을 비교·교량하여 구체적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위 대법원 2001두6425 판결 참조).

나. 원심은 이 사건 정보 가운데 피고가 주최한 간담회·연찬회 등 각종 행사 관련 지출 증빙에 포함된 행사참석자를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이하 '행사참석자정보'라 한다) 중 그 개인이 공무원인 경우의 정보는,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하고, 따라서 피고가 위 정보의 공개를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행사참석자정보 중 그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행사에 참석한 경우의 정보는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인정된다 하더라도, 그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 없이 개인적인 자격 등으로 행사에 참석한 경우의 정보는 그 공무원의 사생활 보호라는 관점에서 보더라도 위와 같은 정보가 공개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위 정보의 비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이익보다 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이익이 우월하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이는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3. 3. 11. 선고 2001두724 판결 참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행사참석공무원에 관한 정보는 모두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으니, 거기에는 법 제7조 제1항 제6호의 비공개대상정보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행사참석자정보 중 행사에 참석한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 없이 개인적인 자격으로 참석한 경우가 있는지 여부에 관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

다. 원심은 이 사건 정보 가운데 피고가 시정홍보 협조인사에 대한 선물이나 사례, 불우이웃주민이나 이재민에 대한 격려 및 위로 기타 유사한 명목으로 지급한 금품에 관한 지출증빙에 포함된 위 금품의 최종수령자를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이하 '금품수령자정보'라 한다) 중 그 개인이 공무원인 경우의 정보는,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하고, 따라서 피고가 위 정보의 공개를 거부

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금품수령자정보 중 그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령한 정보는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인정된다 하더라도, 그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 없이 개인적인 자격 등으로 금품을 수령한 경우의 정보는 그 공무원의 사생활 보호라는 관점에서 보더라도 그 정보가 공개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위 정보의 비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이익보다 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이익이 우월하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이는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위 대법원 2001두724 판결 참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금품수령공무원에 관한 정보는 모두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으니, 거기에는 법 제7조 제1항 제6호의 비공개대상정보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금품수령자정보 중 금품을 수령한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 없이 개인적인 자격으로 금품을 수령한 경우가 있는지 여부에 관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

4. 법인 · 단체 및 영업소를 경영하는 개인의 정보에 대하여

법 제7조 제1항 제7호 본문에 의하면, 법인 · 단체 또는 영업소를 경영하는 개인이 금품을 수령한 정보는 '법인 · 단체 또는 개인의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원심은 법인 · 단체 또는 영업소를 경영하는 개인이 금품을 수령한 정보는 '법인 · 단체 또는 개인의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에 해당하지만 위 정보가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피고가 위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관계 증거를 위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는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법 제7조 제1항 제6호, 제7호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5. 결 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공무원에 관한 정보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여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고,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모두 기각하며, 상고기각 부분의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나. 사면실시 건의서 및 사면심의에 관한 국무회의 안건자료 공개청구

대법원 2003. 12.11. 선고 2001두8827 판결【정보공개청구거부처분취소】

원 고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상고인)

피 고 : 법무부장관(피상고인)

【판시사항】

[1] 정보공개를 요구받은 공공기관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몇 호 소정의 비공개사유에 해당하는지를 주장·입증하지 아니한 채 개괄적인 사유만을 들어 그 공개를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에 있어서 당초의 처분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없는 별개의 사실을 처분사유로 주장하는 것을 허용하지 아니하는 입법취지 및 추가 또는 변경된 사유가 당초의 처분시 이미 존재하고 있었고 당사자도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 하여 당초의 처분사유와 동일성이 있는 것인지 여부(소극)

[3] 당초의 정보공개거부처분사유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4호 및 제6호의 사유는 새로이 추가된 같은 항 제5호의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조, 제3조, 제6조는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모든 국민에게 원칙적으로 공개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국민으로부터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공개를 요구받은 공공기관으로서는 같은 법 제7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하고 있는 비공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이를 공개하여야 할 것이고, 만일 이를 거부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대상이 된 정보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검토하여 어느 부분이 어떠한 법익 또는 기본권과 충돌되어 같은 법 제7조 제1항 몇 호에서 정하고 있는 비공개사유에 해당하는지를 주장·입증하여야만 할 것이며, 그에 이르지 아니한 채 개괄적인 사유만을 들어 공개를 거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2]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에 있어서, 처분청은 당초 처분의 근거로 삼은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만 다른 사유를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있고, 여기서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 유무는 처분사유를 법률적으로 평가하기 이전의 구체적인 사실에 착안하여 그 기초인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한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며 이와 같이 기본적 사실관계와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별개의 사실을 들어 처분사유로 주장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이유는 행정처분의 상대방의 방어권을 보장함으로써 실질적 법치주의를 구현하고 행정처분의 상대방에 대한 신뢰를 보호하고자 함에 그 취지가 있고, 추가 또는 변경된 사유가 당초의 처분시 그 사유를 명기하지 않았을 뿐 처분시에 이미 존재하고 있었고 당사자도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 하여 당초의 처분사유와 동일성이 있는 것이라 할 수 없다.

[3] 당초의 정보공개거부처분사유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4호 및 제6호의 사유는 새로이 추가된 같은 항 제5호의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없다고 한 사례.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은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원심판결 제1목록 및 제2목록 기재 정보 중 "사면실시건의서 및 사면심의에 관한 국무회의 안건자료"(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의 공개를 청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1999. 8. 18. 이 사건 정보에는 사면대상 또는 제외자의 이름 및 그 사유 등이 포함되어 있어 이를 공개할 경우 당사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등의 우려가 있고 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 제1항 제6호의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 등에 의하여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공개하기 곤란하고, 또한 특정인에 대한 사면관련 검토내용이 공개될 경우 향후 범죄의 예방, 수사, 형의 집행, 업무 수행에 곤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법 제7조 제1항 제4호의 "진행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의 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로서 공개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공개를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가 제1심 변론에서 이 사건 정보는 법 제7조 제1항 제5호의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에도 해당한다는 이유로 비공개처분사유를 추가하면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가 처분사유로 추가한 제5호의 비공개사유는 당초의 처분사유인 제4호 및 제6호의 사유와는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처분사유로 제5호를 추가하는 것은 허용되어

서는 아니되고 나아가 이 사건 정보는 법 제7조 제1항 제4, 5, 6호에 해당하는 정보가 아니므로 공개되어야 한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가 당초 원고의 사면관련 정보의 공개를 거부하면서 그 거부 이유로 법 제7조 제1항 제4호 및 제6호를 적시한 것은 그 전체적인 취지가 이 사건 정보가 법 제7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함을 전제로 그 예시로 제4호와 제6호만을 기재한 것으로 볼 수도 있고, 피고가 주장하는 제5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유가 이 사건 처분 후에 새로 발생한 사실을 토대로 한 것이 아니라 처분 당시에 이미 존재한 사실에 기초한 것이며, 제5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는 그 적용범위에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와 그 내용상 큰 차이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처분사유로 추가한 제5호의 사유는 당초의 처분사유인 제4호 및 제6호의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보아도 무방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사유의 추가를 허용한 다음,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정보는 법 제7조 제1항 제5호의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인정하여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였다.

2. 그러나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할 수 없다.

법 제1조, 제3조, 제6조는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모든 국민에게 원칙적으로 공개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국민으로부터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공개를 요구받은 공공기관으로서는 법 제7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하고 있는 비공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이를 공개하여야 할 것이고, 만일 이를 거부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대상이 된 정보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검토하여 어느 부분이 어떠한 법익 또는 기본

권과 충돌되어 법 제7조 제1항 몇 호에서 정하고 있는 비공개사유에 해당하는지를 주장·입증하여야만 할 것이며, 그에 이르지 아니한 채 개괄적인 사유만을 들어 공개를 거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므로

피고가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거부하면서 그 거부이유로 법 제7조 제1항 제4호 및 제6호를 적시한 전체적인 취지가 이 사건 정보는 법 제7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함을 전제로 그 예시로 제4호와 제6호만을 기재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그리고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에 있어서, 처분청은 당초 처분의 근거로 삼은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만 다른 사유를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있고, 여기서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 유무는 처분사유를 법률적으로 평가하기 이전의 구체적인 사실에 착안하여 그 기초인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한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며 이와 같이 기본적 사실관계와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별개의 사실을 들어 처분사유로 주장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이유는 행정처분의 상대방의 방어권을 보장함으로써 실질적 법치주의를 구현하고 행정처분의 상대방에 대한 신뢰를 보호하고자 함에 그 취지가 있고(대법원 1988. 1. 19. 선고 87누603 판결, 1999. 3. 9. 선고 98두18565 판결, 2001. 3. 23. 선고 99두6392 판결, 2001. 9. 28. 선고 2000두8684 판결 등 참조), 추가 또는 변경된 사유가 당초의 처분시 그 사유를 명기하지 않았을 뿐 처분시에 이미 존재하고 있었고 당사자도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 하여 당초의 처분사유와 동일성이 있는 것이라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2. 2. 14. 선고 91누3895 판결 참조).

그런데 법 제7조 제1항 제4호는 범죄의 예방, 수사, 형의 집행, 교정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를, 제5호는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를, 제6호는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하여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이하 '개인식별정보'라 한다)를 각 비공개대상정보로 규정하고 있어 그 비공개사유의 요건이 되는 사실을 달리하고 있을 뿐 아니라 제4호와 제5호가 모두 직무수행이나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를 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지장이 초래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구체적인 직무나 업무의 내용이 전혀 다르고, 또한 제4호의 위 정보를 비공개대상정보로 하고 있는 것은 범죄의 일방예방 및 특별예방, 원활한 수사 및 교정행정의 원활성을 보호하고자 함에, 제5호의 위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을 비공개대상정보로 하고 있는 것은 공개로 인하여 공공기관의 의사결정이 왜곡되거나 외부의 부당한 영향과 압력을 받을 가능성을 차단하여 중립적이고 공정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도록 하고자 함에, 제6호의 개인식별정보를 비공개대상정보로 하고 있는 것은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존중 및 개인의 자신에 대한 정보통제권을 보장하는 등 정보공개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제3자의 법익침해를 방지하고자 함에 각 그 취지가 있어 그 각 정보를 비공개대상정보로 한 근거와 입법취지가 다른 점 등 여러 사정을 합목적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가 처분사유로 추가한 법 제7조 제1항 제5호의 사유와 당초의 처분사유인 같은 항 제4호 및 제6호의 사유는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며, 추가로 주장하는 제5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유가 이 사건 처분 후에 새로 발생한 사실을 토대로 한 것이 아니라 당초의 처분 당시에 이미 존재한 사실에 기초한 것이라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가 처분사유로 추가한 법 제7조 제1항 제5호의 사유가 당초의 처분사유인 같은 항 제4호 및 제6호의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판단한 데에는 처분사유의 동일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3. 그러므로 원고의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회의록 공개청구

대법원 2003. 8. 22. 선고 2002두12946 판결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원 고 : ○○○외 10인(상고인)
피 고 : 경기도 고양교육청 교육장(피상고인)

【판시사항】

[1] 의사결정과정에 제공된 회의관련 자료나 의사결정과정이 기록된 회의록 등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5호 소정의 '의사결정과정에 있는 사항'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되는지 여부(적극)

[2]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5호 소정의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의 의미 및 그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

[3] 학교환경위생구역 내 금지행위(숙박시설) 해제결정에 관한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회의록에 기재된 발언내용에 대한 해당 발언자의 인적사항 부분에 관한 정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5호 소정의 비공개대상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 비공개대상정보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살펴보면, 같은 법 제7조 제1항 제5호에서의 '감사·감독·검사·시험·규

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은 비공개대상정보를 예시적으로 열거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의사결정과정에 제공된 회의관련 자료나 의사결정과정이 기록된 회의록 등은 의사가 결정되거나 의사가 집행된 경우에는 더 이상 의사결정과정에 있는 사항 그 자체라고는 할 수 없으나, 의사결정과정에 있는 사항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비공개대상정보에 포함될 수 있다.

[2]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5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라 함은 같은 법 제1조의 정보공개제도의 목적 및 같은 법 제7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비공개대상정보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객관적으로 현저하게 지장을 받을 것이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존재하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 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비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업무수행의 공정성 등의 이익과 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국민의 알권리의 보장과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 및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 등의 이익을 비교·교량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신중하게 판단되어야 한다.

[3] 학교환경위생구역 내 금지행위(숙박시설) 해제결정에 관한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회의록에 기재된 발언내용에 대한 해당 발언자의 인적사항 부분에 관한 정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5호 소정의 비공개대상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 제1항 제5호가 비공개대상정보로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등'이라고 한 규정형식과 같은 규정에 의한 비공개대상정보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살펴보면, 법 제7조 제1항 제5호에서의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은 비공개대상정보를 예시적으로 열거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의사결정과정에 제공된 회의관련 자료나 의사결정과정이 기록된 회의록 등은 의사가 결정되거나 의사가 집행된 경우에는 더 이상 의사결정과정에 있는 사항 그 자체라고는 할 수 없으나, 의사결정과정에 있는 사항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비공개대상정보에 포함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0. 5. 30. 선고 99추85 판결, 2003. 5. 16. 선고 2001두4702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판시의 학교환경위생구역 내 금지행위(숙박시설) 해제결정에 관한 피고 산하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이하 '정화위원회'라 한다)의 회의록은 이미 종료된 위 정화위원회의 심의회의절차를 사후적으로 기록한 것으로서 비록 법 제7조 제1항 제5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사결정과정에 있는 사항' 그 자체는 아니지만 이에 준하는 사항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기록과 관계 법령 및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법 제7조 제1항 제5호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법 제7조 제1항 제5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라 함은 법 제1조의 정보공개제도의 목적 및 법 제7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비공개대상정보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

정한 수행이 객관적으로 현저하게 지장을 받을 것이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존재하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 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비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업무수행의 공정성 등의 이익과 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국민의 알권리의 보장과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 및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 등의 이익을 비교·교량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신중하게 판단되어야 할 것이다.

원심은, 위 정화위원회의 심의회의에서는 위 정화위원회의 의사결정에 관련된 문답과 토의가 이루어지므로 자유롭고 활발한 심의가 보장되기 위하여는 심의회의가 종료된 이후에도 심의과정에서 누가 어떤 발언을 하였는지에 관하여는 외부에 공개되지 않도록 이를 철저히 보장하여야 할 필요성 즉, 위 정화위원회의 회의록 중 발언내용 이외에 해당 발언자의 인적 사항까지 공개된다면 정화위원들이나 출석자들은 자신의 발언내용에 관한 공개에 대한 부담으로 인한 심리적 압박 때문에 위 정화위원회의 심의절차에서 솔직하고 자유로운 의사교환을 할 수 없고, 심지어 당사자나 외부의 의사에 영합하는 발언을 하거나 침묵으로 일관할 우려마저 있으므로, 이러한 사태를 막아 정화위원들이 심의에 집중하도록 함으로써 심의의 충실화와 내실화를 도모하기 위하여는 회의록의 발언내용 이외에 해당 발언자의 인적 사항까지 외부에 공개되어서는 아니된다 할 것이어서, '회의록에 기재된 발언내용에 대한 해당 발언자의 인적 사항' 부분은 그것이 공개될 경우 정화위원회의 심의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기록과 관계 법령 및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정화위원회의 심의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라. 사법시험의 답안지 열람청구

대법원 2003. 3. 14. 선고 2000두6114 판결 【답안지열람거부처분취소】
원 고 : ○○○외 1인(상고인)
피 고 : 법무부장관(피상고인)

【판시사항】

[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5호 소정의 시험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2] 사법시험 제2차 시험의 답안지 열람은 시험문항에 대한 채점위원별 채점결과의 열람과 달리 사법시험업무의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5호 소정의 시험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지 여부는 법 및 시험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입법취지, 당해 시험 및 그에 대한 평가행위의 성격과 내용, 공개의 내용과 공개로 인한 업무의 증가, 공개로 인한 파급효과 등을 종합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

[2] 사법시험 제2차 시험의 답안지 열람은 시험문항에 대한 채점위원별 채점결과의 열람과 달리 사법시험업무의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주 문】

원심판결의 원고들 패소 부분 중 답안지의 열람청구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들의 나머지 상고를 각 기각한다.

【이 유】

1. 답안지 및 각 시험문항에 대한 채점위원별 채점 결과의 사본교부청구에 관하여

원심은, 행정소송에서 법원에 제출한 준비서면의 내용 중에 자신이 작성한 답안지와 각 시험문항에 대한 채점위원별 채점 결과를 기재한 서류의 사본을 교부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한 것만으로는 공공기관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한 것으로 볼 수 없음은 물론, 원고들이 제1심 제2차 준비절차에서 위 준비서면을 진술하는 기회에 이 사건 소로써 구하는 것은 '답안지 및 각 시험문항에 대한 채점위원별 채점 결과의 열람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의 취소'라고 그 청구취지를 명백히 함으로써 위 준비서면에서의 사본교부신청에 관한 주장을 철회하는 취지의 의사표시를 하였음이 명백하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이 부분에 관한 소는 거부처분의 전제가 되는 사본교부신청 자체가 없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하였는바, 기록에 의하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옳고, 거기에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호 소정의 공개와 행정소송에서의 거부처분 및 자백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답안지와 각 시험문항에 대한 채점위원별 채점 결과의 열람에 관하여

가. 원심은, 논술형 시험인 사법시험 제2차 시험은 그 시험을 통하여 응시자의 법학지식에 관한 전반적 이해의 정도, 논리적 사고력, 문제에서 제시되고 있는 제반 논점의 해결과 관련된 응용능력, 창의성 및 조직적 서술능력 일체를 전반적으로 평가하기 위하여 시행되는 것으로서 응시자의 총체적인 학업성취도와 사고능력을 측정하는 데 유용한 수단이고, 이러한 논술형 시험에 대한 평가업무는 평가자(채점자)가 보유하고 있는 고도의 전문적 식견과 학식 등에 근거한 평가자의 주관적 평가에 의존할 것이 예정되어 있음을 그 본질적인 속성으로 하므로 평가기준과 평가 결과는 평가자에게 전속한 고도의 전문적·주관적 판단과 도덕적 양심에 일임함

으로써 비로소 평가사무의 적정성이 보장되는 것인데, 답안지 및 시험문항에 대한 채점위원별 채점 결과를 열람하도록 하면, 다의적일 수밖에 없는 평가기준과 주관적 평가 결과 사이의 정합성을 둘러싸고 시험 결과에 이해관계를 가진 자들로부터 제기될지도 모를 시시비비에 일일이 휘말리는 상황이 초래될 우려가 있고, 그럴 경우 업무수행상의 공정성을 확보할 수 없을 뿐 아니라 그 평가업무의 수행자체에 지장을 초래할 것이 명백함은 물론, 궁극적으로는 논술형시험의 존립이 무너지게 될 염려가 있다고 하면서, 법의 입법취지와 논술형시험의 속성 및 시험관리와 그 평가사무의 본질, 공개로 인한 파장 등에 비추어 볼 때 답안지와 시험문항에 대한 채점위원별 채점 결과를 열람하도록 할 경우 시험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어 비공개정보에 해당되므로 그 열람을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나. 법 제7조 제1항 제5호는 시험에 관한 사항(이하 '시험정보'라 한다)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시험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지 여부는 법 및 시험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입법취지, 당해 시험 및 그에 대한 평가행위의 성격과 내용, 공개의 내용과 공개로 인한 업무의 증가, 공개로 인한 파급효과 등을 종합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할 것이다.

먼저, 시험문항에 대한 채점위원별 채점 결과의 열람에 관하여 보건대,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위 법리에 따른 것으로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법 제7조 제1항 제5호 소정의 정보비공개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음, 답안지의 열람에 관하여 보건대, 답안지를 열람하도록 할 경우 업무의 증가가 다소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다른 논술형시험의 열람 여부에도 영향이 있는 등 파급효과로 인하여 시험업무의 수행에 다소 지장을

초래한다고 볼 수 있기는 하지만, 답안지는 응시자의 시험문제에 대한 답안이 기재되어 있을 뿐 평가자의 평가기준이나 평가 결과가 반영되어 있는 것은 아니므로 응시자가 자신의 답안지를 열람한다고 하더라도 시험문항에 대한 채점위원별 채점 결과가 열람되는 경우와 달리 평가자가 시험에 대한 평가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지장을 초래할 가능성이 적은 점, 답안지에 대한 열람이 허용된다고 하더라도 답안지를 상호비교함으로써 생기는 부작용이 생길 가능성이 희박하고, 열람업무의 폭증이 예상된다고 볼만한 자료도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답안지의 열람으로 인하여 시험업무의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답안지를 열람하도록 하면, 시험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판단한 것은, 법 제7조 제1항 제5호 소정의 비공개정보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따라서 이 점을 지적하는 원고들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의 원고들 패소 부분 중 답안지의 열람청구부분을 파기하여 그 부분을 다시 심리 · 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고, 원고들의 나머지 상고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마. 정보공개소송관련 당사자변경 사건

대법원 2003. 3. 11. 선고 2002두8459 판결 【사본공개거부처분취소】
원 고 : 울산참여자치연대(표시정정 전의 원고 : ○○○, 피상고인)
피 고 : 울산광역시장 외 4인 (상고인)

【판시사항】

[1] 소송당사자의 확정 방법

[2] 항소심에서 원고의 표시를 개인에서 시민단체로 정정한 당사자표시정정신청이 임의적 당사자변경신청에 해당하여 허용될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소송당사자가 누구인가는 소장에 기재된 표시 및 청구의 내용과 원인 사실 등 소장의 전취지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 확정하여야 한다.

[2] 정보공개거부처분을 받은 개인이 자신의 명의로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가 항소심에서 원고의 표시를 개인에서 시민단체로 정정하면서 그 단체의 대표자로 자신의 이름을 기재한 당사자표시정정신청이 임의적 당사자변경신청에 해당하여 허용될 수 없다고 한 사례.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피고들의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

1.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이수원과 안영길은 2000. 6. 29. 피고들에게 정보공개청구를 하면서 청구서의 청구인 표시란에 '이수원 외 1명, 울산참여자치연대'라고 기재하고, 주민등록란에 이수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는 한편, 사업자(법인·단체)등록번호표시란을 공란으로 남겨두고, 청구인 서명 부분에서 청구인을 '이수원, 안영길'로 표시하였다(갑 제1호증의 1 내지 5).

나. 이수원은 2000. 10. 10. 제1심법원에 제출한 소장에서 원고를 '이수원'으로 기재하고, 청구이유에서 '원고는 예산감시 운동을 벌이고 있는 시민단체에서 활동하고 있는 회원으로서'라고 자신을 소개하였으며, 소장 말미에 '

원고 이수원'이라고 기재하고 그의 인장을 날인하였는데, 소장 어디에도 단체인 울산참여자치연대가 소를 제기한 것이라고 볼 만한 기재를 찾아볼 수 없다.

다. 제1심은 2001. 5. 23. 이 사건 항고소송의 원고를 이수원으로 보고 이수원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하였다.

라. 피고들의 항소로 항소심 계속중이던 2002. 4. 17. 울산참여자치연대의 소송대리인인 법무법인 부산은 원고 이수원을 원고 울산참여자치연대 대표 이수원으로 정정하는 취지의 당사자표시정정신청서를 원심법원에 제출하였다.

2. 원심은, 울산참여자치연대의 당사자표시정정신청에 대하여

이수원이 법인격 없는 단체인 울산참여자치연대의 대표로서 대외적 행위자였던 점 등 양자 간의 관계와 울산참여자치연대의 법적 성격, 이 사건 정보공개청구와 이에 대한 피고들의 처분 및 이 사건 제소과정에서 이수원과 울산참여자치연대의 인적사항 기재시 양자의 이름과 자격, 연락처 등을 병기하여 뚜렷한 구분 없이 혼용하는 등으로 보인 당사자 쌍방의 관념과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자신의 표시를 그 대표자인 '이수원'에서 '울산참여자치연대'로 정정한 것은 당사자의 동일성을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한 적법한 당사자표시정정이라고 판단하여 울산참여자치연대를 원고로 보고 재판하였다.

3. 그러나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수긍할 수 없다.

소장에 표시된 원고에게 당사자능력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소장의 전취지를 합리적으로 해석한 결과 인정되는 올바른 당사자능력자로 그 표시를 정정하는 것이 허용되지만, 그러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가 누구인가는 소장에 기재된 표시 및 청구의 내용과 원인 사실 등 소장의 전취지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 확정하여야 할 것인바(대법원 1996. 12. 20. 선고 95다26773 판결, 2001. 11. 13. 선고 99두2017 판결 등 참조), 위에서 본 소

장에 기재된 표시 및 청구의 내용과 원인 사실 등 소장의 전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원고는 이수원 개인이지 단체인 울산참여자치연대가 아님이 명백하다(이수원이 피고들에게 제출한 정보공개청구서의 기재를 보면 청구인이 이수원과 안영길 개인인지 아니면 울산참여자치연대인지 불분명하지만, 이에 대한 거부처분에 관하여 이수원 개인이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점에 비추어 보면 정보공개청구인도 이수원과 안영길 개인이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그렇다면 울산참여자치연대의 당사자표시정정신청은 항소심에서 원고를 변경하는 임의적 당사자변경신청에 해당하여 허용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울산참여자치연대를 원고로 취급하여 변론을 진행하고 판결을 선고하였으므로 이러한 원심의 조치에는 소송당사자 아닌 자를 소송당사자로 보고 소송을 진행하여 판결을 한 위법이 있고, 원고 이수원과 피고들 사이의 항소심 사건은 아직 항소심 판결이 선고되지 않은 채 원심에 계속중이라고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피고들의 상고이유는 정당하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상고비용은 패소한 원고 울산참여자치연대가 부담하는 것으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바. 업무추진비 세부항목별집행내역 및 그 증빙서류

대법원 2003. 3.11.선고 2001두6425 판결【행정정보비공개결정처분취소】
원 고 : ○○○(피상고인)
피 고 : 칠곡군수(상고인)

【판시사항】

[1] 정보공개거부처분을 받은 청구인이 그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적극)

[2]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6호 단서 (다)목 소정의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3]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추진비 세부항목별 집행내역 및 그에 관한 증빙서류에 포함된 개인에 관한 정보는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4]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는 부분과 공개가 가능한 부분이 구별되고 이를 분리할 수 있는 경우, 법원의 판결주문기재 방법

【판결요지】

[1] 국민의 정보공개청구권은 법률상 보호되는 구체적인 권리이므로, 공공기관에 대하여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였다가 공개거부처분을 받은 청구인은 행정소송을 통하여 그 공개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다.

[2]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6호 단서 (다)목 소정의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비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인의 사생활 보호 등의 이익과 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 등의 공익을 비교·교량하여 구체적 사안에 따라 신중히 판단하여야 한다.

[3]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추진비 세부항목별 집행내역 및 그에 관한 증빙서류에 포함된 개인에 관한 정보는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4] 법원이 행정청의 정보공개거부처분의 위법 여부를 심리한 결과 공개를 거부한 정보에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는 부분과 공개가 가능한 부분이 혼합되어 있고 공개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두 부

분을 분리할 수 있음을 인정할 수 있을 때에는, 위 정보 중 공개가 가능한 부분을 특정하고 판결의 주문에 행정청의 위 거부처분 중 공개가 가능한 정보에 관한 부분만을 취소한다고 표시하여야 한다.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할 법률상의 이익 등에 관하여

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의 목적, 규정 내용 및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국민의 정보공개청구권은 법률상 보호되는 구체적인 권리라 할 것이므로, 공공기관에 대하여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였다가 공개거부처분을 받은 청구인은 행정소송을 통하여 그 공개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다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정보공개청구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법률상 이익이나 당사자적격 등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또한,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1995. 7. 1.부터 1999. 3. 31.까지의 업무추진비 세부항목별 집행내역 및 그에 관한 증빙서류(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의 공개를 청구한 것이 권리의 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원심의 판단도 정당하고, 거기에 권리의 남용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도 없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2. 이 사건 정보공개거부처분의 위법 여부 등에 관하여

가. 원심은,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였으나 피고가 이 사건 정보에는 개인 등 특정인에 관한 정보가 많다는 이유로 그 공개를 거부하는 내용의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정보는 헌법 및 법 제7조 제1항 제6호 (다)목에 의하여 보장된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예산집행의 합법성·효율성 확보라는 공익을 실현하고 국민들의 행정에 대한 관심과 참여정신을 고양하여 지방자치제도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한편 업무추진비가 사적인 용도에 집행되거나 낭비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국민들의 의혹을 해소하고 행정절차의 투명성을 제고한다는 측면에서도 이를 일반 국민에게 공개할 필요성이 크다고 할 것이고, 이 사건 정보에 개인에 관한 정보가 일부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경우에는 그 해당자들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사항을 삭제하고 그 해당자들에 대한 업무추진비 집행명세만을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교부하는 등 제한공개방식에 의한 공개가 가능하다 할 것이므로 피고가 주장하는 개인에 대한 정보보호라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거부할 근거가 될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 전부를 취소하였다.

나. 우선,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살펴보면, 개인에 관한 정보를 포함한 이 사건 정보를 전부 공개함이 타당하다는 취지인지, 아니면 이 사건 정보 중 개인에 관한 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만을 공개함이 타당하다는 취지인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다(즉, 원심이 법 제7조 제1항 제6호 (다)목에 의하여 보장된 예산집행의 합법성·효율성 확보라는 공익을 실현하기 위하여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할 필요성이 크다고 설시한 점 및 주문에서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 전부를 취소한다고 표시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판단은 개인에 관한 정보를 포함한 이 사건 정보를 전부 공개함이 타당하다는 취지로 이해되지만, 다른 한편 원심이 이 사건 정보 중 개인에 관한 정보와 나머지 부분을 분리하여 개인

에 관한 정보를 제외하고 공개가 가능하다고 설시한 점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판단이 이 사건 정보 중 개인에 관한 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만의 정보를 공개함이 타당하다는 취지로 이해된다).

(1) 먼저, 원심의 판단을 이 사건 정보에 포함된 개인에 관한 정보는 법 제7조 제1항 제6호 단서 (다)목 소정의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하므로 개인에 관한 정보를 포함한 이 사건 정보를 전부 공개함이 타당하다는 취지로 이해하면,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즉, 법 제7조 제1항 제6호는 비공개대상정보의 하나로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하여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를 규정하면서, 같은 호 단서 (다)목으로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제외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비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인의 사생활 보호 등의 이익과 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 등의 공익을 비교·교량하여 구체적 사안에 따라 신중히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이 사건 정보 중 개인에 관한 정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개인의 사생활 보호라는 관점에서 보더라도 위와 같은 정보가 공개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위 정보의 비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이익보다 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이익이 우월하다고 단정할 수도 없으므로, 이는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러므로 결국, 원심이 개인에 관한 정보를 포함한 이 사건 정보를 전부 공개함이 타당하다는 취지로 판단한 것이라면, 이는 법 제7조 제1항 제6호 소정의 비공개대상정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이다.

(2) 또한, 원심의 판단을 이 사건 정보 중 개인에 관한 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만의 정보를 공개함이 타당하다는 취지로 이해한다 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다.

즉, 판결의 주문은 그 자체에 의하여 그 내용을 특정할 수 있어야 하고 (대법원 1987. 3. 24. 선고 85누817 판결 등 참조), 한편, 법 제12조는 공개청구한 정보가 법 제7조 제1항 각 호 소정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는 부분과 공개가 가능한 부분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개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두 부분을 분리할 수 있는 때에는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법원이 행정청의 정보공개거부처분의 위법 여부를 심리한 결과 공개를 거부한 정보에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는 부분과 공개가 가능한 부분이 혼합되어 있고 공개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두 부분을 분리할 수 있음을 인정할 수 있을 때에는, 위 정보 중 공개가 가능한 부분을 특정하고 판결의 주문에 행정청의 위 거부처분 중 공개가 가능한 정보에 관한 부분만을 취소한다고 표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그 판결 이유에서 이 사건 정보 중 개인에 관한 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만의 정보를 공개함이 타당하다는 취지로 판단하면서도 주문에서는 피고의 이 사건 처분 전부를 취소하고 있으니, 이는 이 사건 정보 중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는 부분과 공개가 가능한 부분이 구별되고 이를 분리할 수 있는지 여부 등에 관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였거나, 판결주문기재 방법 또는 법 제12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이다.

다. 이러한 점들을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 론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 정보공개심의회구성관련 조례안 의결 무효확인

대법원 2002. 3. 15. 선고 2001추95 판결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원 고 : 순천시장
피 고 : 순천시의회

【판시사항】

[1] 공개 청구된 정보의 공개 여부를 결정하는 법적인 의무와 권한을 가진 주체(=공공기관의 장)와 정보공개심의회의 지위 및 구성

[2] 공공기관이 장이 정보공개심의회 위원의 과반수 이상을 반드시 외부인사로 위촉하여야 하고 부위원장을 시민복지국장으로 한다고 규정한 조례안은 지방의회가 단순한 견제의 범위를 넘어 집행기관의 장의 인사권의 본질적 부분을 사전에 적극적으로 침해한 것으로 관련 법령의 규정 취지에 위배된다고 한 사례

【주문】

1. 피고가 2001. 11. 20.에 한 순천시 행정정보공개조례안에 대한 재의결은 그 효력이 없다.
2. 소송비용을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판결요지】

[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0조, 같은법시행령 제12조 등 관련 규정들의 취지를 종합할 때, 공개 청구된 정보의 공개 여부를 결정하는 법적인 의무와 권한을 가진 주체는 공공기관의 장이고, 정보공개심의회는 공공기관의 장이 정보의 공개 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하다고 보아 의견을 요청한 사항의 자문에 응하여 심의하는 것이며, 그의

구성을 위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소속 공무원 또는 임·직원 중에서 정보공개심의회의 위원을 지명하는 것이 원칙이나,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공무원이나 임·직원이었던 자 또는 외부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되, 그 필요성 여부나 외부전문가의 수 등에 관한 판단과 결정은 공공기관의 장이 그의 권한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이 같은법시행령 규정의 취지이다.

[2] 공공기관이 장이 정보공개심의회 위원의 과반수 이상을 반드시 외부인사로 위촉하여야 하고 부위원장을 시민복지국장으로 한다고 규정한 조례안은 지방의회가 단순한 견제의 범위를 넘어 집행기관의 장의 인사권의 본질적 부분을 사전에 적극적으로 침해한 것으로 관련 법령의 규정 취지에 위배된다고 한 사례.

【이 유】

1. 이 사건 조례안에 대한 재의결과 그 요지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니, 피고가 2001. 10. 11. 제7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순천시 행정정보공개조례안(아래에서는 '이 사건 조례안'이라고 한다)을 의결하여 원고에게 이송하였다가, 2001. 10. 29. 원고로부터 그 중 제11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이 법령에 위반됨을 이유로 한 재의 요구를 받았음에도, 같은 해 11. 20. 제72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당초의 의결과 같이 재의결을 한 사실, 이 사건 조례안 제11조 제1항은 행정정보공개심의위원회(아래에서는 '심의회'라고 한다)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한 7인 이내로 하고, 집행기관의 장이 그 과반수를 행정정보공개에 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인사로 위촉한 자로 구성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은 심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두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시민복지국장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들이 인정된다.

2. 이 사건 조례안 제11조 제1항, 제2항의 법령 위배 여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아래에서는 '법'이라고 한다) 제9조 제1항, 제10조 제1항, 제2항은, 공공기관은 정보공개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청구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고, 청구된 정보공개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정보공개심의회를 설치·운영하며, 정보공개심의회(아래에서는 '심의회'라고 한다)의 구성·운영 및 기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등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그에 따른 법시행령(아래에서는 '영'이라고 한다) 제12조는 공공기관은 기관의 업무성격이나 업무량 등을 고려하여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심의회를 1개 이상 당해 기관 또는 소속기관에 설치·운영하여야 하고, 다만 당해 기관에 심의회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위원회 등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위원회 등으로 하여금 심의회의 기능을 수행하게 할 수 있으며(제1항), 심의회는 공공기관의 장이 공개 청구된 정보의 공개 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 정보공개 여부 결정 등에 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고(제2항), 심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 및 위원은 공공기관의 장이 소속 공무원 또는 임·직원 중에서 지명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공무원이나 임·직원이었던 자 또는 외부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다(제3, 4항)고 규정하면서 심의회의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다만 공무원이나 임·직원이었던 자 또는 외부전문가인 경우는 2년으로 하며(제5항), 심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가 설치된 공공기관의 장이 정한다(제7항)고 규정하고 있다.

법령의 위와 같은 관련 규정들의 취지를 종합할 때, 공개 청구된 정보의 공개 여부를 결정하는 법적인 의무와 권한을 가진 주체는 공공기관의 장이고, 심의회는 공공기관의 장이 정보의 공개 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하다고 보아 의견을 요청한 사항의 자문에 응하여 심의하는 것이며, 그의 구성을 위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소속 공무원 또는 임·직원 중에서 심의회의 위원

을 지명하는 것이 원칙이나,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공무원이나 임·직원이었던 자 또는 외부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되, 그 필요성 여부나 외부전문가의 수 등에 관한 판단과 결정은 공공기관의 장이 그의 권한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이 그 시행령 규정의 취지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조례안 제11조 제1항은 위와 같이 공공기관이 장이 심의회 위원 7인 중 과반수 이상을 반드시 외부인사로 위촉하여야 하는 의무규정을 둔 것이고, 제2항은 제1항의 규정 즉 외부인사가 위원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것을 전제로 한 것으로 부위원장을 시민복지국장으로 하고 위원장은 외부 인사로 하기로 한 것이어서 제1항의 규정이 유효함을 전제로 둔 규정일 뿐만 아니라 집행기관의 장이 원천적으로 시민복지국장을 부위원장으로 지명하여야 되며 위원장이나 일반위원으로 지명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 것인바, 따라서 이는 지방의회가 단순한 견제의 범위를 넘어 집행기관의 장의 인사권의 본질적 부분을 사전에 적극적으로 침해한 것으로 관련 법령의 규정 취지에 위배된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이 사건 조례안 제18조에서 심의회 위원에게 회의과정 및 직무수행상 취득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되고, 그 직책에서 물러난 후에도 같은 비밀 준수의무를 두고 있다고 하여 그 결론이 달라질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조례안 제11조 제1항, 제2항의 규정이 관련 법령의 규정에 위반되기에 이 사건 조례안에 대한 재의결은 전부 효력을 가질 수 없게 되므로 그를 소구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받아들여져야 할 것이다.

3. 결 론

그러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을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대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에 쓴 바와 같이 판결한다.

아. 보안관찰 관련 통계자료 공개청구

대법원 2004.3.18.선고 2001두8254 전원합의체 판결【정보 비공개결정 처분취소】
원 고 : ○○○(피상고인)
피 고 : 법무부장관(상고인)

【판시사항】

보안관찰법 소정의 보안관찰 관련 통계자료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2호, 제3호 소정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다수의견] 보안관찰처분을 규정한 보안관찰법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도 이미 그 합헌성을 인정한 바 있고, 보안관찰법 소정의 보안관찰 관련 통계자료는 우리나라 53개 지방검찰청 및 지청관할지역에서 매월 보고된 보안관찰처분에 관한 각종 자료로서, 보안관찰처분대상자 또는 피보안관찰자들의 매월별 규모, 그 처분시기, 지역별 분포에 대한 전국적 현황과 추이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광범위한 자료에 해당하므로 '통계자료'라고 하여도 그 함의(含意)를 통하여 나타내는 의미가 있음이 분명하여 가치중립적일 수는 없고, 그 통계자료의 분석에 의하여 대남공작활동이 유리한 지역으로 보안관찰처분대상자가 많은 지역을 선택하는 등으로 위 정보가 북한정보기관에 의한 간첩의 파견, 포섭, 선전선동을 위한 교두보의 확보 등 북한의 대남전략에 있어 매우 유용한 자료로 악용될 우려가 없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정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공개될 경우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또는 제3호 소정의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 기타 공공의 안전과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한다.

[반대의견] 보안관찰법 소정의 보안관찰 관련 통계자료 자체로는 보안관찰처분대상자나 피보안관찰자의 신상명세나 주거지, 처벌범죄, 보안관찰법의 위반내용 등 구체적 사항을 파악하기 어려운 자료이므로, 위 정보를 악용하려 한다고 하더라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으며, 국민의 기본권인 알권리를 제한할 정도에 이르지 못하고, 간첩죄·국가보안법위반죄 등 보안관찰 해당범죄에 관한 사법통계자료를 공개하는 뜻은 사법제도의 경우 그것이 공정·투명하게 운영되고 공개될수록 그 제도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쌓이고, 국민의 인권 신장에 기여한다는 데 있는 것이고, 보안관찰법은 남·북한이 대치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우리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유지·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도로서 합헌성이 확인된 제도이므로, 북한이나 그 동조세력이 위 정보를 토대로 국내의 인권상황을 악의적으로 선전하면서 보안관찰법의 폐지를 주장한다 하더라도 보안관찰법에 의한 보안관찰제도가 헌법상 제 기본권 규정에 위반하지 않는 한, 보안관찰법의 집행 자체를 인권탄압으로 볼 수는 없으며, 오히려 위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음으로써 불필요한 오해와 소모적 논쟁, 이로 인한 사회불안의 야기와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의 저하 등의 문제가 발생할 소지를 배제할 수 없는 이상, 위 정보의 투명한 공개를 통한 보안관찰제도의 민주적 통제야말로 법집행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공공의 안전과 이익에 도움이 되고, 인권국가로서의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을 제고하는 측면도 있음을 가벼이 여겨서는 안 될 것이라는 등의 이유로, 위 정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2호 또는 제3호 소정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정보인 보안관찰 관련 통계자료는

그 자체로서는 가치중립적이고 보안관찰처분대상자나 피보안관찰자의 신상명세나 주거지, 처벌범죄, 보안관찰법의 위반내용 등 구체적 사항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로 활용되기 어려우므로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거나 국민의 생명·신체 등 공공의 안전과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요지로 판단하였다.

2. 그러나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할 수 없다.

보안관찰처분은 국가안위에 중대한 위해를 초래할 수 있는 간첩죄 등으로 처벌받은 자에 대하여 재범의 위험성을 예방하고 건전한 사회복귀를 촉진하기 위하여 일정한 신고의무를 부과하는 등으로 그 동향파악을 함으로써 국가의 안전과 사회의 안녕을 유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인바(보안관찰법 제1조 내지 제4조), 남북이 아직까지 정전(停戰)상태에서 휴전선을 경계로 군사적으로 첨예하게 대치하고 있는데다가 북한이 우리나라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하고자 하는 그들의 통일노선을 완전히 포기하였다는 명백한 징후를 보이지 않고 있는 현상황에서는, 정보의 수집 및 동조자의 규합 등을 위한 북한정보기관의 간첩 활동에 대한 대응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므로, 보안관찰처분을 규정한 보안관찰법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도 이미 그 합헌성을 인정한 바 있다(헌법재판소 1997. 11. 27. 선고 92헌바28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한편, 이 사건 정보인 보안관찰 관련 통계자료는 우리나라 53개 지방검찰청 및 지청관할지역에서 매월 보고된 보안관찰처분에 관한 각종 자료로서, 보안관찰처분대상자 또는 피보안관찰자들의 매월별 규모, 그 처분시기, 지역별 분포에 대한 전국적 현황과 추이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광범위한 자료에 해당하므로 '통계자료'라고 하여도 그 함의(含意)를 통하여 나타내는 의미가 있음이 분명하여 가치중립적일 수는 없고, 그 통계자료의 분석에 의하여 대남공작활동이 유리한 지역으로 보안관찰처분대상자가 많은 지역을 선택하는 등으로 이 사건 정보가 북한정보기관에 의한 간첩의 파견, 포섭, 선전선동을 위한 교두보의 확보 등 북한의 대남전략에

있어 매우 유용한 자료로 악용될 우려가 없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이 사건 정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공개될 경우 국가안전보장 · 국방 · 통일 · 외교관계 등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또는 제3호 소정의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 · 신체 및 재산의 보호 기타 공공의 안전과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견해를 달리하여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한 피고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원심의 조치에는 법 제7조 제1항 제2호, 제3호 소정의 비공개대상정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3.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들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 · 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하는바, 이에 대하여는 대법관 000, 대법관 000, 대법관 000의 반대의견이 있는 외에는 관여 대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었다.

4. 대법관 000, 대법관 000, 대법관 000의 반대의견은 다음과 같다.

가. 이 사건 정보인 보안관찰 관련 통계자료가 법 제7조 제1항 제2호 또는 제3호 소정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는 다수의견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할 수 없다.

나. 원고가 공개를 청구하는 이 사건 정보는 보안관찰법의 제정 이래 그 운영과 관련한 통계자료 중 피고가 보안관찰대상자 또는 피보안관찰자의 주거지 관할 지방검찰청 및 지청으로부터 매월 보고 받은 자료들로서, ① '보안관찰처분대상자 현황'은 보안관찰법 제3조 소정의 보안관찰처분대상자 중에서 보안관찰처분을 받은 자, 보안관찰처분의 청구가 기각된 자, 보안관찰처분면제결정청구 또는 면제신청에 대하여 면제결정을 받거나 면제결정청구 또는 면제신청이 기각된 자를 처리자로, 관리대상자 중에서 처리자를 제외한 자를 미처리자로, 보안관찰법 제6조 제1항에 규정된 신

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를 미신고자로 하여 그 숫자를 기재한 것이고, ② '보안관찰처분 사안처리 현황'은 보안관찰처분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피고가 결정한 내용을 보안관찰처분 및 청구기각, 기간갱신청구(갱신/기각) 및 불청구(승인/불승인), 면제청구(면제/기각) 및 면제신청(면제/기각)으로 구분하여 각 처분 유형별 숫자를 기재한 것이며, ③ '보안관찰법위반사건 처리현황'은 보안관찰법위반으로 입건된 인원을 구속, 불구속으로 구분하고, 처리된 인원을 기소, 불기소 및 이송으로 구분하며, 그 나머지를 수사중인 인원으로 구분하여 각 유형별 숫자를 기재한 것으로, 보안관찰법의 운영사항 중 일부를 그 처리현황별로 구분하여 해당사항을 통계자료로 정리한 것에 불과하다.

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이 사건 정보는 그 성격상 공개되더라도 국익이나 공익을 중대하게 또는 현저하게 해하지는 않는다고 본다.

첫째, 이 사건 정보 자체로는 원심판결에서도 지적하는 바와 같이 보안관찰처분대상자나 피보안관찰자의 신상명세나 주거지, 처벌범죄, 보안관찰법의 위반내용 등 구체적 사항을 파악하기 어려운 자료이다.

그러므로 다수의견이 우려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정보를 악용하려 한다고 하더라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으며, 국민의 기본권인 알권리를 제한할 정도에 이르지 못한다고 판단하는 것이다.

둘째, 이 사건 정보는 그 본질상 간첩죄·국가보안법위반죄 등 보안관찰 해당범죄에 관한 사법통계자료인데, 보안관찰 해당범죄의 지역별·죄명별 통계는 이미 사법연감·검찰연감 등을 통하여 공개되고 있다.

다수의견이 지적하는 우려는 이미 사법연감·검찰연감 등을 통하여 공개되고 있는 보안관찰 해당범죄에 관한 통계자료에도 그대로 해당될 수 있는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법통계를 공개하는 뜻은 사법제도의 경우 그것이 공정·투명하게 운영되고 공개될수록 그 제도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쌓이고, 국민의 인권 신장에 기여한다는 데 있는 것이고, 그러한 취지는 이 사건 정보의 공개에 있어서도 타당하다고 보는 것이다.

셋째, 다수의견은 이 사건 정보가 공개될 경우 그 악용의 경우만을 염려하여 통상 통계자료의 성격으로 파악되는 가치중립성마저도 부정하고 있으나, 이는 이 사건 정보의 공개가 가지는 다른 측면을 간과하고 있다고 여겨진다.

보안관찰법은 남·북한이 대치하고 있는 현상황에서 우리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유지·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도로서 합헌성이 확인된 제도이다.

그러므로 원심이 적절히 지적하는 바와 같이 북한이나 그 동조세력이 이 사건 정보를 토대로 국내의 인권상황을 악의적으로 선전하면서 보안관찰법의 폐지를 주장한다 하더라도 보안관찰법에 의한 보안관찰제도가 헌법상 제 기본권 규정에 위반하지 않는 한, 보안관찰법의 집행 자체를 인권탄압으로 볼 수는 없으며, 오히려 이 사건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음으로써 불필요한 오해와 소모적 논쟁, 이로 인한 사회불안의 야기와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의 저하 등의 문제가 발생할 소지를 배제할 수 없는 이상, 이 사건 정보의 투명한 공개를 통한 보안관찰제도의 민주적 통제야말로 법집행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공공의 안전과 이익에 도움이 되고, 인권국가로서의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을 제고하는 측면도 있음을 가벼이 여겨서는 안 될 것이다.

라. 남·북이 대치하고 있는 특수한 상황에 처한 우리로서는 공개되는 정보가 우리의 국가안전보장이나 공공의 안전과 이익을 위협하는 데 이용되지 않도록 면밀히 검토하여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지나친 우려 때문에 기본인권의 보장에 소홀함이 없도록 경계하는 세심한 배려도 함께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위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정보가 법 제7조 제1항 제2호 또는 제3호 소정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고 하는 다수의견에 반대하는 것이다.

2 고법 · 행정법원 판례

가. 국가안전기획부의 자료청구

서울고법 1997. 11. 20. 선고 97구13797 판결 【부작위위법확인】 : 확정

【판시사항】

[1] 국가기관이 보유하는 문서에 대한 국민의 열람·복사청구권 유무(적극) 및 변호사단체도 국가안전기획부장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지는지 여부(적극)

[2] 국가기밀의 의미 및 국가안전기획부의 예산집행에 관한 정보가 국가기밀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일반적으로 모든 국민(자연인 및 법인 포함)은 국가기관에 대하여 기밀에 관한 사항 등 특별한 경우 이외에는 국가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문서의 열람 및 복사를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어서,헌법 제21조,제37조 제2항등의 규정과 '알 권리'의 내용 및 변호사단체의 목적, 구성 및 활동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변호사단체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도 국가안전기획부장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갖고 있다 할 것이고 따라서 정보의 공개를 거부한 위 국가안전기획부장의 처분에 대하여 취소를 구할 법률상 정당한 이익이 있다.

[2] 국가기밀이라 함은 법령에 의하여 비밀로 분류되고 객관적·일반적인 입장에서 외부에 알려지지 않는 것에 상당한 이익이 있는 사항으로서 실질적으로도 보호할 가치 있는 비밀이라 할 것인바, 예산집행에 관한 정보에 관하여 보건대 국가안전기획부법에 의하면 안전기획부의 예산심의는

국회에서마저도 비공개로 심의할 수 있고 국회정보위원회의 위원은 안전기획부의 예산내역을 공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되므로 변호사단체가 국가안전기획부장을 상대로 비디오테이프 및 슬라이드의 제작 등에 소요된 예산집행에 관한 정보에 대하여 공개를 구하는 것은 국가안전기획부법의 규정 취지에 위배되므로 허용할 수 없다.

나. 세무조사 결과 자료청구

서울고법 1995.8.24.선고 94구39262판결【정보공개청구거부처분취소】: 확정

【판시사항】

[1] 일반 국민이 행정기관의 정보공개청구 거부처분에 대하여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여부(적극)

[2] 세무관청이 세무조사 자료에 대한 일반국민의 정보공개청구를 거부한 처분이, 국민의 알 권리보다 사생활의 비밀 보호를 우선시켜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적법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일반적으로 국민은 국가기관에 대하여 기밀에 관한 사항 등 특별한 경우 이외에는 국가기관이 보관하고 있는 문서의 열람 및 복사를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어서,사무관리규정(1991. 6. 19. 대통령령 제13390호) 제33조 제2항도 행정기관으로 하여금 일반 국민의 문서 열람 및 복사 신청에 대하여 기밀 등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행정정보 공개에 관한 국무총리훈령도 행정정보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여 일반 국민으로 하여금 행정정보의 공개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면서 특별한 경우에 한하여 공개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일반 국민은 문서의 보관자인 행정기관을 상대로 그 행정기관이 보관하고 있는 세무조사 자료의 공개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

[2]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불가침은 사생활의 내용을 공개당하지 아니할 권리, 자신에 관한 정보를 스스로 관리·통제할 수 있는 권리 등을 내용으로 하는 인격권으로서 오늘날 정보화사회가 급속히 진행되면서 그 보호가 절실한 권리이고, 국민의 알 권리 또한 국민의 기본권에 속하나 공공기관의 정보에 대한 공개청구권을 의미하는 한 청구권적·간접적 성격을 가진다고 보여지는 점에서, 위 두 개의 기본권이 경합하여 충돌하는 경우에 구체적 상황을 고려하여 그 보호법익을 형량하되 충돌하는 기본권 모두의 본질적 내용을 훼손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그 효력을 최적정화할 수 있도록 기본권들을 조화시키는 방법으로 제한 가능성이 보다 작은 기본권을 우선시킴이 원칙이라고 할 것인데, 일반적으로 기본권의 보호법익은 생명권, 인격권이 가장 우선한다고 보여지는 점에서 알 권리 보다는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가 더욱 보호해야 할 우선적인 가치라고 할 것이므로 그 범위 내에서는 국민의 알 권리도 제한을 받지 아니할 수 없다고 할 것인바, 피고의 세무조사 결과는 인격, 신분, 재산, 경력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법인이나 사업자 등의 영업 또는 과학 기술이나 금융에 관한 정보로 공개함으로써 사업 운영상 지장을 초래하는 정보, 비공개를 전제로 제3자로부터 취득한 정보, 기타 공개할 경우 특정인에게 이익·불이익을 주는 정보 또는 행정의 공정 원활한 집행이나 공공의 이익을 현저히 해한다고 판단되는 정보 등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어 원고의 알 권리보다 우선하는 개인 또는 법인의 사생활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나아가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킴으로 인한 공공의 이익만으로는 사생활의 비밀로서의 조세비밀을 침해할 명백하고 우월한 공익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의 세무조사 결과가 공개되는 것은 국민의 알 권리 충족이라는 이익보다 사생활의 비밀침해라는 인격권을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점에서 불가능하다고 보지 아니할 수 없으니, 피고가 지침에 의하여 세무조사 결과의 공개가 납세자 본인은 물론 기업경영의 기밀이 유출되어 납세자의 경영활

동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조사과정에서 당국을 믿고 조사에 협조한 납세자와의 신뢰관계가 무너지게 되어 원활한 세정운영에 저해를 받을 염려가 있다는 이유로 한 거부처분은 적법하다.

다.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자료청구 등

서울행법 1999. 2. 25. 선고 98구3692 판결【정보 비공개처분취소】: 확정

【판시사항】

[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처분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기 위하여 필요적으로 전심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여부(소극)

[2]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4호소정의 '진행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의 의미

[3] 공개를 청구한 정보의 내용이 진행중인 재판의 심리나 결과에 영향을 미칠 구체적인 위험성이 없다는 이유로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4호소정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4]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6호의 규정 취지

[5] 공개를 청구한 정보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6호소정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는 부분과 공개 가능 부분이 혼합되어 있다고 보아 그 전부의 공개를 거부한 처분이 위법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은 "취소소송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에도 이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취소소송에 대한 전심절차는 원칙적으로 임의적이고 다만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필요적인 것이라고 할 것인바,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은 제16조,제17조에서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고 할 뿐 위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을 제기하지 아니하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처분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기 위하여 필요적으로 전심절차를 거쳐야 할 필요는 없다.

[2]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목적으로 하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공공기관이 보유하는 정보는 이를 공개하는 것이 원칙이고 다만 법에서 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비공개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나아가 법에서 정하는 비공개사유의 해석도 법이 특정 정보를 비공개사유로 규정하는 취지에 따라 제한적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므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4호에서 비공개대상으로 규정한 '진행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는 당해 정보가 공개될 경우 진행 중인 재판의 심리 또는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칠 구체적인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한정하여 해석하여야 하고, 이를 진행 중인 재판의 내용과 관련된 모든 정보로 확대해석하여서는 아니된다.

[3] 공개를 청구한 정보의 내용이 진행 중인 재판의 심리나 결과에 영향을 미칠 구체적인 위험성이 없다는 이유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4호소정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

[4]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6호는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하여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를 비공개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이와 같이 개인에 관한 정보가 포함된 정보의 공개를 금지하는 취지는 개인의 사생활을 보호하는 한편 개인의 자신에 대한 정보통제권을 보장하는 등 정보공개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제3자의 법익침해를 방지하고자 하는 데 있다고 할 것이다.

[5] 공개를 청구한 정보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6호소정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는 부분과 공개 가능 부분이 혼합되어 있다고 보아 그 전부의 공개를 거부한 처분이 위법하다.

라. 업무추진비 공개청구

서울고법 2002.8.27. 선고 2001누17274 판결【업무추진비 비공개처분취소】: 상고

【판시사항】

[1]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추진비에 대한 집행증빙인 정보 중 지출 대상자 또는 참석자의 이름을 포함한 정보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6호 단서 (다)목 소정의 비공개대상정보의 예외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그 중 개인의 주민등록번호나 은행계좌번호에 관한 정보는 같은 법 제7조 제1항 제6호 소정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추진비에 대한 집행증빙인 정보 중 법인 등의 은행계좌번호에 관한 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정보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7호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그 지출 용도가 공적인 목적에 제

한되어 있고, 지출 성격이 기밀성을 띤 것이라 볼 수 없으며, 따라서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집행의 합법성과 효율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초자료들이 포함되어 있는 업무추진비에 대한 집행증빙인 정보는 헌법 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6호 단서 (다)목에 의하여 보장된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예산집행의 합법성·효율성 확보라는 공익을 실현하고 국민들의 행정에 대한 관심과 참여정신을 고양하여 지방자치제도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한편, 예산이 사적인 용도에 집행되거나 낭비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국민들의 의혹을 해소하고 행정절차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한다는 측면에서도 이를 일반 국민들에게 공개할 필요가 큰 것인데, 그 중 지출 대상자 또는 참석자의 이름을 포함한 기관운영업무추진비에 대한 집행증빙인 정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6호 단서 (다)목에 규정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나, 다만, 주민등록번호나 은행 등 금융기관의 계좌번호는 개인의 이름과 결합되어 전자거래 등에 있어 동일인 판단 등에 관한 기본자료로 사용되어 아무런 제한 없이 공개될 경우, 이를 부정사용하면 당해 개인의 사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있어서의 재산·신용에 대한 심각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업무추진비에 대한 집행증빙인 정보중 개인의 주민등록번호 및 은행계좌번호에 관한 정보는 같은 법 제7조 제1항 제6호에서 정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

[2] 특정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 등'이라고 한다)에 관한 정보는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비공개정보로 하고 있는바, 법인 등의 은행계좌번호에 관한 정보가 법인 등의 이름과 결합하여 공개될 경우, 악용되면 당해 법인 등의 영업상의 지위가 위협받을 우려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집행의 합법성과 효율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초자료들이 포함되어 있는 업무

추진비에 대한 집행증빙인 정보 중 법인 등의 은행계좌번호에 관한 정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7호에서 정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나, 그 외의 정보는 법인 등의 영업상 유·무형의 비밀이나 노하우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어 이를 공개할 경우 그 법인 등의 영업상의 지위가 위협받는다거나 그 법인 등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저하되는 등 기존의 정당한 이익이 현저히 침해받는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근거가 없으므로 같은 법 제7조 제1항 제7호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Ⅴ. 정보공개 관련 질의·응답 모음

목 차

Q1. 정보공개심의회를 반드시 설치하여야 하는 지
Q2. 전(全) 직원에 대한 시간외근무수당 지급내역도 공개 가능한 지
Q3. 건축허가시 제출된 서류도 공개할 수 있는 지
Q4. 수산업협동조합도 공공기관에 해당되는 지
Q5. 주민등록등·초본 발급 위임장 사본 공개 가능한 지
Q6. 법인의 상호, 연락처 등도 공개할 수 있는 지
Q7. 진행중인 하천공사 관련 감정평가서 내역이 비공개대상 정보인지
Q8. 업무참고용으로 가지고 있는 정보가 공개대상인지 여부
Q9. 각종 대장 또는 편람도 사본·출력물의 형태로 공개대상인지
Q10. 지방의회 회의록의 사본 공개 여부
Q11. 유가보조금 지급내역 공개 여부
Q12. 사용목적이 공개 여부를 결정하는데 영향을 주는 지
Q13. 이의신청인 경우 처리기간 산정 방법은
Q14.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방법
Q15. 정보공개청구내용이 여러 부서 등에 해당될 경우
Q16. 정보공개와 민원신청을 구별하는 방법
Q17. 청구인의 범위와 사용목적에도 제한이 있는 지
Q18. 열람 공개할 경우 내용을 기록할 수는 없는 지
Q19. 개인별 보상내역은 어떤 경우에 공개할 수 있는 지
Q20. 부분공개의 경우 처리대장 작성 요령
Q21. 정보공개청구서 작성시 해당란에 모두 기재하여야 하는 지
Q22. 민원인 본인이 제출한 서류가 정보공개 신청시 정보공개대상이 되는 지
Q23. 처리부서를 달리하는 정보공개 청구서 처리 요령

Q24. 정보공개의 수수료 징수에 대하여
Q25. 소속기관에도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는 지
Q26. 처리한 업무담당자 이름 등도 정보공개 가능한 지
Q27. 수수료 감면대상에 대하여
Q28. 정보공개와 일반민원의 분류에 대하여
Q29. 공공기관과 개인간 체결한 매매계약서도 공개할 수 있는 지
Q30. 부존재인 정보를 이의신청하였을 경우는 어떻게 처리하여야 하는 지
Q31. 청구인의 공개방법에 반하여 공개할 때도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지
Q32. 업체에서 제출한 세금계산서도 영업상 비밀이 되는 지
Q33.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이내 반드시 결정을 하여야 하는지
Q34. 전입신고서 사본도 공개할 수 있는 지
Q35. 택지개발사업지구내 피수용자의 물건에 대한 지목, 지번, 면적, 소유자 등도 공개할 수 있는 지
Q36. 조례로 정한 수수료 금액이 법령의 범위를 초과하였을 경우
Q37. 정보공개 수수료 증지는 교부하는 결정통지서에 첨부하는지 아니면 보관하는 결정통지서에 첨부하는 지
Q38. 성과상여금 관련 자료의 공개여부
Q39. 인사기록카드도 공개할 수 있는 지
Q40. 민원서류도 공개 가능한 지
Q41. 청구량이 많다는 이유로 비공개 할 수 있는 지
Q42. 본인의 주민등록말소신청서의 사본은 공개 가능한 지
Q43. 제3자와 관련이 있는 정보이면 반드시 의견청취를 하여야 하는 지와 그 의견에 기속되는 지
Q44. 영업을 목적으로 하여 등록된 상호 및 주소는 공개 가능한 지
Q45. 청구인이 취득한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는 적합한가

Q46. 보상금 지급내역도 공개할 수 있는 지와 관련 제3자의 모두에게 의견청취를 해야 하는 지
Q47. 제3자란 누구를 지칭하는 지
Q48. 정보를 취득한 기관에서도 공개 가능한 지
Q49. 공사중인 계약업체의 계약관련 서류도 공개 가능한 지
Q50. 소관업무가 아닐 경우도 비공개하여도 무방한 지
Q51. 처리중인 민원서류도 공개 가능한 지
Q52. 제3자의 행정심판재결서를 청구하였을 때 공개 가능한 지
Q53. 취하서는 어느 부서에서 접수하여야 하는 지
Q54. 정보공개처리시 원본대조필을 반드시 찍어야 하는 지
Q55. 수수료 감면은 어떤 경우에 가능한 지
Q56. 제3자에게 의견청취하는 방법
Q57. 제3자가 다수일 경우 의견청취방법
Q58. 읍·면·동에도 정보공개운영과 정보공개심의회 설치가 가능한 지
Q59. 시유재산과 관련된 정보도 공개 가능한 지
Q60. 민원서류도 공개할 수 있는 지
Q61.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과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 법률의 차이점
Q62. 통장, 이장명단 및 연락처도 개인정보에 해당되는 지
Q63.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한 정보는 공개 가능한 지

Q1. 정보공개심의회를 반드시 설치하여야 하는 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공개심의회를 설치·운영토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당해기관에 심의회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위원회 등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위원회 등으로 하여금 심의회의 기능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기(旣) 행정조정위원회를 정보공개심의회로 갈음하여도 되는 지

《답 변》

정보공개심의회는 모든 공공기관에 설치되어 운영되어야 합니다. 정보공개법 시행령 제11조의 단서조항이 있어 행정조정위원회가 유사기능을 수행하는 위원회라면 정보공개심의회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2004. 1. 29에 법률이 개정되어 2004년 7. 30부터 개정된 법률이 시행되었으므로 향후 가능하면 정보공개심의회를 구성하시고 외부전문가도 과반수이상 위촉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아울러 정보공개심의회 구성시 심의회 규정을 제정하여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Q2. 전(全) 직원에 대한 시간외근무수당 지급내역도 공개 가능한 지

2001년부터 2003년까지 각 과별 시간외 근무수당 지급내역 사본 청구가 있어 검토한 바, 직원들의 직급과 성명, 계좌번호 등이 포함되어 있어 이런 경우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를 제외한 정보만 공개하여도 되는 것인 지 아니면 공공기관에서 작성한 정보로서 전부 공개하여야 하는 지

《답 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최대한 국민에게 공개해야 할 것입니다. 어쨌든 예산 사용(집행)내역

은 당연히 공개 가능한 정보입니다. 따라서 시간외근무수당 지급내역 등은 공개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다만, 수당을 지급 받는 자의 성명, 계좌번호 등은 개인에 관한 정보로 공개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므로 부분공개를 함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Q3. 건축허가시 제출된 서류도 공개할 수 있는 지

민원인이 건축허가를 받기 위해 제출된 건축설계도서도 공개 가능한 지

《답 변》

정보공개법상 정보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 도면, 필름 등으로 되어 있고 건축허가시 제출된 건축설계도서를 해당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다면 당해 기관이 판단하여 결정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Q4. 수산업협동조합도 공공기관에 해당되는 지

조합원들의 참고자료로 사용하고자 정보공개청구 하였으나, 결정통지가 없어 수협은 공공기관에 해당되지 않는 지

《답 변》

정보공개법상 "공공기관"이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조는 법 제2조제3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의 기관을 말한다라고 하면서 ①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 기타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각급학교 ②지방공기

업법에 의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③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정부산하기관 ④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법인 ⑤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을 대상기관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수협은 그 설립근거가 수산업협동조합법이라는 특별법으로 보여지고 그렇다면 정보공개법 시행령 제2조제4호의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특수법인에 해당될 것이므로 정보공개법상 공공기관에 해당된다고 판단됩니다.

Q5. 주민등록등·초본 발급 위임장 사본 공개 가능한 지

동사무소에서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담당자입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검찰청에서 수사상 필요한 사항이라며 구체적인 인적사항 및 사건명 등은 밝히지 않고 공문상으로 2003. 3. 28.~4. 4. 사이에 위임받아 주민등록 등·초본을 발급받은 대상자의 위임장 사본을 요구하였습니다. 전산으로 출력되는 주민등록 발급대장도 아니고 일일이 수기로 위임장을 복사하여 공개할 수 있는 지

《답 변》

정보공개법은 국가 등 행정주체와 국민간의 정보공개에 관한 권리의무관계를 규정하고 있는 법입니다. 따라서, 행정기관 상호간의 자료 협조 요청은 사무관리규정상의 업무협조 차원에서 처리되어야 할 사항이지 정보공개법으로 처리할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판단해 보건대 업무적으로 협조해 주시기로 결정하셨다면 관련자료가 전산자료든 일반자료든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고 보여지며 다만, 위임장에 기재되어 있는 개인정보를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를 신중히 검토하시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Q6. 법인의 상호, 연락처 등도 공개할 수 있는 지

> 저희 마을에는 대형광고탑이 설치되어 있는데 의문사항이 있어 그 업무소관인 문화관광부에 전화를 하여 설치한 업체 상호명과 연락처를 알 수 없는지를 문의 하였으나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알려 줄 수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과연 "법인 또는 개인이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에 해당되는 지

《답 변》

통상적으로 법인의 상호, 연락처 등은 법인이 정당한 이익의 추구를 위해 광고나 홈페이지 개설 등을 통해 오히려 공공연히 알리고 있는 사항으로써 공개될 경우 법인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므로 공개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Q7. 진행중인 하천공사 보상금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서 내역은 비공개대상 정보인 지

> 택지지구의 토지보상금 쟁송과 관련하여 진행중인 하천공사의 보상금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서 내역을 시행청에 요구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당사자의 토지가 아니라는 이유로 감정평가서 사본을 공개할 수 없다고 하는 데 정보공개법상 비공개대상이 되는 지

《답 변》

먼저 청구된 정보의 공개여부는 정보공개를 청구받은 당해 공공기관에서 판단하여 결정할 사항임을 말씀입니다. 정보공개법은 제11조제3항에서 공공기관은 공개대상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공개 청구된 사실을 제3자에게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그에 대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타인의 감정

평가서 사본의 공개여부는 감정평가서의 당사자인 제3자의 의견을 참고 내지 참작해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하여 당해 공공기관이 판단·결정할 것입니다.

Q8. 예산과 관련된 문서를 담당자가 업무참고용으로 가지고 있다면 공개해야 하는 지

> 예산과 관련된 모든 지출원본 문서는 경리부서에서 관리하고 보존기간 5년이 지나면 폐기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업무처리부서에서는 예산과 관련된 지출서류(공사시행기안문, 설계도서, 지출관련첨부물 등) 원본은 경리부서에 제출하고 업무처리부서에서는 참고용으로 보관하고 있을 경우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서 비공개사유가 아니라면 공개하는 것이 옳은 것인 지

《답 변》

정보라 함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 도면, 사진, 필름, 테이프, 슬라이드 및 컴퓨터에 의하여 처리되는 매체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라고 정보공개법 제2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어떤 정보가 어떤 공공기관에 현재 존재하고 있다면, 그 형태가 어떠하든 그 공공기관은 그 정보를 관리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공공기관의 책임여하를 막론하고 공공기관이 현재 관리하고 있지 않은 정보에 대해서는 물리적으로 공개할 수 없을 것이므로 공개대상 정보라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더욱이 정보의 보존기간이 경과하여 법적 절차에 의해 정식적으로 폐기되었다면, 현재 동(同) 정보는 존재치 아니하는 것이므로 공개할 수 없는 것은 사물의 이치일 것입니다. 따라서 법적 절차에 따라 정식으로 폐기된 정보는 공개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참고로 법적 보존기간이 지나 사실상 관리하고 있는 정보는 정보공개법상 정보로서의 실체를 갖추지 아니한 정보로써 청구대상에서 제외되는 일반적인 정보라 할 것이므로 행정기관이 공식적으로 정보공개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Q9. 각종 대장 또는 편람도 사본·출력물의 형태로 공개할 수 있는 지

우편으로 정보공개청구서를 받았는데 정보내용이 정보공개편람, 기록물등록대장, 정보공개처리대장을 공개방법으로 사본·출력물을 요구하였습니다. 신청인의 공개방법대로 사본·출력물로 공개해야 되는 지요

《답 변》

내용으로 보아서는 정보공개편람이나 기록물등록대장이 오히려 공개가 더 가능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특별히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비공개사유가 없다고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정보공개처리대장에는 청구인의 성명란이 있으므로 이 부분은 비공개하는 부분공개가 가능할 것입니다.

Q10. 지방의회 회의록의 사본 공개 여부

신청인이 정보공개신청 내용중 의원의 결재 싸인이 있는 회의록의 사본에 대한 정보공개 요청이 있어 정보공개법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원들에게 통지하여 의견 청취한 결과 비공개 요청할 경우 공개 여부는 어떻게 결정하여야 하는 지

《답 변》

공개 또는 비공개의 여부는 청구받은 당해기관에서 판단하여 결정할 사안입니다. 제3자의 의견은 당해기관이 공개여부를 결정하는데 참고 내지 참작되는 것이지 제3자 의견에 전적으로 공공기관이 기속되어 처음부터 제3자 의견대로 공개 또는 비공개결정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참고로 제3자의 의사(비공개 의사가 대부분일 것으로 봄)에 반하여 당해기관이 제3자와 관련있는 정보를 공개할 경우에는 공개사유를 명시하여 제3자에게 통지하도록 정보공개법 제21조제2항에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Q11. 유가보조금 지급내역 공개 여부

버스, 화물, 택시업계의 경영상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운수업체에 지급되는 유가보조금 지급내역을 업체 노동조합에서 정보공개 청구가 있어 제3자인 업체에 의견 청취한 바 비공개를 요구하였습니다. 당해 행정기관이 소유 또는 취득한 정보에 대하여 알권리는 국민이면 누구나 청구할 권리가 있으므로 공개해야 된다는 입장과 업체의 영업상 비밀에 관련된 내용이라 비공개해야 된다는 입장이 대립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제3자의 의견대로 비공개해야 되는 지

《답 변》

제3자에게 해당하는 업체의 의견(비공개 요청)은 당해 공공기관이 정보의 공개여부를 결정할 때 참고 내지 참작할 수는 있으되 처음부터 공공기관의 결정을 기속하는 것은 아닙니다. 판단해 본건대 공공기관이 관련법에 의해 관계되는 업체 또는 단체(법인 포함)에 지원하는 예산내역이 당해 관련업체 등의 영업상 비밀에 해당되는지는 심히 의문이나 지원하는 예산내역이 관련 업체에 의해 영업상 비밀에 해당한다거나 주장되어 진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서 지원 예산내역이 영업상 비밀이 되는 지를 관련업체가 입증해야 할 것이고 이를 토대로 당해 공공기관은 제3자인 관련업체 등의 주장이 타당성이 있는 지를 검토하여 공개여부를 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쨌든 모두(冒頭)에서 말씀드렸듯이 청구정보의 공개여부는 당해 기관에서 판단하여 결정하셔야 하며 제3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개하고자 할 경우에는 정보공개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해 공개 사유를 명시하여 제3자에게 통지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Q12. 사용목적이 공개 여부를 결정하는데 영향을 주는 지

사업관련 목적으로 우리청에 등록되어 있는 외국어학원의 명단 및 주소공개를 요구하였는데 이런 상업적인 목적으로 정보공개요구에 응해야 하는 지

《답 변》

일반국민이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공개청구할 경우 그 사용목적이 무엇인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즉, 상업목적이라고 비공개하고 학술연구목적이라고 공개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청구 정보의 공개 또는 비공개는 당해 정보가 정보공개 제9조제1항에 규정하고 있는 바, 공개대상정보에 구체적으로 해당되는 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 결정할 사안이지 쟁송목적이나 상업목적이라 해서 공개하지 아니하는 것은 아닙니다.

Q13. 이의신청인 경우 처리기간 산정 방법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18조제2항에 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하고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지체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데 정보공개신청도 민원사무로 보아 민원사무처리규칙 제3조제3항의 규정(처리기간을 공휴일을 산입하지 아니한다)을 적용할 수 있는 지

《답 변》

처리기간의 계산, 동일 정보의 반복 청구 등 정보공개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을 준용하도록 정보공개보완지침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기간의 계산을 보면 초일은 산입하되, 공휴일은 삽입하지 아니한다는 규정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Q14.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방법

모신용정보회사에서 관내 주민에 대한 말소 의뢰신청이 있었습니다. 거주는 하지 않았으나, 연락은 가능한 상태였고 직접 동사무소에 와서 신고의 무자란에 지문을 받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말소 의뢰한 회사에 거주사실을 유선으로 통보하였으나 사실조사서에 대한 정보공개청구가 있어 이에 정보공개법 제9조제6항의 규정을 들어 비공개 통보하였습니다. 청구인은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하였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 지요

《답 변》

이의신청 처리방법에 대해서는 접수후 7일이내에 각하, 기각, 인용 등의 결정을 하여 문서로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정보공개법에서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있는 정보공개심의회에 이의신청에 대한 내용을 안건으로 상정하여 심의하시고 심의결과를 토대로 결정하시면 됩니다.참고로 정보공개법 제12조 및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Q15. 정보공개청구내용이 여러 부서 등에 해당될 경우

정보공개 청구내용이 비공개대상에 포함되지는 않으나 소속기관이나 부서의 자료를 모두 취합하여야 될 경우 공개대상에 포함되는 지와 필요한 자료를 발췌하여 자료를 작성하여야 할 경우 또한 행정업무수행을 위하여 확보한 업체의 경리장부 사본 등도 공개대상에 포함되는지

《답 변》

청구된 정보에 대해 여러부서의 자료를 취합하여야 공개할 경우 당연히 비공개사유가 없으면 취합하여 공개하여야 할 것입니다. 행정기관 내부의 직제 또는 업무분장은 내부의 문제일 뿐 이를 근거로 청구인의 알권리를 제약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 경우 여러 부서중 어느 부서에서 업무를 처리해야 하느냐가 문제가 될 수 있는 데 청구정보의 대부분이 A부서에 해당하고, 나머지가 B, C 등 여러 부서에 일부 관련되는 경우에는 A부서에서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만일 특정 처리부서를 지정하기 곤란하다면 정보공개업무를 주관하는 담당부서에서 일괄 취합하여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여하튼 이러한 경우의 처리절차는 청구인에게 편리한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청구인이 청구서식을 작성하여 공개요구를 하고 행정기관이 그 서식에 맞추어 정보를 새롭게 가공하여 제공하는 것은 정보공개법이 정한 정보공개가 아니라 할 것입니다. 정보공개란 현재 보유 관리하는 정보의 형태, 내용 그대로 공개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경우 청구인이 반드시 그 서식을 고집한다면 민원으로 이

첩하여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처리대장상의 비고란에 "민원이첩"으로 기록을 유지해 두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정보공개법이 정한 정보공개청구가 아니라 하여 행정기관에서 일방적으로 취하를 요구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될 것입니다. 다음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①정보공개청구서 형식으로 청구하였으나 그 실질적인 내용이 민원인 경우(정보의 가공 공개 요구, 민원해결 요구 등) → 민원으로 이첩하여 처리 ②정보공개청구서 형식으로 청구하지 않았지만 그 실질적인 내용이 정보공개청구 사항인 경우 → 정보공개법이 정한 절차대로 처리, 정보공개법상 공개방법은 크게 "열람"과 "사본교부"가 있습니다. 청구량이 과다하여 행정업무수행에 큰 지장을 줄 만한 명확한 근거가 없다면 청구인이 원하는 방법대로 공개하여야 할 것입니다.

Q16. 정보공개와 민원신청을 구별하는 방법

> 2001년부터 2003년 7월까지 어떤 지역의 무인카메라 단속실적중 과속 80㎞ 이상에서 90㎞이하의 단속건수, 과속90㎞이상에서 100㎞이하 단속건수, 과속 100㎞이상 단속건수와 최초로 단속하게 된 시점 및 계기를 확인할 경우 정보공개로 청구하여야 하는 지 아니면 민원신청으로 하여야 하는 지

《답 변》

청구하고자 하는 정보내용이 당해 기관에 정보가 보유·관리하고 있다면 이는 정보공개청구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문서 등의 형태가 아니라 단순히 당해 기관에서 알고 있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이거나 여기저기 산재되어 있는 자료를 찾아 새로운 문서를 만들어 제공하게 될 경우에는 이는 민원으로 보아야 합니다. 그러나 청구인께서 당해 기관에서 어떤 형태로 당해 정보를 갖고 있는 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일단 정보공개청구를 하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만, 청구인께서는 정보공개청구 절차를 이행하시기 이전에 당해 기관에 동(同) 자료를 제공해 줄 수 있는지 여부를 문의해 보시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Q17. 청구인의 범위와 사용목적에도 제한이 있는 지

일반인의 정보공개열람이 아닌 대학생의 리포트와 관련하여 자료를 공개할 경우와 공개 요구한 자료가 보관되어 있지 않아 새롭게 정리하여 공개하여야 할 경우

《답 변》

정보공개법은 모든 국민에게 청구권을 부여하고 있으므로 대학생도 정보공개 청구가 가능하며, 사용목적에도 제한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참고로 정보공개는 일반민원과 달리 공공기관이 현재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있는 그대로 사본교부 등의 형태로 공개하는 것이므로 없는 정보를 새롭게 생산하거나 여러 가지 정보를 조합해서 새로운 정보를 작성하는 다시 말씀드리면 정보를 생산하거나 수정, 가공, 취합하여 공개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한 형태는 민원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민원인)이 그러한 것을 요구할 경우에는 민원의 형태로 처리하셔야 할 것으로 봅니다.

Q18. 열람 공개할 경우 내용을 기록할 수는 없는 지

공개 요청을 받아 들여 훼손의 문제가 없는 다량의 문서를 열람 공개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청구인이 열람내용을 다른 종이에 기록할 수 있는 지와 공개문서를 사진으로 촬영할 수 있는 지 또한 열람의 구체적인 범위는

《답 변》

청구된 정보의 공개여부는 전부공개, 부분공개, 비공개가 있으며, 공개방법에는 크게 열람과 사본교부가 있습니다. 일단 행정기관에서 공개하기로 결정하였다면 공개여부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공개방법에 있어 원칙은 청구인이 정보공개청구서에 지정된 방법으로 공개를 해 주는 것이라 할 것입니다. 다만, 청구량이 과다하여 행정기관이 공개할 정보를 선별하고 복사하는 등

행정력이 과다하게 투입된다면 사본 교부량을 일정 제한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법 제13조제2항) 그러나 이 규정은 사본은 절대로 안되고 열람만 된다는 취지가 아니라, 국민의 알권리와 행정력 투입간의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수준의 사본을 교부하라는 취지일 것입니다. 따라서 행정기관에서는 업무수행에 큰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최대한 사본을 교부하여야 하며, 청구인은 행정기관을 괴롭히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정말로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사본 교부를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또한, 일단 행정기관에서 공개결정을 하였다면 당해 정보는 공개대상정보로 판단된 것이므로 국민은 열람시 필요한 정보를 다른 이면지에 기록하거나 디지털 카메라 등으로 찍어 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사항은 정보공개법의 일반법의 해석에 따른 것이고 만일 정보의 공개방법에 대해 다른 법령에 별도의 규정이 있다면 그 규정이 우선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다른 법령에서 특정정보에 대해 열람만 허용하는 규정이 있다면 당연히 사본교부는 안 될 것입니다.

Q19. 개인별 보상내역은 어떤 경우에 공개할 수 있는 지

> 공사에 편입된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하여 관련법에 따라 감정후 감정가격에 의거 보상중에 있는 바, 본 공사에 따른 개인별 보상금액의 공개청구가 있을 경우 어떠한 경우에라도 공개하면 되지 않는 지

《답 변》

정보공개법에서는 청구된 정보의 공개, 비공개 여부를 청구받은 당해 기관에서 판단하여 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당해 기관에서 구체적으로 판단, 결정할 사항입니다. 참고로 토지수용 등에 따른 개인별 보상내역은 공공의 이익 등을 위한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어떠한 경우라도 국민의 재산보호나 개인사생활 보호차원에서 공개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Q20. 부분공개일 경우 처리대장 기재시 비공개 사유란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 지

정보공개처리대장을 보면 비공개사유란이 있는 데 부분공개일때도 비공개 사유란에 기입을 꼭 해야 하는 지 또 정보공개청구서와 결정통지서를 사본하여 모아 두어야 하는 지

《답 변》

정보공개법에 의하여 정보공개처리대장을 정리하여야 합니다. 질문한 사항대로 부분공개도 공개에 해당되므로 부분공개시 처리대장상의 비공개사유에 기입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며, 관련자료를 복사해 두시는 것은 업무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므로 가능한 결재받은 자료(결정통지서) 등을 복사해 두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Q21. 정보공개청구서 작성시 해당란에 모두 기재하여야 하는 지

정보공개청구서 서식에 보면 청구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정보내용, 공개형태, 수령방법 등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일 청구인이 법인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가 없는 임의단체인 경우에 청구서의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를 공란으로 하여 임의단체 명의로 청구할 수 있는 지 또한 개인이 정보공개를 신청할 경우 신청인의 주민등록번호와 주소를 기재하지 않았을 경우 정보공개에 응하여야 하는 지

《답 변》

정보공개청구서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은 청구인이 반드시 기재하여야 할 의무사항 입니다. 따라서 정보공개청구서에 공란으로 비어둘 부분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청구인이 법인이나 사업자등록번호가 없는 임의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를 대표하는 대표자나 실제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청구인의 성명, 주민등

록번호, 주소 등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기재사항이 누락되었을 경우에는 보완하여야 하며, 공공기관의 보완 요구에 청구인이 응하지 않는다면, 정보공개가 청구되지 않은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판단됩니다.

Q22. 민원인 본인이 제출한 서류가 정보공개 신청시 정보공개대상이 되는 지

지역교육청에서 유치원 인가시 민원인 본인이 제출한 서류일체를 민원인으로서 본인이 복사를 요구하였을 때 정보공개처리절차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하는 지

《답 변》

우선 민원이 행정기관에 대하여 허가·인가 기타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기 위해 제출한 문서나 관련서류 등은 행정기관이 그것을 접수함으로써 그때부터 공문서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민원인의 입장에서는 본인이 행정기관에 제출한 서류를 본인이 복사를 요구했을 때 무슨 특별한 절차나 행위가 필요한 지 의아해하고 쉽게 이해하거나 납득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이는 공문서의 처리절차대로 처리하셔야 할 것으로 봅니다. 만약, 이를 정보공개절차에 따라 처리한다면 청구인(민원인)이 제출한 서류를 청구인(민원인)이 복사를 요구하는 것이므로 정보공개법 제1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즉시 처리가 가능한 정보의 공개절차에 준하여 조치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Q23. 처리부서를 달리하는 정보공개가 청구되었을 경우 어떻게 하여야 하는 지

정보공개청구 내용이 여러부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관부서를 어떻게 지정해야 하는 지 만약, 주관부서를 설정 처리해야 한다면 수수료 처리 등 관련 법령 근거는

《답 변》

청구한 정보의 내용이 기관내 여러부서에 관련되는 경우 주된 처리부서를 지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주된 처리부서에서 처리하되 정하는 기준은 양적(예, 10건중 7건이 한 부서에 해당될 경우), 질적(예, 청구정보가 건축관련인 경우 건축과, 수도과, 환경과 등과 관련되는 경우 건축과에서 처리)을 따져 처리부서를 지정하고, 주된 처리부서를 지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담부서에서 취합,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수수료 산정, 결정통지서 통지 등은 취합부서에서 최종적으로 업무를 처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전담부서는 정보공개청구서를 처리부서에 전달하는 단순한 기능만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당해 기관의 정보공개제도 운영을 종합, 촉진하는 적극적인 기능을 수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Q24. 정보공개의 수수료 징수에 대하여

> 수수료 징수와 관련하여 징수시기, 수수료를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 인터넷 청구일 경우에는 서면과는 달리 수수료 징수가 어떻게 해야 하는 지요 또한, 우편으로 공개할 경우 처리과 담당자의 개인통장으로 현금을 징수한 후 수입증지로 전환하는 경우, 수입증지는 보관하는 결정통지서에 부착하면 되는 지,

《답 변》

정보공개는 민원과 달리 법령에 청구인의 비용부담(법 제17조, 시행령 제17조, 시행규칙 제7조, 울산광역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제3조 등) 조항이 있기 때문에 수수료는 반드시 징수하셔야 합니다. 수수료 징수 시기는 공개하기 전에 징수되어야 합니다. 만약 수수료 납부가 되지 않으면 청구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미리 유선상으로라도 수수료 징수여부에 대해 청구인과 통화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구인께서 수수료를 납부

하지 않으시겠다면 내부적으로 종결 처리할 수 밖에 없다고 보여집니다. 수수료 징수는 인터넷 청구 경우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가지 말씀드릴 것은 전자시스템상 징수할 수 있는 기능까지 고려하지 못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급적으로 청구인께서 증지를 구입하여 직접 방문하든지 아니면 우편으로 보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어쩔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라면 담당자 개인통장으로 현금을 징수한 후 수입증지로 전환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 하겠습니다. 정보공개법시행령 제17조에서는 수입증지 등을 결정통지서(즉시 공개할 경우 청구서) 붙이고 소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관련 결정통지서를 공공기관에서 보관하시면 될 것입니다. 굳이 증지를 붙인 결정통지서가 필요하다고 요구할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에는 사본을 복사하여 보관하신 후 원본을 교부하시면 되겠습니다.

Q25. 소속기관에도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는 지

> 최근 우리대학교 공무원직장협의회에서 회장 명의로 총장 및 사무국장의 업무추진비와 출장내역을 행정감시 목적으로 정보공개를 청구하였습니다. 소속기관의 개인 또는 단체 자격으로 기관장에게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는 지와 공개 가능할 경우 공개하여야 하는 지

《답 변》

정보공개법은 국가 등의 행정주체와 국민간의 권리의무관계를 규율하는 법입니다. 통상 행정주체와 조직구성원간의 법률관계는 그 법률관계의 성격에 따라 행정주체와 국민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법률과는 다른 별도의 법률(예, 국가공무원법, 공직자윤리법 등)을 정하여 규율하고 있으며, 이 경우 조직구성원은 일반 국민의 지위에서와는 달리 권리행사에 많은 제약이 따르고 또 특별한 의무가 부과되기도 합니다. 소속직원 또는 단체가 소속기관장에게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는 지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는 의문이나 이에 대해서는 좀 더 구체적이고 면밀한 법률적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또한 청구인의 사용

목적은 공공기관이 공개여부를 결정하는데 하등의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즉, 청구 정보의 사용목적이 행정감시라 하여 비공개하고 학술연구라 하여 공개하는 것은 아니란 말씀입니다. 정보공개여부는 청구된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각호에 정한 비공개대상정보에 구체적으로 해당되느냐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지 사용목적에 따라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기관장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의 공개는 정보공개청구가 있기 전에 자발적으로 공개하는 것이 국민의 알권리 보장이나 행정의 투명성 확보 등 정보공개법 제정 취지에 부합한다할 것입니다. 기관장이 사용한 업무추진비를 공개하지 못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보여지고 오히려 공개하지 않음으로 국민이나 소속직원에게 오해를 사는 것이라고 봅니다. 업무추진비를 공개할 경우 주의할 것은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은 공개하더라도 업무추진비 수혜자의 개인정보는 보호되도록 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컨대 독거노인 홍길동과 관련하여 업무추진비를 사용하였다면 수혜자 홍길동의 개인정보는 공개되지 않도록 보호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Q26. 처리한 업무담당자 이름 등도 정보공개 가능한 지

> 몇 년전에 처리한 업무의 담당자 및 담당계장의 정보공개 신청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1998년 총무처에서 발행한 정보공개제도 운영 요령 책자에 출장명령의 직원이름 등은 개인정보에 해당되므로 비공개 사항이라고 명시되어 있는 바, 출장명령의 직원이름 등이란 업무처리담당자로 보아도 되는 것인지요

《답 변》

공무원의 이름, 직위 등 "공무원의 개인정보"는 청구된 정보의 내용이 공적영역이냐 아니면 사적영역이냐에 따라 달리 판단될 것입니다. 우선 사적영역이라면 당연히 개인정보로서 비공개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를 들면, 특정 공무원의 가족사항, 학력, 소득, 금융거래상황, 집주소 및 집전화번호 등이 이에 해

당할 것입니다. 또한 공무원 개인의 근무성적평가 결과, 공무원 징계자 명단 등은 공적영역이 다소 혼합되어 있더라도 비공개대상정보일 것입니다.(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 본문) 만약, 공적영역이라면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인적사항이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는 공적영역이라도 비공개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세무조사, 소방관련 현장조사 등과 관련하여 사전에 공무원의 인적사항이 알려지게 되면 피조사자의 사전회피, 증거인멸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라 할 것입니다. 이처럼 공무원의 인적사항의 공개는 그 공적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법령에 의하여 공개하지 않도록 규정된 경우 등이 아니라면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이름 등은 정책실명제의 취지, 행정의 투명성 확보 등 공익적 관점에서 공개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여집니다.(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 다목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1998년도 총무처에서 발행한 정보공개제도 운영요령에 나와 있는 출장명령의 직원이름도 획일적으로 비공개로 보기보다는 앞에서 말씀드린 기준을 적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공무원과 일반인의 개인정보의 공개기준은 서로 다름을 생각하시어 적정하게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Q27. 수수료 감면대상에 대하여

(사) ---기념 사업회에서 정보공개 청구가 있어 사본공개 하였으나 공공복리의 유지, 증진을 위한 비영리의 학술·공익단체로 인정됨으로 수수료 감면대상이라 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사항으로 볼 때 수수료 감면대상이 되는 지

《답 변》

(사) ---기념 사업회는 수수료 감면대상입니다. 즉, 동(同) 사업회가 비영리의 학술·공익단체에 해당되는 지의 여부는 관련법령이나 사업회 정관 등에 명확히 명시되어 있다면 수수료 감면 대상이 됩니다.

Q28. 정보공개와 일반민원의 분류에 대하여

정보공개로 청구되었으나 그 내용이 질의형식이나 공공기관에서 새로운 자료를 작성하여 처리하여야 할 경우 일반민원으로 분류하여 처리하면 되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처리절차가 있는 것인 지

《답 변》

정보공개 청구서 양식에 기재하여 청구하였다 할지라도 내용이 민원사항이라면 민원으로 처리하셔야 하며, 반면에 서신 형식의 민원서류라 할지라도 서신 내용이 청구서 양식의 기재하는 내용과 일치하거나 유사하다면 정보공개로 갈음하여 처리하셔야 합니다.

Q29. 공공기관과 개인간 체결한 매매계약서도 공개할 수 있는 지

시유지를 개인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현재 중도금을 납부한 상태에서 시민단체에서 매수자간의 매매계약서 사본을 요구하는 정보공개청구가 있어 현재로서는 계약체결이 완료되지 않았고 계약서 자체에도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럴 경우 공개하여도 되는 지

《답 변》

먼저 청구된 정보내용이 제3자와 관련이 있는 정보라 할 지라도 공개, 비공개는 당해 기관에서 결정하여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그렇지 못하다 할 지라도 제3자의 의견은 당해 기관이 결정에 참고 내지 참작이 될 뿐이지 기관의 결정을 기속하지는 않는 것입니다. 물론 정보공개법 제21조의 제3자 이의신청 등은 추후 별도 논의되어야 하겠습니다만, 어쨌든 당해 기관은 제3자 의사에 반해 제3자 관련정보를 공개할 수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므로 정보공개에 관하여 법 제정취지 등을 감안 적극적으로 공개하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참고로 공개여부를 결정할 때는 공개로 얻을

수 있는 이익과 비공개로 얻을 수 있는 이익의 비교형량하여 심도있게 검토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봅니다.

Q30. 부존재인 정보를 이의신청하였을 경우는 어떻게 처리하여야 하는 지

얼마전에 쓰레기 종량제봉투 판매소별 판매대금현황(최근 5년간)을 요구하는 정보공개청구가 있었습니다. 청구한 정보가 없어 사업소별 취합하여 다시 새롭게 가공하여야만 공개 가능한 사항으로 부존재로 비공개 결정 통지하였으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이 들어 왔습니다. 이런 경우 이의신청이 가능한지 또한 사용목적이 학술연구이므로 감면대상이 되는 지

《답 변》

정보공개법에서 정보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기록물 즉 현재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으면서 관리하고 있는 문서, 도면, 사진, 필름... 등을 말합니다. 따라서 청구된 정보내용에 맞도록 없는 정보를 새롭게 만들거나 있는 정보를 가공하여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일종의 민원입니다. 광의(廣義)의 의미에서는 국민의 요구 또는 요청에 의해 공공기관이 어떤 처분을 한다는 측면에서 보면 정보공개도 일종의 민원일 수 있겠습니다만, 협의(俠義)의 의미로 본다면 정보공개와 민원은 엄격히 다르다고 보여집니다. 즉 대부분의 일반민원(주민등록등·초본 교부 등 민원서류 발급에 따른 수수료 부담은 제외하고)은 공공기관의 자료 제공 또는 공개에 대해 민원인이 수수료를 부담하지 않으나 정보공개는 청구인이 수수료를 부담해야 하고, 일반민원은 자료나 정보를 민원인의 요청에 맞게 생산, 가공하여 줄 수 있습니다만, 정보공개는 청구인에게 원본 그대로 공개한다는 것 등이 다르다 할 것입니다. 어쨌든 현재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있는 그대로 사본으로 교부하거나 열람하게 하는 것이 정보공개법상 정보이며 공개인 것입니다. 판매소별 규격봉투 판매현황과 관련된 정보를 현재 공공기관이 보유·

관리하고 있지 않다면 어쩔 수 없이 공개할 수 없을 것입니다. 존재하지 않는 정보를 공개할 수 없는 것은 당연한 이치일 것입니다. 따라서 존재하지 않는 정보에 대해서는 부득이 공개할 수 없을 것이고, 청구에 맞게 정보를 만들거나 가공해서 공개하는 것은 정보공개법 취지에는 맞지 않는다 보여집니다. 아울러, 비용감면에 관해서는 언급하신 정보공개법시행령 제17조제3항에 해당될 때에만 가능하다 할 것입니다.

Q31. 청구인의 공개방법에 반하여 공개할 때도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지

> 정보공개청구내용중 공개방법으로 사본교부를 요구하였는데 당해 기관에서는 열람공개로 결정하여 통보가 왔습니다. 이런 경우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지요

《답 변》

정보공개법 제19조에는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하여 공공기관의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법률상 이익의 침해를 받은 때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청구인은 해당 공공기관의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해 법률상 이익의 침해를 받았다고 생각되면 당연히 행정심판을 청구하실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Q32. 업체에서 제출한 세금계산서도 영업상 비밀이 되는 지

> 정수물품입찰계약시 제출한 서류에 대한 정보공개 요청이 있어 그 내용은 업체에서 제출한 세금계산서, 매입매출장 등이 영업상비밀에 해당되는 지

《답 변》

먼저 영업상 비밀의 정의는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제2조제2호에서는 "영업비밀"을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기타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보공개법상의 규정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에서는 "법인 등의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대해 비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은 개인정보이면 비공개하도록 되어 있는 제6호의 규정과 달리 영업상 비밀이라하여 무조건 비공개되는 것이 아니라,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어야 비공개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세금계산서 및 매입매출장에 포함된 정보들이 영업상 비밀인지 여부와 나아가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업체가 제출한 세금계산서와 매입매출장이 공개대상정보인지 여부에 있어 세금계산서에 포함되어 있는 세부정보별로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첫째, 공급받는 자(정부)의 등록번호, 상호, 대표자성명, 주소가 포함되어 있는 바, 이들 정보는 공공예산을 사용한 정부기관에 관한 정보이므로 당연히 공개대상정보입니다. 둘째, 정부가 계약을 통해 구입한 품목, 공급가액, 품목별 공급가액도 공개대상정보입니다. 왜냐하면, 정부가 예산을 사용하여 어떠한 물품을 얼마에 구입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국민이 알권리가 있으며, 나아가 예산사용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개하는 것이 비공개 함으로써 얻는 이익을 압도하고도 남습니다. 셋째, 공급자의 상호, 등록번호, 주소, 대표자 성명을 공개할 것인지가 쟁점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우선 공급자 상호와 소재지는 공연히 알려진 사항으로서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에 따른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음으로 누구나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공급자의 등록번호 및 주소(번지까지)도 영업비밀로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이 정보들은 주민등록번호와 같이 공개될 경우 다른 사람에 의해 악용의 소지가 있어 당해 업체의 영업활동을 훼손하게 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시면 비공개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의 정보에는 공개할 수 있는 정보와 공개할수 없는 정보가 혼합되어 있는 경우 공공기관은 정보공개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전부

를 비공개하기보다는 비공개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하는 부분공개제도를 활용할 의무가 있습니다. 매입매출장에 대하여 사실, 매입매출장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당해 정보에 어떤 세부정보들이 포함되어 있는지 잘알지 못함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이 정보가 당해 업체의 전반적인 경리·재무제표 등에 관한 사항이라면 비공개 사유는 낮아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계약에 의해 정부에 물품을 공급하는 부분에 한정된 것이라면 비공개 사유는 낮아지게 될 것입니다. 특히, 이 정보가 공개될 경우 다른 경쟁업체에 유리한 정보로 활용됨으로써 당해업체의 경영상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없는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영업상 비밀관련 판례】 이미 종료된 임대아파트 분양원가산출내역서는 생산방법, 판매방법 등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정보인 영업상비밀에 해당한다고 볼 사정이 존재하지 않음(서울행정법원, 99구19984) 중소기업육성자금의 지원을 받은 업체 명단 및 내역은 공개될 경우 업체의 재무상황과 금융거래상황이 드러난다고 볼 수 없으며, 업체의 자금상황의 어려움을 대외적으로 드러내어 기업경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없음(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1998. 10. 9.) 지방자치단체장의 특수활동비 집행내역에 기재되어 있는 식당 등의 위치, 명칭, 음식요금 등은 그 식당 등의 영업상 지위가 위협받는다거나 그 법인 등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해하는 등 기존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근거가 없음(인천지방법원, 99구1536)

Q33.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이내 반드시 결정을 하여야 하는지

정보공개결정사항에 대하여 민원이 이의신청을 하면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이내 수용여부를 결정하여 결과를 청구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는데(정보공개법 제18조제2항) 하루 초과하여 결정통지를 하였다면 결정내용에 어떠한 변동사항이 있으며 또한 기간연장으로 인한 어떠한 행정처분이 따르는지

《답 변》

정보공개 이의신청에 대하여 정보공개법 제18조제2항에 "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하고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지체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정해진 기간이내에 결정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7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사유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종전과 달리 정보공개심의회에 외부전문가 위촉이 의무화됨에 따라 심의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어 이의신청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충분한 심의기간을 부여)되었습니다. 따라서 공공기관은 부득이한 사유로 정해진 기간이내에 결정할 수 없는 때에는 7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이 가능하므로 총 14일이내에 그 이의신청을 받아들여 인용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이유없다 하여 기각할 것이냐 그 외 흔한 일은 아니겠지만 신청요건의 흠결을 이유로 각하할 것이냐를 결정하여 지체없이 서면으로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의신청 통지기일인 7일을 넘겨 하루 초과하여 결정통지하였다 하여 결정에 별다른 변동사항이 있을 것 같지는 아니하지만 이로 인해 어떠한 행정처분이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Q34. 전입신고서 사본도 공개할 수 있는 지

채무자의 전입신고서상 전화번호를 알기 위해 전입신고서 사본을 요구하는 경우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의 규정을 들어 비공개 하여도 되는 것인지

《답 변》

청구 정보에 대한 공개, 비공개여부는 당해 기관에서 판단하여 결정할 사안입니다만, 미루어 짐작해 보건대 전입신고서가 대부분 개인정보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비공개하는 것이 맞습니다.

Q35. 택지개발사업지구내 피수용자의 물건에 대한 지목, 지번, 면적, 소유자 등도 공개할 수 있는 지

택지개발사업지구내 피수용자의 토지, 건축물, 물건에 대한 지목, 지번, 면적과 소유주의 성명, 현주소를 요구하는 정보공개청구에 있어 검토한 바, 개인정보에 해당되는 사항이라 판단됨에 비공개 결정하여도 되는 지요

《답 변》

질의와 관련된 정보(피수용자의 토지, 건축물, 물건에 대한 지목, 지번, 면적과 소유자의 성명, 현주소 등)를 당해 기관에서 보유·관리하고 있다면, 이는 당연히 정보공개청구대상입니다. 그러나 동(同) 정보를 공개할 것인지 또는 비공개할 것인지는 당해 기관에서 심도 있게 검토·판단하여 결정할 사안입니다. 공개, 비공개 여부를 결정하실 때 고려하실 사항을 참고로 말씀드리면 공개청구 정보가 택지개발사업예정지구내의 피수용자 토지관련이므로 청구목적이 부동산 투기의 개연성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만약 부동산투기의 목적이 농후하다고 판단하신다면 청구정보에 대해서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의 개인에 관한 정보 및 제8호의 부동산투기, 매점매석 등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등으로 비공개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부동산 투기 등과 명백하게 관련이 없다고 인정된다면 법 제9조제1항제6호의 개인에 관한 정보인 피수용자의 성명, 주소 등은 비공개 가능할 것이나 지번 등 나머지 정보에 대해서는 공개할 수도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와는 별개로 청구 정보는 택지개발예정지구내의 피수용자 정보이고, 동(同) 수용자는 청구인과는 전혀 관계없는 제3자에 해당하므로 법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해 청구사실을 제3자인 피수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Q36. 조례로 정한 수수료 금액이 법령의 범위를 초과하였을 경우

정보공개법시행령 제17조(비용부담)에 수수료의 금액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 수수료의 금액은 조례로 정한다라고 명시되어 있고 자치단체에서 정한 수수료금액이 법령에서 정한 수수료금액보다 초과하였을 경우 자치단체에서 정한 수수료금액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법령에서 정한 수수료금액을 적용하여야 하는 지

《답 변》

질의하신 내용으로 보아 조례로 정한 수수료 금액이 법령에서 정한 수수료 금액보다 많은 것으로 보여지고 이때 법령 또는 조례중 어느 쪽을 적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것으로 이해되는 바, 정보공개법 제4조는 지방자치단체에 법령의 범위안에서 그 소관사무에 관하여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제정권을 부여하고 있고, 아울러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수수료의 금액은 조례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으므로 동(同) 질의내용은 조례에서 정한 수수료를 적용하여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와는 별개로 어떤 사항에 대해 법령에서 조례나 규칙으로 위임하여 정하도록 하는 사항은 통상 법령에서 정한 범위내에서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법 체계상 타당하다 보여지는 바, 이는 정보공개 수수료라 하여 예외일 수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정보공개 수수료의 부과는 국민의 입장에서 볼 때, 행정기관의 처분에 대해 금전적으로 부담해야 할 일종의 작위의무(물론, 수익자부담의 원칙 또는 특별한 행정서비스에 대한 대가의 지불이라는 전제에서는 당연한 얘기겠지만)이므로 조례가 법령에서 정한 금전적 부담의 범위보다 더 많이 부과하는 것은 법 체계상 문제의 여지가 있을 수 있다고 보여지므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수수료 금액은 법률에서 정한 수수료 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정해져야 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Q37. 정보공개 수수료 증지는 교부하는 결정통지서에 첨부하는지 아니면 보관하는 결정통지서에 첨부하는 지

정보공개신청에 의하여 정보를 공개할 경우 수수료에 해당하는 수입증지를 첨부하여야 하는 데 청구인에게 교부하는 결정통지서에 붙이는 지 아니면 보관하는 결정통지서에 붙여 놓는 것인지

《답 변》

정보공개 수수료는 공공기관이 특정인에게 특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에 대해 수익자 부담의 원칙으로 제공받는 청구인에게 실비의 범위안에서 부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동(同) 수수료는 중앙행정기관은 수입인지, 지방자치단체는 수입증지로 기타 공공기관과 부득이한 경우에는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질의하신 사항은 정보공개법시행령 제17조제6항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만, 증지를 붙이는 곳이 기관에 보관하는 결정통지서인지 청구인에게 교부하는 결정통지서인지는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법규정 해석을 통해 보면 법 시행령 제17조제6항의 정보공개 결정통지서는 법 제13조 제1항에 따른 것이며, 법령의 규정에서 말하는 결정통지는 청구인에게 제공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당연히 정보공개결정통지서의 원본은 청구인에게 통지되는 문서를 말한다고 볼 것이며 행정기관이 보관하는 통지서는 사실상 사본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법 시행령 제17조제6항에서 공공기관이 보관하는 결정통지서라는 규정이 없는 한 동(同) 규정에서 말하는 정보공개결정통지서는 청구인에게 통지되는 문서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청구인이 공개에 응할 시 지참하여야 하는 결정통지서에 증지를 붙이고 소인한 후에 수수료 징수의 증명을 위해 복사하여 보관하시고 증지를 붙인 결정통지서는 청구인에게 교부하시면 될 것입니다.

Q38. 성과상여금 관련 자료의 공개여부

정보공개법에서 규정한 정보공개의 범위와 청구권자의 범위에 대하여 법 제5조의 규정에는 "모든 국민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직원이 소속기관장에게 성과상여금지급 관련 자료를 신청한 건은 평정결과에 좌우되므로 비공개 할 수 있는 지

《답 변》

정보공개는 누구나 청구할 수 있으며 자기가 소속된 기관에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성과상여금지급 관련 자료의 공개여부는 차등지급에 따른 명단과 평정결과의 공개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의 인사관리(개인 평정내용 등)와 관련이 있고, 동항 제6호의 개인에 관한 정보(공개시 차등지급대상자가 누구인지 식별이 가능하고 평정결과도 개인에 관한 정보)에 저촉될 것이므로 당해 기관이 비공개대상정보로서 비공개할 수 있으시라 판단됩니다. 다만, 평정기준의 공개가 공정한 평정(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가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습니다.

Q39. 인사기록카드도 공개할 수 있는 지

청구인이 특정 공무원을 지명(해당 공무원 성명 표기)하여 과거에 그 공무원이 근무했던 근무경력 여부를 청구하였을 때 공개할 수 있는 지와 만약, 비공개하였다면 일반 민원으로 확인 요청할 경우는 어떻게 하여야 하는 지

《답 변》

청구인의 청구내용이 개인정보(인사기록카드)의 한 일부로서 분리하여 열람하거나 사본공개가 불가능하다면 청구인이 요구한 공개방법에 의해 정보공개가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특정 공무원의 근무경력 여부"만을 확인하여 주

는 것은(일반민원도 포함) 정보공개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법령에 비공개 근거가 있는 것이 아니라면 정보공개법 제9제1항제3호, 제5호, 제6호의 적용을 근거로 할 상당한 이유를 찾기에는 어렵지 않나 판단됩니다.

Q40. 민원서류도 공개 가능한 지

일반민원신청서류에 대한 정보공개 열람이 많습니다. "건축허가신청서"나 "농지전용허가신청서" 등 보통 쟁송관련으로 청구합니다. 청구인의 자신의 정보도 있고 제3자의 정보도 있습니다. 만약 공개를 한다면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를 제외한 정보는 공개 가능한 지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 다목에 의해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보아 민원서류 일체를 공개하여도 되는 지

《답 변》

각종 신청서(첨부서류 포함) 제출은 신청인이 행정청에 단독적 행위를 요구하기 위한 것이 일반적이고 신청서는 보통 민원서류로 분류되어 비공개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행정처분과 관련해서 그 처분의 정·부당이나 위법을 다툴 때(증거자료 제출 포함)에는 질의 내용과 같이 부분공개가 가능하리라 판단됩니다. 또한 정보공개는 사안에 따라 필요시(비공개된 사항이 공개되지 않으면 의미가 없을 때) 부분적으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어느 경우든 관련 제3자에게는 정보공개청구 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Q41. 청구량이 많다는 이유로 비공개 할 수 있는 지

수용자가 행정감시, 쟁송관련 목적으로 방대한 자료의 사본을 요구하였는바, 수용자 신분으로 자신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으면서도 직원들을 괴롭히기 위한 목적으로 청구한 것 같은 느낌이 들 뿐 만 아니라, 이런 자료를 사본하기 위해서는 많은 직원들과 시간이 소요되므로 비공개 할 수는 없는 지

《답 변》

정보공개법은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목적으로 정보공개청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한 것으로서 공공기관이 자의적으로 그 청구 목적의 합당성을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정보공개법 제4조제1항 내지 제9조제1항 각호의 이유로 비공개 내지 부분공개결정을 할 수 있을 뿐입니다. 질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비공개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한 청구인이 요구한 공개방법에 의하여 공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만 공개대상정보의 양이 과다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정보공개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사본·복제물을 일정 기간별로 나누어 열람을 먼저하게 한 후 해당 정보를 2월이내에 교부를 완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Q42. 본인의 주민등록말소신청서의 사본은 공개 가능한 지

이혼 소송중 남편이 부인을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거주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말소신청을 하였습니다. 그 와중에 법원 판결을 받아 이혼에 갈음하는 조정 판결이 내려졌고, 부인이 자기를 말소 요청한 말소신청서 사본을 요구하는 정보공개를 청구하였습니다. 사실 부인은 주민등록지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정보를 공개하여도 되는 지

《답 변》

질의한 내용으로 볼 때 정보공개청구된 내용이 정보공개법 제4조제1항에 의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청구자가 본인과 관련된 정보를 요구하는 것이 되어 공개해도 무방하리라 판단됩니다.

Q43. 제3자와 관련이 있는 정보이면 반드시 의견청취를 하여야 하는 지와 그 의견에 기속되는 지

A라는 민원인이 인근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생활에 지장을 받고 있다는 전화민원을 제기하여 공장에 대한 소음오염도 검사를 측정한 결과 기준을 초과하여 행정처분을 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민원인과 공장과의 1년전부터 환경오염피해보상소송이 진행되어 오던 중이어서 민원인이 공장의 소음측정결과를 법원에 제출하고자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는데 정보공개법의 규정에 비공개대상인지와 반드시 제3자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하는지, 제3자가 비공개를 원한다면 그 의견에 따라 비공개 하여야 하는 지

《답 변》

정보공개여부의 결정과 관련해서는 당해 공공기관에 결정권을 부여하고 있으며, 공개여부의 판단에 있어서는 정보공개법 제4조제1항 및 제7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비공개대상정보인지를 우선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제3자와 관련해서는 제3자에게 공개 청구된 사실을 통지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나, 당해 공공기관이 제3자의 의견청취나 그 의견에 기속되는 의무를 부과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Q44. 영업을 목적으로 하여 등록된 상호 및 주소는 공개 가능한 지

관내 PC방 현황을 요구하는 인터넷 정보공개청구에 있어 상호와 주소도 영업상 비밀에 해당되는 지

《답 변》

영업을 목적으로 하여 등록된 업체의 상호 및 주소는 일반인에게 널리 홍보하는 단순한 사항으로 공개 가능하리라 판단됩니다.

Q45. 청구인이 취득한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는 적합한가

청구인인 A씨가 정보공개를 청구하여 공개된 정보를 가까이 지내고 있던 B씨에게 그 정보를 주었다면 그 행위는 적법한가

《답 변》

정보공개법상 청구인이 공개한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은 논리상 적법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공공기관에 대한 청구인은 모든 국민이므로 당사자가 될 수 있습니다. 종전에는 '취득한 정보를 청구한 목적에 따라 적정하게 사용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었으나 현행 법규에는 폐지되었으므로 구체적인 피해사실(민·형사상)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공공기관이 취할 조치는 따로 없다고 보여집니다.

Q46. 보상금 지급내역도 공개할 수 있는 지와 관련 제3자의 모두에게 의견청취를 해야 하는 지

공공사업추진을 위하여 해당 용지내의 토지 및 건물 등에 대하여 매수를 하고자 감정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이 경우에 해당 토지 등의 소유자가 동일 사업내 다른 토지 등의 소유자(보상대상자) 명단 및 보상액을 정보공개 신청 하였을 경우 정보공개대상이 되는 지와 제3자가 다수일 경우 의견 청취를 관련자 모두에게 의견을 청취하여야 하는 지

《답 변》

공공사업시행과 관련하여 관련 토지 및 토지소유자가 기(旣) 고시된 사항이므로 공개 가능하리라 보여지며, 다만, 토지소유자에게 책정된 보상금지급액을 공개하는 것은 그 공개가 토지소유자의 이익에 반하는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또한 제3자의 의견청취에 있어 관련 제3자가 다수일 때도 물론 개개인에

게 통지하여야 하면, 연락이 불분명할 경우에는 공시의 방법 등을 사용해야 합니다.

Q47. 제3자란 누구를 지칭하는 지

> 정보공개법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공공기관은 공개대상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공개 청구된 사실을 제3자에게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그에 대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제3자란 누구를 말하는 것인지 통상적 의미인 당사자가 아닌 사람을 말하는 것인지

《답 변》

정보공개청구자와 그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라 한다면 제3자는 그 외의 모든 자를 말합니다.

Q48. 정보를 취득한 기관에서도 공개 가능한 지

> 행정사무감사자료집(실·과, 소별 보고내역)은 생산은 집행부(시장)에서 하였고, 보유·관리는 소관기관인 의회의장이 정보를 보관하고 있다면 청구인이 의회의장을 상대로 정보공개를 청구하였을 경우 공개 가능한 지

《답 변》

정보공개법 제2조에서는 공개정보의 정의로서 "정보라 함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및 컴퓨터에 의하여 처리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개 청구된 정보를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보유·관리하고 있는 기관이 공개하면 됩니다.

Q49. 공사중인 계약업체의 계약관련 서류도 공개 가능한 지

현재 공사중인 계약업체의 하도급업체가 계약관련 서류 사본을 원하고 있습니다. 정보공개법에 의하면 비공개대상정보의 유형 제5호에 "입찰계약 - 입찰관련정보"에 대한 내용이 있고 현재 공사가 진행중이므로 사안이 완결되지 않은 사항으로 공개 가능한 지

《답 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입찰계약"은 입찰 또는 견적실시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의 우려가 있는 정보를 뜻한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입찰관련 정보로서 입찰자의 경영내용, 업무내용 또는 평가결과를 기재한 사항 등 개인 및 법인에 해당하는 사항을 기재한 정보, 설계·시공상의 노하우, 건축물의 설계도 등은 정보공개시 설계·시공자에게 불이익을 줄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는 비공개결정이 가능하리라 판단되며, 개별적인 사안의 정보공개 여부에 대한 판단과 결정은 결정권을 갖고 있는 정보를 보유·관리하는 기관에서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Q50. 소관업무가 아닐 경우도 비공개하여도 무방한 지

사회복지관의 사업계획서 공개 요청이 있는 바, 해당과에서는 현재 소관업무가 아니어서 사회복지관(일반법인)의 e-mail로 통보하고 비공개처리하였습니다. 소관업무가 아닌 경우도 비공개로 처리함이 바람직한 지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비공개대상인 지

《답 변》

정보공개법시행령 제11조제4항의 규정에는 "공공기관은 다른 공공기관이 보유하거나 관리하는 정보의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소관

기관에 이송하여야 하고 즉시 소관기관과 그 사유를 명시하여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으므로 비공개로 결정할 사항이 아니라 이송절차에 의하여 처리할 사항으로 보여집니다.

Q51. 처리중인 민원서류도 공개 가능한 지

처리중에 있는 민원서류를 제3자가 공개 청구할 경우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으로 보아 비공개결정 통지하여야 되는 지

《답 변》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은 "민원사무처리의 당해 행정기관에 민원인의 이익이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민원사무의 정보보호에 노력해야 할 의무를 부여(제13조)하고 있으므로 민원처리중의 정보에 대한 사항은 비공개가 가능하리라 판단되며, 비공개대상정보의 근거 조항으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정보로 "공정한 업무의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경우"에는 비공개로 하는 것이 맞습니다.

Q52. 제3자의 행정심판재결서를 청구하였을 때 공개 가능한 지

A의 행정심판재결서를 B가 정보공개를 청구하였을 때 공개 가능한지요

《답 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에 비공개대상정보를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공개대상임을 말씀드립니다. 질의한 내용은 제3자의 정보를 공개 요구할 경우에는 관련된 제3자에게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하며, 정보공개법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공개청구에 대한 의견청취 후 공개여부를 결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Q53. 취하서는 어느 부서에서 접수하여야 하는 지

정보공개청구서가 접수되어 해당 처리과에서 처리하고 있는 기간에 청구자의 사정으로 인하여 정보의 필요성이 없어져 취하서를 청구인이 제출하였습니다. 취하서를 접수할 때 정보공개 담당부서에서 접수하여 처리과로 보내는 것이 맞는 지 아니면 처리부서에서 접수하여 처리하는 것이 맞는 지

《답 변》

정보공개청구서의 접수는 주관부서에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주관부서는 "정보공개청구서"의 내용을 "정보공개처리대장"에 기록하고 해당정보를 보유·관리하는 담당부서로 이송하여 처리케 하고 있습니다. 다만, 취하서의 경우는 진행중인 정보공개업무의 종결과 관련됨으로 주관부서에서 접수하면 처리부서로 이송하고 처리부서에서 접수하면 종결처리후 주관부서로 통보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Q54. 정보공개처리시 원본대조필을 반드시 찍어야 하는 지

정보공개처리시 원본대조필을 찍어서 교부하는데 원본대조필의 법적 효력을 알고 싶습니다.

《답 변》

정보공개처리시 본인의 요구가 있으면 원본대조필을 찍도록 하고 있으며, 반드시 찍는 것은 아닙니다. 원본대조필은 그 자료가 행정기관에서 작성한 것이 틀림없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Q55. 수수료 감면은 어떤 경우에 가능한 지

정보공개 수수료에 대한 질문입니다. 수수료 감면신청은 어떤 경우에 하는지요

《답 변》

수수료의 감면은 비영리의 학술·공익단체 또는 법인의 대표자 또는 그 직원이 학술이나 연구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청구한 때, 교수·교사 등이 연구목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소속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아 청구한 때 기타 공공기관의 장이 공공복리의 유지·증진을 위하여 비용감면이 필요한 때 등입니다. 시민단체 등도 공공의 이익을 위한 사항이라면 기관의 장이 결정하여 감면할 수도 있습니다.

Q56. 제3자에게 의견청취하는 방법

재건축현장의 인근주민이 재건축관련 자료를 공개 요청한 경우 제3자의 의견청취가 필요한지와 필요하다면 누구(재건축조합, 시공자)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지, 의견청취방법(구술)으로 전화로도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본인확인은 어떻게 하는지 또한 공개방법으로 직접공개와 우송공개가 있는데 이메일로도 가능한지 이 경우(우송, 이메일 등) 신분확인은 어떻게 해야 하는 지

《답 변》

제3자의 의견청취는 원칙적으로 서면에 의하고 제3자가 원하는 때는 구술에 의하여 의견청취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은 구술내용을 기록하고 본인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제3자는 공개되는 내용에 관계되는 자연인, 법인, 협회, 단체 등이 됩니다. 우송공개는 본인의 확인이 필요없는 경우이고 이메일에 의한 공개는 위·변조방지를 위한 인증제도의 도입 후 확대 가능하리라 생각됩니다.

Q57. 제3자가 다수일 경우 의견청취방법

공공기관은 공개대상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와 관련이 있을 경우 정보공개법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3자가 개인 또는 협회(단체)일 경우에는 의견 청취가 가능하나 다수의 개인 또는 주소가 불분명할 경우의 의견청취방법은

《답 변》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는 사회통념상 송달 받을 자의 주소 등을 통상의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에 제3자의 의견청취방법은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송달 받을 자가 알기 쉽도록 게시판, 관보, 공보, 또는 일간신문 등에 공고하면 될 것 같습니다.

Q58. 읍·면·동에도 정보공개운영과 정보공개심의회 설치가 가능한 지

정보공개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면 공공기관이라 함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기타 대통령이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는 바, 읍·면·동에서 처리한 민원사항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접수시 별도에 자치단체의 조례에 규정이 없는 경우 읍·면·동에서도 처리가 가능한지와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를 위해 정보공개심의회도 설치 운영 가능한지

《답 변》

읍·면·동에서 정보공개를 접수하여도 됩니다. 정보공개심의회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습니다.

Q59. 시유재산과 관련된 정보도 공개 가능한 지

민원인이 시유재산의 소재지, 지목, 용도지역, 면적, 장부가격 등에 대해 사업목적을 위한 정보공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의 의견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8호의 규정에 이하여 공개될 경우 특정인에게 이익(민원인), 불이익(일반인)을 줄 우려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답 변》

시유재산과 관련된 정보의 공개여부는 공개시 구체적으로 특정인에게 돌아갈 이익이 한정되어 있다면 비공개가 가능하리라 판단됩니다.

Q60. 민원서류도 공개할 수 있는 지

어떤 협회에서 건의서를 행정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A가 건의서에 대한 정보공개를 요구한 바, 건의서에 포함되어 있는 개인신상명세서(업체명, 성명, 주소 등)까지도 공개할 수 있는 지

《답 변》

행정기관에서 접수하여 처리한 민원서류는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13조(민원사무의 정보보호)에 "행정기관은 민원사무처리와 관련된 정보에 대하여 민원인의 이익이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으므로 비공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Q61.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과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 법률의 차이점

현행법을 보면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의 경우는 청구인의 본인으로만 한정이 되어 있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의 경우는 청구인이 국민으로 되어 있지만 이를 실제로 적용하려고 하면은 두 가지를 적용해야 하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아서 정립이 잘 안됩니다.

《답 변》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의 적용대상은 공공기관의 컴퓨터에 의해서 처리되는 개인정보이며,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은 수작업에 의하여 처리되는 개인정보와 그밖에 공공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모든 정보를 대상으로 합니다.

Q62. 통장, 이장명단 및 연락처도 개인정보에 해당되는 지

시민단체에서 통장, 이장명단 및 연락처에 관한 정보를 사본공개 요청을 하였습니다. 원칙적으로 개인정보는 비공개로 알고 있고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공개 하여도 되는 지

《답 변》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따라 원칙적으로 비공개대상정보입니다. 다만, 법령 등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열람할 수 있는 정보,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표를 목적으로 하는 정보이거나 공개하는 것이 공익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등은 공개가 가능합니다. 또한, 공무원의 직위, 이름 등 직무와 관련된 사항도 공개 가능하므로 이장, 반장, 통장 등도 공무원에 준한 사항에 대하여는 공개가 가능하리라 판단됩니다.

Q63.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한 정보는 공개 가능한 지

제3자(채권자가 아님)가 채권의 회수 가능성 검토를 목적으로 우리시 소속 직원에 대한 채권압류자 명단을 문서로 조회 의뢰했을 경우 채권압류가 경합(채권자가 다수임)되어 있는 상태에서 채권자중 한사람이 채무자의 채권압류자 명단을 제3채무자가 조회 의뢰하였을 경우

《답 변》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비공개대상입니다. 다만,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 다목에 의하여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공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형의 확정 판결 후 채무자의 재산상황 등에 대하여 공개할 수 있습니다.

Ⅵ. 정보공개 제도 운영지침

목 표 및 추 진 방 향

목 표

❑ 국민의 알권리 증진 및 국정참여 활성화

❑ 투명한 정부, 일 잘하는 정부 구현



추진방향

❑ 이용자 편의에 맞는 정보공개 기반 마련

❑ 국민이 청구하기를 기다리지 않고 먼저 공개

❑ 법령에서 정한 절차를 충실하게 이행

❑ 객관성 있고 투명한 업무처리

중점추진사항

○ 이용자 편의를 우선하는 정보공개 기반 마련

- 충실한 정보목록 제공
- 정보공개 마인드를 확산하기 위한 지속적인 교육·평가

○ 적극적이고 내실있는 사전정보공표

- 중요하고 국민의 관심이 큰 정보를 공표 대상으로 선정
- 열람과 검색이 용이하게 체계적으로 공개

○ 정보공개 업무처리 절차의 준수

- 기간 내에 신속하게 업무처리
- 법에서 정한 절차를 성실하게 이행

○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공정한 업무수행

- 구체적이고 타당성 있는 비공개 사유 제시
- 정보공개심의회 구성 기준을 준수하고 정보공개 업무 수행에 적극적으로 활용

이용자 편의의 제도운영 기반 마련

1. 정보목록의 작성·비치

가. 정보목록의 작성 범위

○ 작성 대상

- 원칙적으로 보유·관리하는 모든 정보(법 §8①)

○ 목록에서 제외할 대상

- 목록 자체에 비공개 대상정보가 포함되어 있을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목록에서 제외

※ 정보의 내용이 비공개 대상이라도 정보목록에는 포함되어야 하며, 문서제목 등 목록 자체가 비공개 대상일 경우에만 제외

정보목록에서 제외될 정보의 유형(예시)

- 정보의 존재 자체가 비밀 사항인 경우
-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의 비위 사실 통보
- 공정한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등
  - ○○에 대한 불시 단속 계획
- 법인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공개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등

국민이 정보공개청구를 하더라도 공개하지 않을 비공개 대상 정보를 정보목록에 포함할 실익이 있는지?

- 정보목록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목록으로 만든 것이므로 그 자체로서도 중요한 정보
- 또한 공공기관이 비공개로 분류하였더라도 이는 최종 결정이 아니며 법원의 판결 등에 따라 공개 대상으로 결정될 수도 있으므로 공공기관이 당연히 비공개로 전제할 수는 없음

○ **접수한 정보의 목록 포함 여부**

- 생산한 정보와 접수한 정보를 모두 목록에 포함하는 것이 원칙
- 다만, 검색의 편의와 업무 처리의 효율성을 위해 접수한 정보 중 동일 기관에서 생산된 정보는 목록에서 제외하여도 무방

○ **비밀기록물의 목록 포함 여부**

- 비밀기록물도 일반 정보와 마찬가지로 목록에 포함하는 것이 원칙

※ 현행 기록물 관리체계상 비밀기록물도 기록물등록대장에 등재하도록 되어 있음

○ **정보의 생산 시점에 따른 목록 포함 범위**

- '05. 7. 30. 이후에 생산된 정보부터 정보목록으로 작성
- 이전에 생산된 정보는 기존에 운영하던 주요문서목록 형태로 작성.비치하되 단계적으로 정보목록에 수록하도록 노력

나. 구성 항목 및 작성 방법

○ **정보목록 구성 항목**

- 단위업무 명칭 : 정보에 해당되는 단위업무명

※ 단위업무명으로 구분하는 것이 부적절할 경우 문서철제목도 가능

- 정보의 제목 : 기록물등록대장상의 제목
- 생산 일자 및 등록번호 : 정보를 생산한 날짜 및 등록번호

- 담당부서 및 담당자 : 정보 생산 부서 및 기안자
- 보존기간 : 정보의 보존기간(기록물철등록부상의 보존기간)
- 공개여부 : 정보를 생산한 당시 설정한 공개 여부

• 예 시 •

생산 일자	번호	단위 업무	제목	담당 부서	담당자	보존 기간	공개 여부
2005. 5. 1.	공개행정팀 -10000	정보공개 제도운영	정보공개 제도운영 지침수립	공개행정팀	홍길동	10년	공개

※ 위 항목을 기본적으로 포함하되, 기재 방식, 세부 내용 등은 필요에 따라 기관의 특성에 맞게 일부 변용 가능

○ 작성 방법

- e-Nala시스템 등 기관별로 사용하는 기록물 DB에서 해당 항목을 추출
- 추출자료를 아래아한글, 엑셀 등 열람이 용이한 형태의 파일로 변환
- 이미 정보목록 시스템을 운영중인 기관은 구성항목 등에 미비 사항이 없는지 확인하여 기존 시스템중 미비한 부분만 보완하여 운영 가능
- 전자결재 시스템 미비 등으로 인해 DB가 존재하지 않는 공공기관은 전자파일 형태의 기록물등록대장과 기록물철등록부로 갈음

■ 통합 정보공개 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면 정보목록을 별도로 작성할 필요가 없이 정보의 생산과 동시에 목록으로 생성됨

- 다만, 전 기관에 시스템이 구축되는 것은 시일이 소요되므로 그 이전까지는 목록을 DB에서 추출하는 수작업을 거쳐야 함

■ 정보를 생산하는 시점에 설정한 공개 여부 등 목록에 관한 제반 정보는 그대로 정보목록에 연결되므로 정보 생산 단계에서부터 매우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함

- 법 시행 이전에 이를 각 부서 직원들에게 철저히 알려야 함

다. 비치 및 관리

○ **정보목록 비치**

- 정보목록 파일은 인터넷 홈페이지 정보공개 메뉴에 게시
- 정보목록의 출력물은 각 기관의 정보공개창구에 비치

○ **정보목록 업데이트**

- 정보목록 파일은 월 1회 이상 업데이트
- 정보목록 출력물은 최소한 분기별 1회 이상 업데이트

정보공개청구가 있을 경우 정보목록에 기재된 공개 구분과 달리 공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지?

- 정보목록에 기재된 공개 구분은 정보 생산 시점에 설정한 것으로 실제 업무 처리시와 시점상의 차이가 존재하므로 사정의 변경이 있을 수 있음
- 정보목록상의 공개 구분은 일반적인 상황에서 보통의 국민들에게 적용될 기준인 반면, 정보공개청구는 특수한 상황에서 특정한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므로 비교형량의 원칙 등이 개입
- 따라서,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정보목록상의 공개 구분대로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나, 특별한 상황 하에서는 공개 여부를 달리 정하는 것이 청구인에게 유리할 수 있음

2. 정보공개창구 조성

가. 정보공개 접수처 마련

○ 국민의 접근성을 고려한 정보공개창구 설치

- 민원실 등 접근이 용이한 장소에 창구를 설치하되, 청사 사정상 별도 창구 마련이 곤란할 경우 전담부서에 창구를 설치
- 청사 입구에서부터 정보공개창구 안내 표지판을 충분히 부착

※ 일부 부서가 별도청사를 사용하거나 특수업무를 수행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정보공개창구를 복수로 설치 가능

○ 비치 자료(정보공개법시행령(이하 "영" 이라 함) §5)

- 정보공개청구 및 처리절차 안내 자료
- 정보공개청구서, 이의신청서, 제3자 의견서 등 법정 서식
- 정보목록, 비공개 세부기준, 정보공개 관련 지침 등 내부규정

○ 정보공개청구 및 정보검색의 편의 제공

- 방문자의 문의 사항 답변 및 애로 사항 해소를 위하여 업무 처리 절차를 숙지하고 있는 직원 배치
- 정보목록 검색, 온라인 정보공개청구 등을 위한 컴퓨터 비치

나. 정보공개 업무분장

○ 정보공개 총괄부서 및 담당인력 지정

- 기관내 민원 담당 부서, 기록물관리 담당 부서, 혁신 담당 부서 등 정보공개와 관련있는 부서를 총괄 부서로 지정
- 기관 특성을 감안하여 정보공개 접수·처리 및 운영 개선 분야로 부서를 이원화하여 운영 가능(예 : 총무과와 혁신기획관실)
- 총괄 부서 내에서 정보공개 업무를 전담하게 하거나 기록물관리·민원 등 유관 업무를 겸직하도록 담당 인력을 배치

○ **총괄부서의 역할**

- 정보공개청구의 접수·배분, 처리현황 관리
- 사전정보공표의 운영, 정보목록의 취합·비치
- 기관내 정보공개 운영에 관한 규정·지침·기준 등의 수립
- 소속 직원 대상 교육 및 각 부서의 운영실태 점검·평가
- 정보공개심의회 구성 및 운영
- 그밖에 정보공개 운영 개선을 위한 업무 수행

3. 정보공개 마인드의 확산

가. 교육 및 평가

○ **소속 직원 대상 정보공개 교육 강화**

- 국민이 느끼는 정보공개 서비스의 수준은 총괄부서가 아닌 각 처리부서의 업무수행 수준과 직결되므로,
- 마인드 확산, 업무처리절차 숙지를 위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
- 학계, 법조계, 시민단체 등 외부전문가를 강사로 적극 활용

○ **소속부서의 업무처리실태 평가 실시**

- 각 부서의 정보공개 업무처리 실태에 대한 평가를 통해 업무처리 절차 준수, 자의적 처리 방지 유도
- 대상 부서 : 전 부서(소속기관, 산하기관, 사업소 등 포함)
- 주요 평가 항목
  - 정보공개 처리기간의 준수, 비공개 사유 및 근거의 구체적 제시, 청구서 이송·제3자 통지·결정기간 연장통지 등 업무운영 전반

나. 제도적 기반 마련

○ **정보공개 관련 조례의 정비**

- 개정 법률에 부합되지 않는 조항의 개정

- 지방자치단체는 정보공개법령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소관사무에 대한 조례를 적극적으로 제정

※ 조례에 포함될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여서는 안됨

○ 정보공개 관련 지침의 정비

- 사전공표의 기준,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 그밖에 정보공개제도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을 지침에 반영
- 실무에 직접 활용할 수 있도록 각 부서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정비하고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보완

적극적·사전적 정보공개 활성화

1. 사전정보공표의 내실있는 운영

가. 공표 대상 정보

○ 공표 대상 정보

- 국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책에 관한 정보
- 국책공사 등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에 관한 정보
- 주요정책의 추진과정에서 생산되는 연구보고서·회의록 또는 시청각 자료 등의 정보
-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
- 국민의 행정감시를 위해 필요한 각종 평가결과·통계자료 등의 정보
- 그밖에 공공기관의 장이 공개하기로 결정한 정보

○ 정보 선정시 유의사항

- 법 §9①에 규정된 비공개 대상정보는 제외

※ 비공개 대상정보가 포함되어 있다고 하여 전면적으로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부분공개할 수 있는 여지가 없는지 고려

- 공표 대상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보의 원본

※ 지출증빙서류와 같이 정보의 양이 방대하거나 산재되어 있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원본대로 공개

- 국민이 실질적으로 관심을 가질 사항을 위주로 선정하고 기관 내부 참고사항, 경미한 사항은 제외
- 지나치게 많은 양을 선정하는 것을 지양하고 기관의 핵심 업무와 관련된 양질의 정보 위주로 선정

나. 공표 방법

○ 공표의 주기 · 시기

-정보의 생산 주기가 일정한 경우 미리 주기를 정함

예)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매월 공개

-정보의 생산 시기가 예측 가능한 경우 미리 시기를 정함

예) ○○계획을 ○월에 공개

-생산 주기 · 시기가 일정치 않고 생산 시점의 예측이 불가능한 경우 정보 생산 시점으로부터 최대한 빠른 시일 내 공개하도록 정함

※ 공표의 주기 · 시기는 기관의 사정에 맞게 합리적으로 정하되 최신 정보를 신속하게 공개하도록 정해야 함

○ 공표 방법

-각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전자파일로 공개

-정보는 위 · 변조 우려가 있는 경우 관인 · 서명을 제외하고 원본대로 공개하는 것이 원칙이나 청구인의 열람 편의 등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만 부분적으로 가공하여 공개

-전자파일 형태로 공개하기 곤란한 경우 출력물을 자료관, 민원실 등의 정보공개창구에 비치

사전공표된 정보에 대하여 정보공개 청구한 경우

• 청구인에게 정보의 열람 방법에 대하여 알려주는 것으로 충분하나, 청구인이 이에 만족하지 않고 정보 교부를 원할 경우 정보공개청구 처리절차에 따라 정식으로 공개

○ 공표 기준의 사전 고시

- 공표 대상 정보의 범위, 공개 주기·시기, 공개 방법 등을 사전에 정하여 지침 등에 수록하고 이를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고시
- 고시된 내용에 따라 사전정보공표 실시
- 공표하기로 미리 고시하지 않은 사항이라도 국민에게 미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사항은 적극적으로 공개 실시

공표 방식 구분을 통한 검색 편의 강화

- 중요 정보와 단순·경미한 정보를 구별하지 않고 획일적으로 공개할 경우 국민의 입장에서는 정보의 홍수에 매몰되어 관심있는 정보를 모르고 지나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음
-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정보의 중요도에 따라 공표 방식을 구분하여 검색의 편의를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함

• 예 시 •

- 중요도가 높고 테마별로 일련의 흐름에 따라 진행되는 정보
  ⇒ 별도 메뉴를 구성하여 체계적으로 공개
- 중요도가 높고 개별적인 사안으로서의 성격이 큰 정보
  ⇒ 사전정보공표 대상
- 중요도가 낮으며 단순·경미·행정 내부 사항
  ⇒ 별도로 공개하지 않고 정보목록에만 포함

2. 이용자 편의에 기반한 홈페이지 구성

가. 홈페이지 구성 기본 방향

○ 별도의 정보공개 메뉴 개설

- 각종 자료실, 질의·응답 게시판 등과 별도로 정보공개방 설치
- 민원·참여 등 관련 메뉴의 하위 메뉴로 설치하는 것은 지양

○ 정보공개 메뉴에 대한 편리한 접근

- 홈페이지 메인 화면에 정보공개 메뉴를 배치하여 누구나 쉽게 접속할 수 있도록 함

○ 메뉴 구성의 통일성 유지

- 기관별로 개별적인 메뉴 구성으로 인한 혼동을 방지하기 위하여 가급적 아래의 권고안에 따라 메뉴를 구성

상위 메뉴	하위 메뉴	내용
정보공개	정보공개제도 안내	정보공개 절차, 청구 방법 등 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 안내
	사전정보공표	법 §7①에 따른 사전 정보 공표 관련 사항
	정보목록	법 §8①에 따른 정보목록
	정보공개청구	정보공개청구, 결정통지 확인

○ 인터넷 정보공개 시스템(열린정부 대국민창구)에 링크

- 각 기관의 홈페이지에서 전자정부 인터넷 정보공개 시스템에 링크하여 국민들의 편리한 접근을 보장

나. 메뉴 구성 요소

○ 정보공개제도 안내

- 정보공개청구 방법, 처리 절차, 수수료, 불복절차 등 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의 안내
- 정보공개법령, 정보공개청구서 · 이의신청서 등 각종 서식, 지침, 정보공개 편람, 비공개 세부기준 게시

○ 사전정보공표

- 사전공표 대상 정보의 범위, 주기 · 시기, 방법 제시

- 하위 메뉴를 개설하여 정보를 게시하거나 공표 대상 정보의 목록을 게시하고 목록 선택시 실제 정보가 게시되어 있는 페이지로 링크
- 정보검색 및 열람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정보를 카테고리화 하여 체계적으로 분류

○ **정보목록**

- 기관별로 작성한 정보목록 파일을 게시
- 정보목록 파일은 수시로 업데이트

○ **정보공개청구**

- 실제로 정보공개를 청구하고 진행 상황 및 결정통지를 확인할 수있도록 전자정부 인터넷 정보공개 시스템으로 링크하는 메뉴
- 전자정부 서비스를 활용할 수 없는 기관은 자체적인 정보공개 처리 시스템 설치

업무 처리 절차의 충실한 이행

1. 결정통지 절차 준수

가. 정보공개 업무처리 기간

○ 공개 여부 결정 기간

-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 결정
- 10일 이내 결정이 곤란한 경우 기간 만료일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1회 연장 가능(법 §11②)

○ 결정 기간의 기산점

- 직접 방문 청구시 : 청구서를 제출한 날
- 우편 또는 팩스로 청구시 : 청구서가 기관에 도착한 날
- 인터넷으로 청구시 : 청구서가 시스템상에 입력된 날

※ 정보공개를 실제 접수한 날이 기산점이 아님을 유의

○ 초일과 공휴일의 산입 문제

-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3③에 의거 초일을 산입하고 공휴일은 산입하지 않음

※ 휴무 토요일은 공휴일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처리 기간에 산입

기한을 채워서 처리하기보다는 만료일 이전에라도 미리 처리할 수 있는 사안은 최대한 신속히 결정통지

○ 이의신청의 결정 기간

-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결정
- 7일 이내의 범위에서 1차 연장 가능
- 기타 산정 방법은 정보공개 결정통지의 경우와 동일

나. 정보공개청구의 이송

○ 이송 대상

- 해당 기관에서 보유·관리하지 않는 정보를 공개청구한 경우로서, 정보를 보유·관리하는 기관을 객관적으로 알 수 있는 경우
- 청구를 받기 전에 소관기관을 알려줄 수 있는 경우(직접 방문에 의한 청구 등)는 미리 소관기관을 안내하여 불필요한 이송을 방지

※ 다른 기관에서 생산한 정보라도 직무상 취득·관리하고 있는 경우 업무처리의 책임은 공개청구를 받은 기관에게 있으므로 정보공개청구가 있을 경우 원래 생산기관으로 이송하지 말고 당해 기관에서 처리하되 원래 생산기관의 의견을 들어 공개 여부를 결정

이송과 비공개 결정

-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지 않다고 하여 바로 비공개 결정을 하여서는 안되며, 소관기관을 파악하기 위한 기본적인 노력을 하여 소관기관이 있을 경우 반드시 이송하고 소관기관을 파악할 수 없을 경우에만 비공개 결정

○ 이송 방법

- 지체없이 소관 기관으로 이송하고 소관 기관 및 이송 사유, 이송 일시를 청구인에게 문서로 통지

○ 이송으로 인한 처리 지연 방지

- 이송된 정보공개청구는 최대한 신속히 우선적으로 처리하여 가급적 최초 청구 시점으로부터 10일 이내 공개 여부가 결정 되도록 노력

○ 이송의 한계

- 소관기관이 복수인 경우 각각의 기관마다 이송하여야 하며, 이송할 대상기관이 너무 많아 이송 자체가 큰 업무 부담을 유발하는 경우 이송을 생략하고 소관기관을 안내하는 것만으로 갈음

예) 전국 시·군·구에서 각각 처리할 사항을 한 기관에 청구한 경우

- 청구인이 소관기관을 알고 있고 소관기관에 청구하지 못할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서 비용과 시간을 절약할 목적 등으로 청구한 것이 명백한 경우 소관기관에 청구하도록 안내하는 것만으로 갈음

다. 관계인에 대한 통지 및 의견청취

○ 제3자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사실 통지(법 §11③)

- 공개 청구된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와 관련있을 경우 정보공개청구 사실을 제3자에게 지체없이 통지

- 정보가 공개(부분공개 포함) 대상이라고 판단할 경우에만 제3자에게 통지하며, 비공개 대상일 경우 제3자에게 통지할 필요가 없음

- 비공개로 판단하여 제3자에게 통지하지 않았으나 해당 결정에 대하여 청구인으로부터 불복이 제기된 경우에는 제3자에게 통지

제3자에 대한 통지 내용

- 정보공개청구 접수 일자, 접수 번호, 청구인 성명, 공개 대상 정보의 구체적 내용, 의견 제출 방법 및 기한, 관계 법령(법 §9① 등)

제3자에 대한 통지와 청구인 프라이버시 보호

- 청구인의 신상을 제3자에게 통지하는 것은 청구인의 프라이버시 침해 우려가 다소 있는 것이 사실이나, 제3자의 입장에서도 청구인의 기본적인 신상은 알아야 할 필요성이 있음
- 따라서, 청구인의 성명, 주소(상세 지번은 제외) 정도는 제3자에게 알려주되, 이와 같은 사항이 제3자에게 통지된다는 점을 청구인에게도 알려줌

○ 제3자의 의견청취

- 제3자는 정보공개청구의 처리와 관련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의견을 제출할 수 있음

- 의견 제출은 정보공개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함) 별지 제5호 서식(제3자 의견서)에 의하거나 구술에 의하여 의견을 제출할 경우 별지 제6호 서식(제3자 의견청취서)에 의할 수 있음

※ 구술에 의한 의견제출은 담당자의 면전에서 하고 서명 또는 날인

- 공공기관은 제3자 의견에 기속되는 것은 아니며 제3자의 의견만을 근거로 비공개하여서는 안됨(공개 여부는 법 §9①을 근거로 결정하여야 함)

제3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개하는 경우

- 제3자가 비공개 요청을 하였는데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이 정보를 공개하기로 결정한 경우 공개 결정일과 공개 실시일 사이에 최소한 30일의 간격을 두어야 함(법 §21③)
- 제3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개하는 경우 제3자는 불복을 제기할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은 많은 기일이 소요되며, 불복처리 기간중에 정보가 공개될 경우 제3자로서는 불복처리결과와 관계없이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을 수 있음
- 따라서 공개 결정일과 공개 실시일 사이에 충분한 기간을 둠으로써 제3자는 불복제기와 병행하여 집행정지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정보 생산 공공기관의 의견 청취(영 §9)**

- 다른 기관에서 생산한 정보에 대하여 공개청구가 있을 경우 정보 생산 기관의 의견을 들어 공개 여부를 결정
- 공개 여부의 결정은 당해 공공기관의 책임이며 정보 생산 기관의 의견에 기속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 의견을 존중하여 공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처리 방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기관간 충분한 협의를 통해 의견을 조정하도록 노력

라. 정보공개 여부 결정통지

○ **비공개 사유 및 근거의 구체적 제시**

- 정보 비공개 처분의 근거가 되는 정보공개법 및 개별 법령의 조항 및 조문을 구체적으로 적시

※ 법 §9① 해당되는 호까지 제시하여야 함

- 정보가 어떤 사유로 인해 비공개 대상정보에 해당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

○ **불복절차에 대한 고지**

- 정보공개 관련 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사실과 불복절차를 안내

※ 규칙 별지 제7호 서식 "정보공개 결정통지서"의 뒤쪽에 불복절차에 관한 안내가 명시되어 있으므로 별도로 작성할 필요가 없이 해당 서식을 통지하는 것으로 충분

○ 제3자에 대한 통지

- 제3자의 비공개 요청에도 불구하고 공개결정을 하는 경우 공개 결정 이유와 공개 실시일을 명시하여 제3자에게 문서로 통지
- 불복절차를 제기할 수 있다는 사실과 그 절차를 안내하고, 집행정지 신청을 병행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안내

○ 부존재의 처리

- 공개할 정보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비공개로 결정통지
- 청구인이 요청한 명칭의 정보와 정확히 일치하는 정보가 없다고 하여 무조건 비공개할 것이 아니라, 청구 취지를 합리적으로 고려하여 청구인의 의도에 부합되는 정보가 있는지 적극적으로 확인

부존재를 비공개로 취급하는 이유

- 청구인의 입장에서는 원하는 정보를 공개받지 못할 경우 그 사유를 막론하고 비공개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으며 정보 부존재라는 공공기관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을 수 있음
- 공공기관이 지니는 정보공개의무에는 적극적인 정보공개뿐만 아니라 정보의 보존·관리 및 검색을 충실히 할 의무, 정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까지도 포함된다고 할 수 있음
- 따라서, 정보 부존재의 경우라도 비공개결정으로 취급하도록 하는 것이 공공기관의 성실한 정보공개를 이끌어낼 수 있음
- 현행 법률에서 부존재를 비공개로 처리한다는 명시적인 근거규정은 두고 있지 않으나 법 제정 당시부터 위와 같은 취지를 고려하여 "공개/부분공개/비공개 결정"이외에 "정보 부존재"라는 결정 유형을 별도로 두지 않은 것임

○ 정보공개청구를 민원으로 이첩 처리

- 정보 취득 목적이 아닌 진정·질의·건의 등 민원 성격의 정보공개 청구로서 정보공개 처리절차에 의하는 것이 청구인에게 실익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이 명백한 경우 정보공개청구를 민원으로 이첩하여 일반 민원사무 처리절차에 따라 처리

○ 반복 청구의 처리

- 정당한 사유 없는 반복 청구의 경우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22①을 준용하여 종결처리할 수 있으나,
- 정보공개청구는 일반 민원사무와는 다른 성격이 존재하므로 신중하게 판단하여 종결처리하여야 함

2. 적극적인 공개 실시

가. 공개 일시

○ 공개 일시의 결정(영 §12①)

- 공개를 결정한 날부터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공개 일시를 정하되, 청구인이 요청할 경우는 달리 정할 수 있음
- 일시를 정확하게 지정하기 곤란한 경우 공개 기간을 적절히 설정

○ 정보의 양이 과다할 경우의 공개 일시(법 §13②)

- 정보의 양이 과다하여 정상적인 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을 경우 사본·복제물을 일정 기간별로 나누어 교부하거나 열람과 병행하여 교부
- 이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개를 결정한 날부터 2월 이내에 교부를 완료하여야 함

○ 공개 일시 경과시의 종결처리(영 §12③)

- 결정통지시 지정한 공개일 후 10일이 경과할 때까지 청구인이 정보공개에 응하지 않을 경우 내부적으로 종결처리할 수 있음
- 다만, 기간이 경과하면 전면적으로 종결처리하기보다는 정보공개에 따른 업무부담이 경미할 경우 기간 경과 후라도 청구인이 요청할 경우 가급적 공개하는 것이 바람직

나. 즉시 공개

○ 즉시 공개 요건(법 §16)

- 법령 등에 의해 공개를 목적으로 작성된 정보
- 일반국민에게 널리 알리기 위해 작성된 각종 홍보자료
- 공개하기로 결정된 정보로서 공개에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는 정보
- 그밖에 공공기관의 장이 정하는 정보

※ 공개 여부를 별도로 판단할 필요가 없고 청구인에게 바로 정보를 교부할 수 있는 경우임(일반적으로 청구인이 직접 방문하여 청구한 경우에 해당됨)

○ 즉시 공개 처리 방법

- 별도로 정보공개 결정통지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지 않고 청구인에게 정보를 즉시 제공
- 청구인에게 정보 수령증에 서명하도록 한 후 이를 정보공개 청구서와 함께 편철하여 보관
- 정보공개 처리대장 기재, 정보공개 수수료 징수는 일반적인 정보 공개청구의 경우와 동일하게 처리

생산 시점에 공개로 분류된 정보는 즉시공개 대상인지?

- 정보 생산 시점에서 공개로 설정한 것은 일반적인 경우의 처리 기준이며 특정 시점에서 특정인에게 공개할 때 공개 여부를 재차 판단할 필요가 없이 즉시 공개한다는 취지는 아님
- 따라서, 공개로 분류되어 있다고 하여 즉시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며 사안별로 정보의 성격을 검토하여 즉시공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함

다. 정보공개 방법

○ 공개 방법의 결정

- 원칙적으로 청구인이 요청한 방식대로 공개 방법을 정함
- 청구인이 요청한 방식대로 공개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공개 방법을 달리 정할 수 있음

※ 정상적인 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당해 정보의 성질이 훼손될 우려가 명백한 경우

○ 열람에 의한 공개

- 열람 장소를 확보한 후 청구인에게 정보를 제공
- 특별히 곤란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메모와 촬영 허용
- 부분공개 대상인 경우 비공개 사항을 열람하지 않도록 유의

○ 사본·복제물 교부에 의한 공개

- 복사물, 출력물, 인화물 등의 형태로 청구인에게 제공
- 공공기관은 사본·복제물 제작을 위한 기본적인 설비를 구비
- 원칙적으로 열람의 방법으로 공개할 수 있는 정보는 사본·복제물 교부 방식으로도 공개할 수 있어야 함

○ **전자파일 형태의 공개**

- 저장매체(디스켓, CD롬 등)에 저장하여 제공하거나 전자우편 등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개
- 전자파일 형태가 아닌 정보라도 정상적인 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정보의 성질이 훼손될 우려가 없는 한 청구인의 요청에 따라 전자파일 형태로 변환하여 공개

※ 전면적인 전자파일 작성 작업까지를 포함하는 것은 아니며, 정보공개 수수료 절약 등의 목적으로 전자파일의 용량을 인위적으로 줄이는 것은 적절치 않음

- 공문서에 포함된 관인·서명은 위·변조의 우려가 있는 경우 문서파일에서 제외하고 공개

※ 청구인이 관인·서명이 포함된 형태로 공개할 것을 요청할 경우 서면으로 공개

정보의 가공 공개의 허용 문제

- 정보공개는 정보를 있는 그대로 열람하게 하거나 사본 등의 형태로 교부하는 것으로서, 정보를 가공하여 제공하는 것은 정보공개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음
- 공공기관은 고도의 가공 과정을 거치면서까지 청구인이 원하는 형태로 정보를 만들어서 제공할 의무는 없음. 청구 목적에 부합되는 정보가 있을 경우 이를 있는 그대로 제공하고 이후의 작업은 청구인 자신이 진행하도록 하고, 부합되는 정보가 없을 경우 비공개하거나 민원으로 이첩하여 처리
- 그러나 여러 종류의 정보가 복합되어 있거나 여러 부서로부터 취합하여 공개하는 경우 등 정보를 있는 그대로 공개하는 것이 오히려 큰 업무부담을 유발하는 경우로서, 청구인도 정보의 가공에 동의한다면 부분적으로 정보의 가공 공개도 허용된다고 볼 수 있음

라. 본인 확인

○ **본인 확인의 시점**

- 청구인 본인 또는 정당한 대리인임의 확인은 정보공개 시점에서 실시

※ 청구 시점에서부터 본인 확인을 실시할 필요는 없음

○ **본인 확인의 필요성 판단**

- 청구인이 누구냐에 상관없이 널리 공개할 수 있는 정보는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으며, 특정인에게 국한하여 공개할 수 있는 정보인 경우에 본인 확인을 실시

예) 갑이 본인의 개인정보 관련 사항을 공개청구한 경우 공개 실시를 위해서 갑 본인임을 확인

○ **본인 확인 방법(영 §15②)**

- 청구인 본인에게 공개시 청구인의 신분증명서
- 청구인의 법정대리인에게 공개시 법정대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대리인의 신분증명서
- 청구인의 임의대리인에게 공개시 위임장(규칙 별지 제8호 서식), 청구인 및 수임인의 신분증명서

○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개하는 경우의 본인 확인(영 §15③)**

- 전자서명 등을 통해 신원을 확인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시스템을 구비하여야 함
- 시스템 미비시 청구인 또는 대리인을 방문하도록 하여 본인 확인

마. 수수료 산정 및 징수

○ **수수료 징수 취지**

- 정보공개는 특정인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사무이므로 이에 대한 경비는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정보를 제공받은 자가 부담

- 수수료 금액은 공개에 소요되는 비용과 수익자의 이익을 감안한 최소 금액으로 정한 것이며 수수료 징수를 통해 정보공개 서비스 이용을 억제하고자 하는 목적이 아님

○ **수수료 산정(영 §17①)**

-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행정기관은 규칙 별표 기준에 따라 산정
-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산정

○ **전자적 형태로 공개시의 수수료 경감**

- 전자파일로 공개하는 경우로서 업무부담이 경미한 때에는 수수료를 경감하여 정할 수 있음
- 경감 범위는 산정된 수수료에서 대략 30~50% 수준으로 정하되, A4 용지 기준 10매 이하의 간단한 정보의 경우 면제할 수 있음

업무부담이 경미한 경우란?

- 파일 용량이 크지 않아 전송·복사 등이 쉽게 이루어지는 경우
- 공개 대상 정보가 여러 개의 파일로 나누어져 있지 않은 경우
- 정보가 부분공개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별도로 편집할 필요가 없이 그대로 공개가 가능한 경우
- 그밖에 추가적인 업무부담을 유발하는 사유가 없는 경우

○ **수수료 감면(법 §17② 영 §17③)**

- 비영리의 학술·공익단체, 법인이 학술, 연구, 행정감시 목적으로 청구한 경우

※ 비영리의 학술·공익단체, 법인이 청구한 경우라고 하여 항상 감면하는 것은 아니며 정보의 사용 목적이 공익에 부합되어야 함

- 교수, 교사, 학생이 교육 자료나 연구 목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소속 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아 청구한 경우
- 그밖에 공공복리의 유지·증진을 위해 감면이 필요한 경우

※ 수수료 감면 비율은 대략 30~50%정도 수준에서 공공기관의 장이 정하고 기관 홈페이지에 감면 기준 및 비율을 공표

수수료 감면의 소명 자료

- 수수료 감면을 신청하는 때에는 감면 사유에 대한 소명 자료를 첨부하도록 정하고 있음(영 §17④)
- 어떤 자료를 소명 자료로 첨부하여야 할지는 개별 사안을 정형화할 수 없어 구체적으로 열거하기 곤란하며 공익상 필요하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함

(예시) 학술·연구 등의 계획서, 단체·법인 대표자의 확인서, 대학교 총장·학교장의 확인서 등

○ 수수료 납부 방법(영 §17⑥)

- 정부기관은 수입인지, 지방자치단체는 수입증지, 정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공공기관은 현금으로 납부
- 수입인지 및 수입증지는 공공기관에서 보관하고 현금은 세입 처리
- 통합정보공개시스템에서는 전자화폐·전자결제 등 전자적인 방법으로 수수료를 납부할 수 있으나, 다만 전자적인 입금의 경우는 입금 확인시까지 약 2주일이 소요되므로 신속한 처리를 위해서는계좌입금 활용

3. 정보공개심의회 운영

가. 정보공개심의회 구성

○ **심의회 설치가 의무화된 기관(법 §12)**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시·도교육청
- 「정부투자기관 관리 기본법」 §2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 업무 성격, 업무량 등을 감안하여 본부 또는 소속기관에 복수로 설치할 수 있음

○ **심의회 설치가 의무화되지 않은 기관**

- 각급학교, 지방공사·공단, 특별법에 의한 특수법인, 사회복지법인 등 영 §2 규정에 의한 공공기관
- 법률상 심의회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지 않으므로, 해당 기관의 장이 공개 여부 및 이의신청에 대해 결정하게 됨
- 다만, 정보공개 업무를 공정하게 수행하기 위해 가급적 심의회를 설치·운영하거나 이와 유사한 위원회를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

○ **외부전문가의 위촉(법 §12③)**

- 심의회의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의 1/2은 당해 기관의 업무 또는 정보공개 업무에 관한 지식을 가진 외부전문가로 위촉
- 법 §9① 제2호(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 및 제4호(재판·수사·검찰·행형 등) 해당 사항을 주된 업무로 수행하는 국가기관은 외부전문가를 최소한 1인 이상 위촉

※ 외부전문가 위촉 취지는 국민의 입장에서 공공기관의 이해와 독립하여 정보공개에 관한 판단을 하도록 한 것으로, 공공기관과 밀접한 관계에 있거나 영향력 범위에 있는 인사는 배제하는 것이 바람직

외부전문가 위촉시 배제 대상

- 당해 기관 및 소속·산하 기관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은 해당되지 않으며, 전직 직원이라도 가급적 배제
- 공무원의 경우 다른 기관에 근무하는 경우라도 배제
-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의원, 해당 교육청의 교육위원
- 직접적인 업무 감독, 관할 등의 관계에 있는 기관(유관 기관, 협회 등)의 임직원

※ 외부전문가의 요건을 일률적으로 정할 수는 없으나, 논란의 소지가 있는 경우에는 가급적 위촉 대상에서 제외

나. 정보공개심의회 운영

○ **심의회의 심의 대상(영 §11②)**

- 공개청구된 정보의 공개 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
- 청구인 또는 제3자의 이의신청
- 그밖에 정보공개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 **심의회 개최 여부 판단**

- 일반적인 정보공개청구의 처리는 각 부서의 소관이며, 공개 여부를 판단하기 곤란한 경우에만 심의회를 개최
-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은 심의회를 통할 실익이 없음이 명백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심의회를 거쳐야 함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제도 운영 개선 등을 위한 사항의 논의를 위해 심의회를 적극적으로 개최

심의회를 거칠 실익이 없는 이의신청(예시)

- 공개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결정통지 전의 이의신청, 기간이 도과한 이의신청 등 형식적인 요건이 결여된 이의신청
- 질의·진정·건의 등 민원 성격의 이의신청 또는 정보가 존재하지 않는 것이 명백한 사안으로서 공개 여부에 대한 판단 자체가 곤란한 이의신청
- 공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심의회에서 이미 심의한 사항으로서, 이후 특별한 사정의 변경이 없는 경우의 이의신청
- 심의회를 통해 결정한 사항에 대한 제3자의 이의신청으로서, 당초의 결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의 변경 또는 근거의 제시가 없는 경우의 이의신청
- 일상적이고 반복적인 사항으로서 개별 사안별로 판단할 실익이 없음이 명백하고 동일한 유형에 대한 처리 방안을 심의회에서 이미 결정한 경우의 이의신청

○ 심의회 소집·운영

- 총괄부서 또는 처리부서에서 회의 소집 및 운영
- 회의록을 충실히 작성
- 서면 회의는 지양하되, 사안이 단순하고 심도있는 토론이 불필요한 경우 서면심의를 적절히 활용

※ 심의회 운영은 기관의 사정을 합리적으로 고려하여 총괄 부서 또는 처리 부서에서 담당하며 부서 간에 유기적으로 협조하여 운영

○ 정보공개심의회 결과 조치

- 심의회의 결정 사항을 청구인에게 통지
- 처분권자는 공공기관의 장이므로 심의회 명의가 아니라 공공기관장 명의로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함

- 이의신청을 각하 또는 기각하는 결정을 하는 때에는 결정 이유, 불복 방법, 불복 절차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함(영 §18③)
- 제3자의 비공개 요청에도 불구하고 공개하는 경우 제3자에게도 결정 내용을 통지

심의회의 결정 사항과 달리 조치할 수 있는지 여부

- 정보공개에 관한 처분권자는 공공기관의 장이며 법에서 심의회 결정 사항의 기속력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공공기관의 장이 심의회 결정 사항과 달리 조치할 수 있다고 볼 수도 있으나,
- 정보공개심의회는 단순한 자문기구의 성격이 아니라 정보공개 여부 등을 심의하기 위해 각 공공기관에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한 것이며, 공정한 심의를 위해서 외부전문가를 과반수 위촉하도록 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심의회의 결정 사항과 달리 조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Ⅶ. 정보공개관련 법령

1.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전문개정 2004. 1. 29 법률 제07127호]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국민의 공개청구 및 공공기관의 공개의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정보"라 함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
2. "공개"라 함은 공공기관이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복제물을 교부하는 것 또는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통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것 등을 말한다.
3. "공공기관"이라 함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3조 (정보공개의 원칙)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제4조 (적용범위) ①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사무에 관하여 법령의 범위안에서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를 정할 수 있다.

③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정보 및 보안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에서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정보분석을 목적으로 수집되거나 작성된 정보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 목록의 작성·비치 및 공개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장 정보공개청구권자와 공공기관의 의무

제5조 (정보공개청구권자) ①모든 국민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②외국인의 정보공개청구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 (공공기관의 의무) ①공공기관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국민의 권리가 존중될 수 있도록 이 법을 운영하고 소관 관련법령을 정비하여야 한다.

②공공기관은 정보의 적절한 보존과 신속한 검색이 이루어지도록 정보 관리체계를 정비하고, 정보공개업무를 주관하는 부서 및 담당하는 인력을 적정하게 두어야 하며,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구축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 (행정정보의 공표 등) ①공공기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하여는 공개의 구체적 범위, 공개의 주기·시기 및 방법 등을 미리 정하여 공표하고, 이에 따라 정기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제9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정보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민생활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에 관한 정보
2. 국가의 시책으로 시행하는 공사(工事) 등 대규모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에 관한 정보
3. 예산집행의 내용과 사업평가 결과 등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
4. 그 밖에 공공기관의 장이 정하는 정보

②공공기관은 제1항에 규정된 사항외에도 국민이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 (정보목록의 작성·비치 등) ①공공기관은 당해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하여 국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정보목록을 작성·비치하고, 그 목록을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목록중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는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당해 부분을 비치 및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공공기관은 정보의 공개에 관한 사무를 신속하고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정보공개장소를 확보하고 공개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제3장 정보공개의 절차

제9조 (비공개대상정보) ①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하여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대통령령 및 조례에 한한다)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2.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3.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4. 진행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5.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 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6.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

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

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정보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

마.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써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직업

7.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정보를 제외한다.

가.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나.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8.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②공공기관은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정보가 기간의 경과 등으로 인하여 비공개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에는 당해 정보를 공개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제10조 (정보공개의 청구방법) ①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자(이하 "청구인"이라 한다)는 당해 정보를 보유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정보공개청구서를 제출하거나 구술로써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

1. 청구인의 이름·주민등록번호·주소 및 연락처(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 등을 말한다)

2. 공개를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 및 공개방법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술로써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때에는 담당공무원 또는 담당임·직원(이하 "담당공무원등"이라 한다)의 면전에서 진술하여야 하고, 담당공무원등은 정보공개청구 조서를 작성하고 이에 청구인과 함께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③정보공개의 청구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 (정보공개여부의 결정) ①공공기관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공개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공공기관은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에 규정된 기간 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공개여부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기관은 연장된 사실과 연장사유를 청구인에게 지체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공공기관은 공개청구된 공개대상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사실을 제3자에게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그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④공공기관은 다른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의 공개청구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소관기관으로 이송하여야 하며, 이송을 한 공공기관은 지체없이 소관기관 및 이송사유 등을 명시하여 청구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⑤정보공개를 청구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공공기관이 공개여부를 결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본다.

제12조 (정보공개심의회) ①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정보공개여부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②심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인 내지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심의회의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은 소속공무원, 임·직원 또는 외부 전문가로 지명 또는 위촉하되, 그 중 2분의 1은 당해 국가기관등의 업무 또는 정보공개의 업무에 관한 지식을 가진 외부전문가로 위촉하여야 한다. 다만, 제9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주로 하는 국가기관은 당해 국가기관의 장이 외부전문가의 위촉비율을 별도로 정하되, 최소한 1인 이상은 위촉하여야 한다.

④심의회의 위원장은 제3항에 규정된 위원과 같은 자격을 가진 자 중에서 국가기관등의 장이 지명 또는 위촉한다.

⑤제23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은 심의회의 위원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⑥심의회의 운영 및 기능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 (정보공개여부결정의 통지) ①공공기관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의 공개를 결정한 때에는 공개일시·공개장소 등을 명시하여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공공기관은 공개대상정보의 양이 과다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정보의 사본·복제물을 일정 기간별로 나누어 교부하거나 열람과 병행하여 교부할 수 있다.

③공공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를 공개함에 있어 당해 정보의 원본이 오손 또는 파손될 우려가 있거나 그 밖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당해 정보의 사본·복제물을 공개할 수 있다.

④공공기관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의 비공개결정을 한 때에는 그 사실을 청구인에게 지체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공개 이유·불복방법 및 불복절차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제14조 (부분공개) 공개청구한 정보가 제9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분과 공개가 가능한 부분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로서 공개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두 부분을 분리할 수 있는 때에는 제9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제15조 (정보의 전자적 공개) ①공공기관은 전자적 형태로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하여 청구인이 전자적 형태로 공개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당해 정보의 성질상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청구인의 요청에 응하여야 한다.

②공공기관은 전자적 형태로 보유·관리하지 아니하는 정보에 대하여 청구인이 전자적 형태로 공개하여 줄 것을 요청한 경우에는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당해 정보의 성질이 훼손될 우려가 없는 한 그 정보를 전자적 형태로 변환하여 공개할 수 있다.

③정보의 전자적 형태의 공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 (즉시처리가 가능한 정보의 공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정보로서 즉시 또는 구술처리가 가능한 정보에 대하여는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1. 법령 등에 의하여 공개를 목적으로 작성된 정보
2. 일반국민에게 알리기 위하여 작성된 각종 홍보자료
3. 공개하기로 결정된 정보로서 공개에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아니하는 정보
4. 그 밖에 공공기관의 장이 정하는 정보

제17조 (비용부담) ①정보의 공개 및 우송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실비의 범위 안에서 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②공개를 청구하는 정보의 사용목적이 공공복리의 유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을 감면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 및 징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장 불복구제절차

제18조 (이의신청) ①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공공기관으로부터 정보 공개

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제1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당해 공공기관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하고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지체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정해진 기간이내에 결정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7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사유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각하 또는 기각하는 결정을 한 때에는 청구인에게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취지를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과통지와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

제19조 (행정심판) ①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외의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한 재결청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한다.

②청구인은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③행정심판위원회의 위원중 정보공개여부결정에 관한 행정심판에 관여하는 위원은 재직중은 물론 퇴직후에도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 하여서는 아니된다.

④제3항의 위원은 형법 그 밖의 법률의 벌칙적용에 있어서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제20조 (행정소송) ①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②재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당사자를 참여시키지 아니하고 제출된 공개청구정보를 비공개로 열람·심사할 수 있다.

③재판장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제9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중 국가안전보장·국방 또는 외교에 관한 정보의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 결정처분인 경우에 공공기관이 그 정보에 대한 비밀지정의 절차, 비밀의 등급·종류 및 성질과 이를 비밀로 취급하게 된 실질적인 이유 및 공개를 하지 아니하는 사유 등을 입증하는 때에는 당해 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다.

제21조 (제3자의 비공개요청 등) ①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청구된사실을 통지받은 제3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당해 공공기관에 대하여 자신과 관련된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공개요청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이 공개결정을 하는 때에는 공개결정이유와 공개실시일을 명시하여 지체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하며, 제3자는 당해 공공기관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하거나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의신청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공공기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개결정일과 공개실시일의 사이에 최소한 30일의 간격을 두어야 한다.

제5장 정보공개위원회 등

제22조 (정보공개위원회의 설치)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대통령소속하에 정보공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정보공개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2. 정보공개에 관한 기준수립에 관한 사항
3. 제24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운영실태 평가 및 그 결과처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정보공개에 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제23조 (위원회의 구성 등) ①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9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가 된다. 이 경우 위원장을 포함한 5인은

공무원이 아닌 자로 위촉하여야 한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계부처의 차관급 또는 1급 공무원
2. 정보공개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대통령이 위촉하는 자
3.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자로서 대통령이 위촉하는 자

③위원장·부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④위원장·부위원장 및 위원은 정보공개업무와 관련하여 알게된 정보를 누설하거나 그 정보를 이용하여 본인 또는 타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⑤위원장·부위원장 및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자는 형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한 벌칙적용에 있어서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⑥위원회의 구성 및 의결절차 등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4조 (제도총괄 등) ①행정자치부장관은 이 법에 의한 정보공개제도의 정책수립 및 제도개선사항 등에 관한 기획·총괄업무를 관장한다.

②행정자치부장관은 위원회가 정보공개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경우에는 공공기관(국회·법원·헌법재판소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제외한다)에 대하여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실태를 평가할 수 있다.

③행정자치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위원회를 거쳐 국무회의에 보고한 후 이를 공개하여야 하며, 위원회가 개선이 필요하다고 권고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공공기관에 시정요구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5조 (자료의 제출요구) 국회사무총장·법원행정처장·헌법재판소사무장·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및 행정자치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공공기관에 대하여 정보공개에 관한 자료의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26조 (국회에의 보고) ①행정자치부장관은 전년도의 정보공개 운영에 관한 보고서를 매년 정기국회 개회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서 작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7조 (위임규정) 이 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제7127호,2004.1.29〉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 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후 1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위원회 설치준비)** 행정자치부장관은 이 법 시행전에 제22조 및 제23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위원선임 등 위원회 설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무를 처리할 수 있다.

③**(정보공개여부 결정기간 등의 단축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정보공개청구가 있는 것부터 적용한다.

2.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

[개정 2004. 7. 29. 대통령령 제18493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영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공기관의 범위)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기관을 말한다.

1.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 그 밖에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각급 학교
2.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3.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정부산하기관
4.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법인
5. 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부터 보조금을 받는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

제2장 정보공개청구권자와 공공기관의 의무

제3조(외국인의 정보공개청구)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는 외국인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1.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거나 학술·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자
2.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제4조(행정정보의 공표 등) ①공공기관은 법 제7조제1항 각호의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거나, 정부간행물의 발간·판매 등 다양한 방법으로 국민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②행정자치부장관은 공공기관이 공표한 정보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종합목록의 발간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5조 (정보목록의 작성·비치 등) ①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목록에는 문서제목·생산연도·업무담당자·보존기간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 경우 공공기관의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10조 및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기록물등록대장 및 기록물철등록부와 동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목록으로 정보목록에 갈음할 수 있다.

②공공기관은 정보공개절차를 국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정보공개청구 및 처리절차, 정보공개청구서식, 수수료 그 밖의 주요사항이 포함된 정보공개편람을 작성·비치하여 일반국민의 열람에 제공하여야 한다.

③공공기관은 청구인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정보공개청구서식·컴퓨터 단말기 등을 비치하여야 한다.

제3장 정보공개의 절차

제6조 (정보공개의 청구방법 등) ①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공개청구서는 공공기관에 직접 출석하여 제출하거나 우편·모사전송 또는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제출한다.

②공공기관은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한 때에는 정보공개처리대장에 기록하고 청구인에게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청구인이 요청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접수증을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즉시 또는 구술처리가 가능한 정보의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한 때
2. 우편·모사전송 또는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한 때

제7조 (공개여부 결정기간의 연장) 법 제11조제2항 전단에서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일시에 많은 정보공개가 청구되거나 공개청구된 내용이 복잡하여 정하여진 기간내에 공개여부의 결정이 곤란한 경우

2. 정보를 생산한 공공기관 또는 공개청구된 정보와 관련있는 제3자의 의견청취, 정보공개심의회 개최 등의 사유로 정하여진 기간내에 공개여부의 결정이 곤란한 경우
3.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처리된 정보가 공개부분과 비공개부분을 포함하고 있고, 정하여진 기간내에 부분공개가능여부의 결정이 곤란한 경우
4. 천재지변, 일시적인 업무량의 폭주 등으로 정하여진 기간내에 공개여부의 결정이 곤란한 경우

제8조 (제3자의 의견청취) ①법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제3자의 의견청취는 문서에 의한다. 다만, 공공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와 제3자가 원하는 때에는 구술로 할 수 있다.

②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구술로 의견을 청취하는 담당공무원 등은 구술내용을 기록하고 본인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9조 (정보생산 공공기관의 의견청취) 공공기관은 공개청구된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다른 공공기관이 생산한 정보인 때에는 그 정보를 생산한 공공기관의 의견을 들어 공개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10조 (관계기관 및 부서간의 협조) ①정보공개청구업무를 처리하는 부서는 관계기관 또는 다른 부서의 협조가 필요한 때에는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한 후 지체없이 처리기간의 범위내에서 회신기간을 명시하여 협조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조를 요청받은 기관 또는 부서는 그 회신기간내에 회신하여야 한다.

제11조 (정보공개심의회) ①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및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은 업무성격이나 업무량 등을 고려하여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그 기관 또는 소속기관에 1개 이상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심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공개청구된 정보의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

2. 법 제18조 및 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3. 그 밖에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③심의회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④심의회의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⑤이 영에 규정된 것 외에 심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가 설치된 국가기관등의 장이 정한다.

제12조(정보공개일시의 통지 등) ①공공기관은 정보의 공개를 결정한 때(제3자의 비공개요청에 불구하고 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결정을 하는 때를 제외한다)에는 지체없이 공개를 결정한 날부터 10일 이내의 범위내에서 공개일시를 정하여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청구인이 요청하는 때에는 공개일시를 달리 정할 수 있다.

②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의 사본·복제물을 일정 기간별로 나누어 교부하거나 열람과 병행하여 교부하는 때에는 청구인으로 하여금 먼저 열람하게 한 후 사본·복제물을 교부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월 이내에 교부를 완료하여야 한다.

③청구인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한 공개일 후 10일이 경과할 때까지 정당한 사유없이 그 정보의 공개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내부적으로 종결처리할 수 있다.

제13조(부분공개) 공공기관은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분공개결정을 하는 때에는 비공개하는 부분에 대하여 비공개이유·불복방법 및 불복절차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제14조(정보공개방법) ①정보의 공개는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한다.

1. 문서·도면·사진 등은 열람 또는 사본의 교부
2. 필름·테이프 등은 시청 또는 인화물·복제물의 교부
3. 마이크로필름·슬라이드 등은 시청·열람 또는 사본·복제물의 교부
4. 전자적 형태로 보유·관리하는 정보 등은 파일을 복제하여 전자우편으로 송부, 매체에 저장하여 제공, 열람·시청 또는 사본·출력물의 교부

②공공기관은 정보를 공개함에 있어서 본인 또는 그 정당한 대리인임을 확인할 필요가 없는 때에는 청구인의 요청에 의하여 제1항 각호의 사본·출력물·복제물·인화물 또는 복제된 파일을 우편·모사전송 또는 전자통신망을 이용하여 송부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를 공개하는 때에는 타인의 지적소유권, 사생활의 비밀 그 밖에 타인의 권리 또는 이익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제15조(정보공개시 청구인의 확인) ①청구된 정보의 공개는 청구인 본인 또는 그 대리인에게 하여야 한다.

②공공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를 공개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신분증명서 등에 의하여 청구인 본인 또는 그 정당한 대리인임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를 공개함에 있어서 본인 또는 그 정당한 대리인임을 확인할 필요가 없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청구인 본인에게 공개하는 때에는 청구인의 주민등록증 그 밖에 그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청구인이 외국인인 때에는 여권·외국인등록증 그 밖에 제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청구인이 외국의 법인 또는 단체인 때에는 사업자등록증·외국단체등록증 그 밖에 제3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법인 또는 단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2. 청구인의 법정대리인에게 공개하는 때에는 법정대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대리인의 주민등록증 그 밖에 그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3. 청구인의 임의대리인에게 공개하는 때에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위임장과 청구인 및 수임인의 주민등록증 그 밖에 그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③공공기관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 청구인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의 신원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전자서명 등을 통하여 그 신원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16조 (정보공개처리상황의 기록) 공공기관은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처리상황을 정보공개처리대장에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제17조 (비용부담) ①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의 공개 및 우송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수료와 우편요금(공개되는 정보의 사본·출력물·복제물 또는 인화물을 우편으로 송부하는 경우에 한한다)으로 구분하되, 수수료의 금액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수수료의 금액은 조례로 정한다.

②법 제15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전자적 형태로 공개하는 때에는 공공기관(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기관을 제외한다)의 장은 업무부담을 고려하여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금액의 범위안에서 수수료의 금액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③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비영리의 학술·공익단체 또는 법인이 학술이나 연구목적 또는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청구한 경우
2. 교수·교사 또는 학생이 교육자료나 연구목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소속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아 청구한 경우
3. 그 밖에 공공기관의 장이 공공복리의 유지·증진을 위하여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④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감면을 신청하는 때에는 감면사유에 관한 소명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⑤공공기관의 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의 감면비율을 정하고,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⑥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정부기관에는 수입인지로, 지방자치단체에는 수입증지로, 정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공공기관에는 현금으로 각각 납부한다. 다만, 부득이한 때에는 정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다.

⑦정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4장 이의신청

제18조(이의신청) ①법 제18조제1항 및 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의 이름·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 사무소 또는 사업소의 소재지와 대표자의 이름)와 연락처
2. 이의신청의 대상이 되는 정보공개여부 결정의 내용
3. 이의신청의 취지 및 이유
4. 정보공개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

②공공기관은 법 제18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신청결정기간의 연장을 통지하는 때에는 통지서에 연장사유·연장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③공공기관은 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신청을 각하 또는 기각하는 결정을 하는 때에는 결정이유·불복방법 및 불복절차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④공공기관은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상황을 이의신청처리대장에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제5장 정보공개위원회 등

제19조(심의·조정사항) 법 제22조제4호에서 "그 밖에 정보공개에 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7조제1항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표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정보공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의·조정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사항

제20조(위원회의 구성) ①위원회의 부위원장은 법 제23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

②법 제23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원은 법무부·행정자치부 및 기획예산처의 차관과 국무조정실 기획수석조정관을 말한다.

제21조 (회의 및 의결정족수) ①위원회의 회의는 반기별로 개최한다. 다만,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임시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2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②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3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관련 공공기관에 대하여 정보공개와 관련된 자료·서류 등의 제출요청
2. 관계공무원·이해관계인·참고인 등의 출석요청 및 의견청취

제24조(사무기구) 위원회의 업무를 보좌하고 그 밖에 행정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위원회의 사무처리는 행정자치부 행정혁신국장이 수행한다.

제25조(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장 및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제23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참석하는 관계공무원·이해관계인·참고인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위원회에 참석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6조(정보공개위원회의 운영규정) 이 영에 규정된 것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27조(운영실태평가) 행정자치부장관은 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실태를 평가하는 때에는 해당 공공기관의 장에게 평가의 취지 및 내용과 담당공무원의 인적사항 및 방문일시를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제28조(자료제출) ①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과 이 영 제2조 각호의 기관은 전년도의 정보공개운영실태를 매년 1월 31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정보공개운영실태를 포함한 전년도의 정보공개운영실태를 매년 2월 10일까지 관할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정보공개운영실태를 포함한 전년도의 정보공개운영실태를 매년 2월 말일까지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행정자치부장관은 매년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정보공개운영실태를 종합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제29조(정보공개운영에 관한 보고서)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정보공개운영에 관한 보고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운영실태에 관한 사항
2. 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공개제도 운영실태 평가에 관한 사항
3. 법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요구 등의 조치에 관한 사항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4년 7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5년 7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연임제한규정의 적용례) 이 영 시행당시의 심의회 위원에 대하여 제11조제3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이 영 시행 당시의 임기를 최초의 임기로 본다.

제3조(공개일시에 관한 규정의 적용례) 제1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정보공개청구가 있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공무원직무발명의처분·관리및보상등에관한규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제2호중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로 한다.

②관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6조제3항중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 각호"를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9조제1항 각호"로 한다.

③방송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5조제3항중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를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9조제1항"으로 한다.

④법제업무운영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중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 제18조제1항 및 제4항"을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 제17조제1항 및 제6항"으로 한다.

⑤지식정보자원관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중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를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9조제1항"으로 한다.

3.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규칙

[개정 2004. 7. 29. 행정자치부령 제245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보공개청구서의 서식) ①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공개청구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②법 제1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술로 정보공개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제3조(정보공개처리관련 서식) ①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개여부 결정기간 연장의 통지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②영 제6조제2항 및 영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정보공개처리대장은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

제4조(제3자의 의견청취관련 서식) ①법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공개가 청구된 사실을 통지받은 제3자의 의견제출 또는 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공개요청은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다.

②법 제11조제3항 및 영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술로 제3자의 의견청취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다.

제5조(정보공개여부 결정통지의 서식) 법 제13조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공개여부 결정에 대한 통지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다.

제6조(정보공개 위임장 서식) 영 제15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위임장은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다.

제7조(수수료의 금액) 영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의 금액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표와 같다.

제8조(이의신청처리관련 서식) ①법 제18조제1항 및 법 제21조제2항과 영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은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다.

②법 제18조제2항과 영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결정기간 연장의 통지는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한다.

③영 제18조제4항에 의한 이의신청처리대장은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다.

제9조(자료제출) 영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정보공개운영실태의 제출은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04년 7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수수료(제7조관련)

공개대상	공개방법 및 수수료			
	원본의 열람·시청	원본의 사본(출력물)·복제물·인화물	전자파일의 열람·시청	전자파일의 사본(출력물)·복제물
문서·대장 등	○열람 -1건(10매 기준)1회 : 200원 ·10매초과시 5매마다 100원	○사본(1매 기준) -A3이상 300원 ·1매 초과마다 100원 -B4이하 250원 ·1매 초과마다 50원	○열람 -1건(10매 기준) 1회 : 200원 ·10매 초과시 5매마다 100원	○사본(종이출력물) -A3이상 300원 ·1매 초과마다 100원 -B4이하 250원 ·1매 초과마다 50원 ○복제 -1건(10매 기준)1회: 200원 -10매초과시 5매마다 100원 ※매체비용은 별도
도면·카드 등	○열람 -1매 : 200원 ·1매 초과마다 100원	○사본(1매기준) -A3이상 300원 ·1매 초과마다 100원 -B4 이하 250원 ·1매 초과마다 50원	○열람 -1매 : 200원 ·1매 초과마다 100원	○사본(종이출력물) -A3이상 300원 ·1매 초과마다 100원 -B4이하 250원 ·1매 초과마다 50원 ○복제 - 1건(10매기준)1회 : 200원 - 10매초과시 5매마다 100원 ※매체비용은 별도
녹음테이프(오디오 자료)	○청취 -1건이 1개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1개(60분 기준)마다 1,500원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1건(30분 기준)마다 700원	○복제 -1건이 1개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개마다 5,000원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1건마다 3,000원 ※매체비용은 별도	○시청·청취 -1편 : 1,500원 ·30분 초과시 10분마다 500원	○복제 -1건(700MB 기준)마다 5,000원 -700MB 초과시 350MB마다 2,500원 ※매체비용은 별도
녹화테이프(비디오 자료)	○시청 -1편이 1롤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1롤(60분 기준)마다 1,500원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1편(30분 기준)마다 700원	○복제 -1편이 1롤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롤마다 5,000원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1편마다 3,000원 ※매체비용은 별도		
영화필름	○시청 -1편이 1캔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1캔(60분 기준)마다 3,500원 -여러 편이 1캔으로 이루어진 경우 ·1편(30분 기준)마다 2,000원	-		
슬라이드	○시청 -1컷마다 200원	○복제 - 1컷마다 3,000원 ※매체비용은 별도	○시청 -1컷마다 200원	
마이크로필름	○열람 -1건(10컷 기준) 1회: 500원 ·10컷 초과시 1컷마다 100원	○사본(출력물 : 1매 기준) - A3 이상 300원 ·1매 초과마다 200원 - B4이하 250원 ·1매초과마다 150원 ○복제 - 1롤마다 1,000원 ※매체비용은 별도	-	-
사진·사진필름	○열람 -1매 : 200원 · 1매 초과마다 50원	○인화(필름) -1컷마다 500원 ·1매 초과마다 3"×5" 200원 5"×7" 300원 8"×10" 400원 ○복제(필름) -1컷마다 6000원 ※매체비용은 별도	○열람 -1매 : 200원 ·1매 초과마다 50원	○사본(종이출력물) - 1컷 250원 ·1매 초과마다 3"×5" 50원 5"×7" 100원 8"×10" 150원 ○복제 - 1건(1MB 기준)1회: 200원 -1MB초과시 0.5MB마다 1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전자우편을 통해 공개하는 경우 전자파일의 복제의 경우를 적용하여 수수료 산정

[별지 제1호서식]

정 보 공 개 청 구 서

※ 접수일자와 접수번호는 청구인이 기재하지 아니합니다.

※ 접 수 일 자			※ 접 수 번 호	
청 구 인	이 름 (법인명등 및대표자)		주민등록(여권·외국인등록)번호	
			사업자(법인·단체) 등 록 번 호	
	주 소 (소재지)		전 화 번 호 (모사전송번호)	
			전 자 우 편 주 소	
정 보 내 용				
공 개 형 태		□열람·시청 □사본·출력물 □전자파일 □복제·인화물 □기타( )		
수 령 방 법		□직접방문 □우편 □모사전송 □전자우편 □기타( )		
수수료 감면	해당여부	□해당 □해당없음		
	감면사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 감면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 기재하며,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10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 구 인 (서명 또는 인)

(접수기관의 장) 귀 하

접 수 증

접 수 번 호			청 구 인 이 름	
접 수 자	직 급		이 름	(서명 또는 인)

귀하의 청구서는 위와 같이 접수되었습니다.

년 월 일

(접 수 기 관)

※정보공개의 처리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면 (담당부서 및 전화번호)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호서식]

정보공개 구술청구서

<table>
<tr><td colspan="2">접 수 일 자</td><td></td><td>접 수 번 호</td><td></td></tr>
<tr><td rowspan="4">청 구 인</td><td rowspan="2">이 름
(법인명등 및대표자)</td><td rowspan="2"></td><td>주민등록(여권·외국인등록)번호</td><td></td></tr>
<tr><td>사업자(법인·단체) 등 록 번 호</td><td></td></tr>
<tr><td rowspan="2">주 소
(소재지)</td><td rowspan="2"></td><td>전 화 번 호
(모사전송번호)</td><td></td></tr>
<tr><td>전 자 우 편 주 소</td><td></td></tr>
<tr><td colspan="2">정 보 내 용</td><td colspan="3"></td></tr>
<tr><td colspan="2">공 개 형 태</td><td colspan="3">□열람·시청 □사본·출력물 □전자파일 □복제·인화물 □기타(　　)</td></tr>
<tr><td colspan="2">수 령 방 법</td><td colspan="3">□직접방문 □우편 □모사전송 □전자우편 □기타(　　)</td></tr>
<tr><td rowspan="2">수수료 감면</td><td>해 당 여 부</td><td colspan="3">□해당 □해당없음</td></tr>
<tr><td>감 면 사 유</td><td colspan="3"></td></tr>
<tr><td colspan="2">구술청취자
(담당공무원등)</td><td colspan="3">직 급 　　이 름 　　서명 또는인</td></tr>
<tr><td colspan="2" rowspan="3">구 술 자
(청 구 인)</td><td rowspan="2">기관인 경 우</td><td>기관명 　　직 급</td><td>서명 또는인</td></tr>
<tr><td>이 름</td></tr>
<tr><td>일반인인 경우</td><td colspan="2">이 름 　　서명 또는인</td></tr>
</table>

접 수 증

<table>
<tr><td colspan="2">접 수 번 호</td><td></td><td>청구인이름</td><td></td></tr>
<tr><td>접 수 자</td><td>직 급</td><td></td><td>이 름</td><td>(서명 또는 인)</td></tr>
<tr><td colspan="5">귀하의 청구서는 위와 같이 접수되었습니다.

년 월 일

(접 수 기 관)
※정보공개의 처리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면 (담당부서 및 전화번호)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td></tr>
</table>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3호서식]

공개여부 결정기간 연장통지서

수 신 자

정 보 내 용			
접 수 일 자 및 접 수 번 호		당 초 결 정 기 한	
연 장 사 유			
연 장 결 정 기 한			
기 타 안 내 사 항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귀하의 정보공개청구 사항에 대한 공개여부를 결정하는 기간이 위와 같은 사유로 연장되었음을 알려드리며, 궁금하신 사항은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면 자세히 설명하여 드리겠습니다.

년 월 일

(기 관 의 장) 인

기안자(직위/직급) 서명 검토자(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직위/직급) 서명
협조자(직위/직급) 서명

시 행 처리과명-일련번호 (시행일자)

우 /주소 /홈페이지 주소
전화( ) /전송( ) /담당자 공식 전자우편주소 /공개구분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4호서식]

정 보 공 개 처 리 대 장

접수번호	접수일자	청구인	청구사항		결정내용					처리사항		비고
			정보내용	공개형태	담당부서	결정구분	공개내용	비공개(부분공개) 내용 및 사유	결정통지일자	공개일자	공개방법	

297㎜ × 210㎜(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기재요령

1. "정보내용" 항목에는 청구인이 공개를 청구한 정보를 기재합니다.
2. "공개형태" 항목에는 열람·시청, 사본·출력물, 전자파일, 복제·인화물 등 청구인이 공개를 요청한 형태를 기재합니다.
3. "결정구분" 항목에는 공개·부분공개·비공개 등 공공기관에서 결정한 사항을 기재합니다.
4. "공개내용" 항목에는 공개로 결정한 정보를 기재합니다.
5. "비공개(부분공개) 내용 및 사유" 항목에는 공공기관에서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로 결정한 정보 내용을 기재하고 정보별 비공개(부분공개) 사유를 기재합니다.
6. "공개방법" 항목에는 공개장소 방문·우편·모사전송·전자우편 등 청구인에게 정보를 공개한 방법을 기재합니다.
7. "비고" 항목에는 청구인이 이의신청을 한 경우나 기타 특이사항이 있을 경우 기재합니다.

[별지 제5호서식]

제3자 의견서(비공개요청서)

제 3 자	이 름		주 소	
	연락처	전 화 번 호 : 모사전송번호 : 전자우편주소 :		

접 수 일 자			접수번호	
청 구 인	이 름		주 소	
정 보 내 용				
공개청구된 정보에 대한 의견(내용이 많을 경우에는 별지사용 가능)				
종 합 의 견	□ 정보공개 허용		□ 비공개요청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11조제3항, 제21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귀기관에 공개청구된 정보에 대한 의견서[비공개요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 제출(비공개요청)인 (서명 또는 인)

기관의 장 귀하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6호서식]

제3자 의견청취서

<table>
<tr><td>접 수 일 자</td><td colspan="3"></td><td>접수번호</td><td colspan="3"></td></tr>
<tr><td>청 구 인</td><td>이 름</td><td colspan="2"></td><td>주 소</td><td colspan="3"></td></tr>
<tr><td>정 보 내 용</td><td colspan="6"></td></tr>
<tr><td>의견청취일시</td><td colspan="6"></td></tr>
<tr><td>의견청취내용</td><td colspan="6"></td></tr>
<tr><td>기타참고사항</td><td colspan="6"></td></tr>
<tr><td>의 견 청 취 자
(담당공무원등)</td><td>직 급</td><td colspan="2"></td><td>이름</td><td colspan="2"></td><td>서 명
또는 인</td></tr>
<tr><td rowspan="4">구 술 자
(제 3 자)</td><td rowspan="2">기관인
경 우</td><td>기관명</td><td colspan="2"></td><td>직급</td><td></td><td rowspan="2">서 명
또는 인</td></tr>
<tr><td>연락처</td><td colspan="2"></td><td>이름</td><td></td></tr>
<tr><td rowspan="3">일반인
인 경우</td><td>이 름</td><td colspan="4"></td><td rowspan="3">서 명
또는 인</td></tr>
<tr><td>주 소</td><td colspan="4"></td></tr>
<tr><td>연락처</td><td colspan="4"></td></tr>
</table>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7호서식]

(앞쪽)

정보(□공개 □부분공개 □비공개) 결정통지서

수 신 자

<table>
<tr><td>접 수 일 자</td><td colspan="2"></td><td>접 수 번 호</td><td colspan="2"></td></tr>
<tr><td>청구정보내용</td><td colspan="5"></td></tr>
<tr><td>공 개 내 용</td><td colspan="5"></td></tr>
<tr><td>비공개(전부또는 일부) 내용 및 사유</td><td colspan="5"></td></tr>
<tr><td rowspan="2">공 개 방 법</td><td>공개형태</td><td colspan="4">□열람·시청 □사본·출력물 □전자파일 □복제·인화물
□기타(　　)</td></tr>
<tr><td>교부방법</td><td colspan="4">□직접 방문 □우편 □모사전송 □전자우편
□기타(　　)</td></tr>
<tr><td>공개일시(기간)</td><td colspan="2"></td><td>공 개 장 소</td><td colspan="2"></td></tr>
<tr><td>수 수 료 (A)</td><td>우 송 료 (B)</td><td colspan="2">수수료감면액 (C)</td><td colspan="2">계 (A+B-C)</td></tr>
<tr><td>원</td><td>원</td><td colspan="2">원</td><td colspan="2">원</td></tr>
<tr><td>수수료산정내역</td><td colspan="2"></td><td>수수료 납입계좌(입금시)</td><td colspan="2"></td></tr>
</table>

귀하의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결정내용을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13조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년　　월　　일

(기관의 장)　　인

기안자(직위/직급) 서명　　검토자(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직위/직급) 서명
협조자(직위/직급) 서명
시 행　처리과명-일련번호 (시행일자)
우　　/주소　　/홈페이지 주소
전화(　　) /전송(　　) /담당자 공식 전자우편주소　　/공개구분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쪽)

※ 유 의 사 항

○ 정보공개장소에 오실 때에는 이 통지서를 지참하셔야 하며, 청구인 본인 또는 그 정당한 대리인임을 확인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증명서를 지참하셔야 합니다.

1. 청구인 본인에게 공개하는 때에는 청구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주민등록증 등)
2. 청구인의 법정대리인에게 공개하는 때에는 법정대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대리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3. 청구인의 임의대리인에게 공개하는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정보공개위임장과 청구인 및 수임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 수수료는 해당 정보를 공개할 때 수입인지(정부기관), 수입증지(지방자치단체) 또는 현금(기타 공공기관)으로 납부하셔야 합니다.

○ 우송공개가 가능하다고 통지된 정보를 우편 등으로 받으시고자 하는 때에는 앞면에 기재된 공개일까지 수수료(공공기관에 따라 수입인지·수입증지 또는 현금)와 우송료(우표 등)를 공공기관에 보내셔야 합니다.

○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의 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18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기관으로부터 공개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동법 제1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기관에 이의신청을 하실 수 있으며

○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청 또는 재결청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청구인이 통지된 정보의 공개일후 10일이 경과할 때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정보의 공개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내부적으로 종결처리할 수 있습니다.

[별지 제8호서식]

정 보 공 개 위 임 장

청구인 (위임인)	이 름 (법인명등 및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등)	
	주 소 (소 재 지)			
수 임 인	이 름		주민등록번호등	
	주 소			
	위임인과의 관 계			
정 보 내 용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 제15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정보공개에 응할 것을 위임합니다.

년 월 일

위임인 (서명 또는 인)

※ 유 의 사 항

청구인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사람은 본 위임장과 청구인 및 수임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9호서식]

정보공개(비공개)결정 이의신청서

<table>
<tr><td colspan="2">접 수 일 자</td><td></td><td>접 수 번 호</td><td></td></tr>
<tr><td rowspan="3">이 의
신청인</td><td>이 름
(법인명등
및 대표자)</td><td></td><td>주 민 등 록 번 호
(사업자등록번호등)</td><td></td></tr>
<tr><td rowspan="2">주 소
(소 재 지)</td><td rowspan="2"></td><td>전 화 번 호
(모사전송번호)</td><td></td></tr>
<tr><td>전 자 우 편 주 소</td><td></td></tr>
<tr><td colspan="2">공개 또는
비공개내용</td><td colspan="3"></td></tr>
<tr><td colspan="2">통지서 수령유무</td><td colspan="3">□ 정보(공개 · 부분공개 · 비공개) 결정통지서를 년 월 일에 받았음.
□ 정보(공개 · 부분공개 · 비공개) 결정통지서를 받지 못했음(법 제1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은 년 월 일임).</td></tr>
<tr><td colspan="2">이의신청의
취지 및 이유</td><td colspan="3"></td></tr>
<tr><td colspan="5">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18조제1항 또는 제21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귀기관의 정보공개(비공개)결정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이의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이의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접 수 기 관) 귀하</td></tr>
</table>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0호서식]

이의신청 결정기간 연장통지서

수 신 자

이 의 신 청 내 용			
접 수 일 자 및 접 수 번 호		당 초 결 정 기 한	
연 장 사 유			
연 장 결 정 기 한			
기 타 안 내 사 항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귀하의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기간이 위와 같은 사유로 연장되었음을 알려드리며, 궁금하신 사항은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면 자세히 설명하여 드리겠습니다.

년 월 일

(기 관 의 장) 인

기안자(직위/직급) 서명 검토자(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직위/직급) 서명
협조자(직위/직급) 서명

시 행 처리과명-일련번호 (시행일자)

우 /주소 /홈페이지 주소

전화( ) /전송( ) /담당자 공식 전자우편주소 /공개구분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1호서식]

이 의 신 청 처 리 대 장

※접수 번호	이의신청 일 자	사건명	청구인	주문내용	신청취지	이 유 (처리결과요지)	결정통지 일 자

※ 접수번호는 정보공개처리대장에 기재된 접수번호를 기재합니다.

297㎜ × 210㎜(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2호서식]

정보공개 운영실태

1. 정보공개창구 설치현황

구 분	설치개소	문 서 과	민 원 실	자 료 실	기 타
계					
본 청					
소속기관별					

2. 공개청구 및 처리현황

가. 총 괄

구 분	청구건수	처 리 현 황				미결정 (계류중)	기 타 (취하등)
		소 계	전부공개	부분공개	비공개		
계							
본 청							
소속기관별							

나. 청구방법별 현황

구 분	청구건수	직접출석	우 편	모사전송	정보통신망
계					
본 청					
소속기관별					

다. 공개방법별 현황

구 분	청구 건수	공개 형태						교부 방법					
		소계	열람·시청	사본·출력물	전자파일	복제·인화물	기타	소계	직접 방문	우편	모사 전송	전자 우편	기타
계													
본 청													
소속기관별													

라. 공개여부 결정기간별 현황

구 분	계	당일(즉시)	3일 이내	5일 이내	10일 이내	20일 이내	20일 초과
계							
본 청							
소속기관별							

3. 처리현황 목록

일련번호	청구사항		결정내용					처리사항		비고
	정보내용	공개형태	담당부서	결정구분	공개내용	비공개(부분공개) 내용 및 사유	결정통지일자	공개일자	공개방법	

※정보공개처리대장 사본으로 처리현황목록을 갈음할 수 있습니다.

4. 비공개(부분공개) 사유별 현황

구 분	청구 건수	법령상 비밀·비공개(법 제9조제1항제1호)	국방 등 국익침해 (제2호)	국민의 생명 등 공익침해 (제3호)	재판관련 정보 등 (제4호)	공정한 업무수행 지장 등 (제5호)	개인사생활 침해 (제6호)	법인 등 영업상 비밀침해 (제7호)	특정인의 이익·불이익 (제8호)	기 타 (부존재 등)
계										
본 청										
소 속 기관별										

5. 불복신청 및 처리현황

가. 총 괄

구 분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				
	신청 건수	처리결과			청구 건수	계류 중	심판결과			제기 건수	계류 중	판결결과		
		취하·각하	기각	인용			취하.각하	기각	인용			취하.각하	기각	인용
계														
본 청														
소 속 기관별														

나. 이의신청 처리현황

일련 번호	사건명	처리일	청구인	피청구인	주문 내용	신청취지	이 유 (처리결과요지)

※이의신청처리대장 사본으로 처리현황목록을 갈음할 수 있습니다.

다. 행정심판 결과현황

일련번호	사건명	의결(재결)일	청구인	피청구인	주문내용	청구취지	이 유 (심판결과요지)

라. 행정소송 판결현황

일련번호	사건명	판결일	원 고	피 고	주문내용	청구취지	이 유 (판 결 요 지)

6. 정보공개제도 개선사항

제 목	문 제 점	개 선 사 항

210㎜×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

4. 충청남도 『열린도정』을 위한정보공개시행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이하"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의 행정정보를 공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도민의 도정 참여를 통한 도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주관부서"라 함은 충청남도행정기구설치조례 및 동 시행규칙에 규정된 분장사무중 "행정정보 공개"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2. "처리부서"는 청구된 정보를 생산하고 보유·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 (공개방법) ①정보공개 청구서는 주관부서에서 접수하고, 해당처리 부서에서 공개한다.

②청구된 정보를 공개함에 있어 현재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대상으로 하여야 하며, 그 정보의 일부를 발췌·요약하는 등 별도의 가공된 형태로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

③청구인이 사본 또는 복제물의 교부를 요청하였으나 청구량이 과다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큰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청구인과의 사전협의를 통해 일정기간별로 나누어 교부하거나 열람을 먼저 시킨 후 사본이 필요한 정보를 선별하여 복사하는 방법으로 교부할 수 있다.

제4조 (비용의 부담) 행정정보의 공개에 소요되는 비용은 청구인의 부담으로 하며 수수료의 금액은 충청남도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5조 (청구서식 등 비치) 주관부서의 장은 도민이 행정정보 공개 청구를 쉽게 할 수 있도록 접수처를 안내하는 표찰을 설치하고 접수장소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비치하여야 한다.

1. 정보공개청구서식
2. 정보공개 청구방법 및 처리절차, 수수료등이 포함된 정보공개 편람

3. 정보목록
4. 공개된 행정정보나 정보목록을 확인할 수 있는 컴퓨터 등 전산 온라인 장비

제6조 (행정정보의 공표) ①처리부서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정정보는 청구인의 청구가 없더라도 이를 정기적으로 공개하여야한다. 다만, 법령이나, 다른 규정에 의하여 비공개행정정보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당해연도 업무계획과 예산·결산 및 운용계획
2. 도지사 및 행정·정무부지사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
3. 부문별 주요 통계조사 결과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정하는 행정정보 사항 등

②처리부서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정정보는 계획이 수립되거나 조사 등이 완료된 때에는 청구인의 청구가 없더러도 이를 수시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이나, 다른 규정에 의하여 비공개행정 정보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중장기 종합계획 및 부문별 종합계획
2. 사용료·수수료 및 각종 공공요금의 조정계획
3. 교량·터널등에 대한 안전점검 및 진단결과
4. 도에서 시행하는 공사중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에 관한 정보
5. 행정심판 재결 결과, 도가 개최한 공청회 결과
6. 기타 공익을 위하여 공개함이 타당한 정보 등

제7조 (행정정보의 공표 주기 등) ①주관부서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정기공개 및 수시공개 대상 정보의 공표주기·시기 등을 정하여 공표 목록을 작성·비치하고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②공표대상의 정보는 그 성격을 고려하여 홈페이지 등 국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③공표의 대상이 되는 정보의 공개실시는 당해 정보를 보유·관리하는 처리

부서에서 수행한다.

④제6조 2항에서 "행정정보에 대한 계획이 수립되거나 조사 등이 완료된 때"라 함은 업무에 대한 최종결재가 완료된 시점을 말한다.

제8조 (정보공개심의회 구성) ①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충청남도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심의회는 위원장 1인 및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인 내지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심의회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은 행정정보공개에 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전문가 중에서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의 2분의 1로 한다.

④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정보공개 담당사무관으로 한다.

제9조 (심의회 운영) ①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심의회 의장이 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심의회 위원이 부득이한 이유로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10조 (수당 등) 심의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여비 · 수당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 (의견청취) ①처리부서의 장은 심의회에 참석하여 심의안건을 설명하여야 한다.

②심의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공무원, 정보공개 청구인, 또는 기타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2조 (심의요청) 심의사항이 발생한 처리부서의 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정보공개심의회 안건상정 요청서를 심의회 개최일 5일전까지 주관 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 (기록유지) 간사는 심의한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서류를 작성 비치·관리하여야 한다.

1. 회의록 [별지 제2호서식]
2. 정보공개심의회심의의결서 [별지 제3호서식]
3. 심의의결대장 [별지 제4호서식]

제14조 (대외누설 금지) 심의회 위원은 회의과정 및 직무수행상 알게 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되며, 그 직책에서 물러난 후에도 또한 같다.

부 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정보공개심의회안건상정요청서

수 신 : 충청남도정보공개심의회위원장
참 조 : 총 무 과 장

다음과 같이 행정정보공개결정사항에 대한 심의를 요청하오니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 ○ ○ ○ 장(처리부서장)

1.청구인	성 명(법인명 및 대표자)	
	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주 소(소재지)	
2.공개 청구 요지		
3.안건상정사유		
4.담당부서 검토의견		
5.기 타		
첨부:1)심의안건 ○부 2) 공개청구서(이의신청서)사본 ○부 3)기타 증빙자료 ○부		

[별지 제2호서식]

회 의 록

	서 기	간 사	부위원장	위원장	결재

일시					
참석상황	정 원	참 석	불 참		

· 심의사항

· 심의결과

[별지 제3호서식]

정보공개심의회 심의의결서

의안번호	
심의안건	
의결내용	

위와 같이 심의 의결함

년 월 일

위 원 장 (인)

부위원장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별지 제4호서식]

심의의결대장

접수		심의안건	심의		담당부서	비고
번호	일시		일시	결과		

5. 충청남도제증명등징수조례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허가, 기타 신고·신청의 수리 및 등록지정 확인 및 검사 등(이하"제증명등"이라 한다)에 대한 수수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징수구분) ①제증명등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의하여 징수한다.

②공유수면매립면허수수료는 별표1, 기타 제증명 등의 사항과 수수료는 별표2, 정보공개수수료는 별표3, 보건환경연구원 검사시험의 수수료는 별표4, 축산위생연구소 검사시험수수료는 별표5와 같다.

③제2항에 규정한 제증명등으로서 동일한 것을 2통 이상 청구하거나 신청(제출)할 때 또는 수인을 열기하여 제증명 등을 발급(수리, 등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때에는 1통 또는 1인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④자동차에 관한 제증명 등에 있어 동일인이 1통에 2대 이상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1대마다 1통으로 보아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하며, 위와 같이 1통에 수건의 제증명 등을 동시에 요구할 때에는 1건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한다.

제3조 (징수방법) ①수수료는 충청남도수입증지를 제증명등 발급신청서 또는 신고서 등에 첨부하게 함으로서 징수한다. 다만, 제증명 등의 구두 신청 등과 같이 사전 첨부가 곤란할 때에는 제증명서 등의 서류에 첨부하게 함으로서 징수할 수 있다.

②제1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증명등 사무를 시장·군수가 위임받아 처리할 때에는 당해 시·군의 수입증지로써 징수한다.

제4조 (기납부 수수료의 불반환) 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여도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5조 (수수료의 감면 등) ①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제증명 등에 대하여는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개정 98. 3. 17〉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관내에서 신청, 등록하는 기타 제증명등
2.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신의 행정시책상 필요에 의하여 신고, 신청 등록하게 하는 기타 제증명등
3.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 제18조제2항제1호, 제2호에 해당하는 때
4. 보건환경연구원검사시험의 수수료중 다음각목의1에 해당하는 경우
   가. 식품, 의약품 및 환경오염물질 등의 지도·단속을 위한 경우
   나. 법정전염병 등 시험·검사에 필요한 경우
   다. 수사기관에서 수사상 필요한 경우
   라. 도, 시·군지정 민방위 비상급수, 도지정 먹는물 공동시설 수질검사
   마. 기타 도지사가 공공복리 또는 특수시책 추진에 필요한 경우
5.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유공자 및 유족과 참전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3조의 참전 군인등이 수수료와 본인과 관련되어 신청 등록하는 제증명등<제5호 내지 제6호 신설 2002. 12. 30>
6. 축산위생연구소 검사시험의 수수료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
   가.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신의 행정시책상 필요에 의한 수거검사 및 확인검사를 의뢰한 경우
   나. 수사기관에서 수사상 필요에 의하여 검사를 의뢰한 경우
   다. 다른 법령에 수수료의 감면 규정이 있는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제증명 등에 대하여 별표6의 고무인을 날인하여야 한다.<개정 2002. 12. 30>

제6조 (보건환경연구원 시험의뢰서식 등) ①보건환경연구원에지하수, 상수도(급수), 먹는 샘물, 욕수, 수영장수, 온천수, 수처리제, 미생물, 전용등의 검사·시험· 분석을 의뢰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다. 다만, 식품, 식품첨가물, 생용품, 식품용기, 의약품, 화장품, 의약외품, 의료용구 등의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고, 폐기물 관련은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며, 생활용수, 농업용수, 공업용수, 음용수는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하고, 시험성적서 재교부 신청시에는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다.

②시험 의뢰시 민원인에게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하고 이는 영수증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검사·시험 등을 완료한 때에는 시험성적서에 의하여 그 결과를 의뢰자에게 별지 제7호 서식으로 교부하여야 하며, 민원인이 외국어 번역문을 요구할 경우에는 별지 제8호 서식에 의한다. 단, 외국어 번역문은 수입국에서 요구하는 서식으로도 준할 수 있다.〈개정 2002. 12. 30〉

③검사·시험등을 의뢰하고자 하는 자가 제출하여야 할 검체 소요량과 처리기간은 별표7과 같으며 시험의뢰 사항을 기일내에 시험을 완료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사전에 서면으로 의뢰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02. 12. 30〉

④검사·시험 등을 위하여 관계 공무원의 현지출장을 요하거나 검체가 고정되어 있는 경우와 부피가 크거나 중량이 무거운 경우에는 당해공무원의 여비 및 시험기구 운반에 소요되는 실비를 수입 증지로 사전에 납부하여야 하되 여비는 충청남도지방공무원 여비조례에 의하여 산정하고 실비부담기준은 별표8과 같다.

제7조 (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별표3] 〈신설 98.03.17〉

정 보 공 개 수 수 료

공개대상	공개방법 및 수수료			
	원본의 열람·시청	원본의 사본(출력물)·복제물·인화물	전자파일의 열람·시청	전자파일의 사본(출력물)·복제물
문서·대장 등	○열람 -1건(10매 기준)1회 : 200원 ·10매초과시 5매마다 100원	○사본(1매 기준) -A3이상 300원 ·1매 초과마다 100원 -B4이하 250원 ·1매 초과마다 50원	○열람 -1건(10매 기준) 1회 : 200원 ·10매 초과시 5매마다 100원	○사본(종이출력물) -A3이상 300원 ·1매 초과마다 100원 -B4이하 250원 ·1매 초과마다 50원 ○복제 -1건(10매 기준)1회: 200원 -10매초과시 5매마다 100원 ※매체비용은 별도
도면·카드 등	○열람 -1매 : 200원 ·1매 초과마다 100원	○사본(1매기준) -A3이상 300원 ·1매 초과마다 100원 -B4 이하 250원 ·1매 초과마다 50원	○열람 -1매 : 200원 ·1매 초과마다 100원	○사본(종이출력물) -A3이상 300원 ·1매 초과마다 100원 -B4이하 250원 ·1매 초과마다 50원 ○복제 -1건(10매기준)1회 : 200원 -10매초과시 5매마다 100원 ※매체비용은 별도
녹음테이프(오디오자료)	○청취 -1건이 1개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1개(60분 기준)마다 1,500원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1건(30분 기준)마다 700원	○복제 -1건이 1개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개마다 5,000원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1건마다 3,000원 ※매체비용은 별도	○시청·청취 -1편 : 1,500원 ·30분 초과시 10분마다 500원	○복제 -1건(700MB 기준)마다 5,000원 -700MB 초과시 350MB마다 2,500원 ※매체비용은 별도
녹화테이프(비디오자료)	○시청 -1편이 1롤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1롤(60분 기준)마다 1,500원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1편(30분 기준)마다 700원	○복제 -1편이 1롤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롤마다 5,000원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1편마다 3,000원 ※매체비용은 별도		
영화필름	○시청 -1편이 1캔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1캔(60분 기준)마다 3,500원 -여러 편이 1캔으로 이루어진 경우 ·1편(30분 기준)마다 2,000원	-		
슬라이드	○시청 -1컷마다 200원	○복제 - 1컷마다 3,000원 ※매체비용은 별도	○시청 -1컷마다 200원	
마이크로필름	○열람 -1건(10컷 기준) 1회: 500원 ·10컷 초과시 1컷마다 100원	○사본(출력물 : 1매 기준) - A3 이상 300원 ·1매 초과마다 200원 - B4이하 250원 ·1매초과마다 150원 ○복제 - 1롤마다 1,000원 ※매체비용은 별도	-	-
사진·사진필름	○열람 -1매 : 200원 · 1매 초과마다 50원	○인화(필름) -1컷마다 500원 ·1매 초과마다 3"×5" 200원 5"×7" 300원 8"×10" 400원 ○복제(필름) -1컷마다 6000원 ※매체비용은 별도	○열람 -1매 : 200원 ·1매 초과마다 50원	○사본(종이출력물) - 1컷 250원 ·1매 초과마다 3"×5" 50원 5"×7" 100원 8"×10" 150원 ○복제 - 1건(1MB 기준)1회: 200원 -1MB초과시 0.5MB마다 1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이 편람은 정보공개 제도의 이해를 돕고, 타 공공기관의 행정소송 및 심판 사례, 이의신청 사례를 수록하였으며, 행정자치부의 정보공개제도 운영지침을 안내하여 담당자들이 실무에 실제 이용할 수 있로록 함으로써 실무능력을 배양시키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본 책자의 내용은 충청남도 인터넷 홈페이지의 "정보공개 / 사무편람 메뉴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본 책자와 관련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 소 : 대전광역시 중구 선화동 218번지
  총무과 문서담당 (☎ 251- 2563)

정보공개 업무 길잡이

발 행 일 : 2006. 8

편집·집필 : 충청남도 총무과 문서담당
총 무 과 장 **전 선 규**
지방행정사무관 **정 문 종**
지 방 행 정 주 사 **박 경 찬**

발 행 처 : 충 청 남 도

인 쇄 : 우 정 기 획

충청남도
www.chungnam.net